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목 차

I 중소기업 자금지원

1. 중소기업 육성자금	3
2.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4
3. 중소기업 운전자금	5
4. 지식문화기업 자금	8
5. 기술혁신기업 자금	12
6. 안전인프라 특별자금	14
7.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일자리 혁신자금)	16
8. 혁신성장기술자금	18
9.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21
10.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24
11. 조선·해양기자재기업 특례보증	25
12. 부산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26
13.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동성 자금지원	27
14. 소상공인 특별자금	28
15.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29
16.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자금	30
17.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	31
18. 부산 모두론Plus(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32
19.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투자	33
20. 창업특례자금	35
21. 중소기업 자산매입 & 임대지원	36

II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1.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39
2.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신규)	40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41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판매전	42
5. 동백상회(부산제품 쇼핑샵) 운영	43
6.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 지원	44
7. 온라인전용 상품개발 및 기획전 운영	45
8.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46
9.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지원	47
10.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48
11.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49
12.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50
13. 한-아세안패션위크 개최 지원	51
14. 영상분야 지역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52
15.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3 개최	53
16.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운영	54
17. 부산국제수산 EXPO(BISFE) 개최	55
18. 국제수산교류협력 지원	56
19.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57
20.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8
21. 2023 IT EXPO BUSAN 개최	59
22.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	60
23.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개최	61
24. 2023 AI KOREA 개최	62
25.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63

26. 품질경영대회 개최 지원	64
27.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65
28.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66
29.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67
3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69
31. 바이어상담회 개최	71
32.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73
33.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마우처 지원	74
34.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75
35.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76
36. 부산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77
37.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78
38. 수출 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79
39.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80

Ⅲ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83
2. 클린에너지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	84
3.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	85
4.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사업	86
5. 인공지능 로봇활용 기업경쟁력 고도화	87
6. 미래수송기기기술단 수송기기부품지원센터	88
7. 전기차 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89
8. 미래자동차산업 부품생태계 지원	90
9.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91

10.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지원	92
1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제도 운영	93
12. 창업기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95
13.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96
14. 영상산업센터 운영 지원	97
15.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98
16.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	99
17. 부산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	100
18.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창출 지원	101
19. 부산 IP경영인 클럽 운영	102
20.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103
21.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사업	104
22.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05
23.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106
24.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 지원	107
25.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108
26.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 지원	109
27.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술개발	110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역협력 연구개발 사업	111
2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112
3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	114
31.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115
32. 중소기업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116
33. 부산품질혁신센터 운영	117
34. 부산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지원 사업	118
35. 노후공정 제조데이터 활용 고도화지원사업	119
36. 뿌리산업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120

37.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121
38. 항공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122
39.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123
40. 부산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	124
41.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	125
42. 골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	126
43. 중소기업장 등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27
44. 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운영	128
45. 시민 참여형 서비스 R&D 지원사업	129
46. 서비스 강소기업 지원·육성	130
47.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31
48.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132
49. 중화권, 아세안 규격인증·지재권 확보 지원	133
50. 글로벌 수출 스타 기업 육성	134
51.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35
52.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	136

IV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1.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139
2. 신발산업 인력양성사업	140
3. 부산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41
4. 부산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142
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143
6.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144
7.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145

8. IoT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146
9.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분임조 교육	147
10.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	148
11.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49
12. 부산모바일 AI센터 운영	150
13.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1
14.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2

V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 조성	155
2. 산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156
3.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157
4.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 조성	158
5. 강서해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159
6. 미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160
7. 생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161
8.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162
9. 명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163
10.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164
11. 에코델타시티	165
12.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166
13.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 운영	167
14. 미래수송기기기술단 미래자동차지원센터	168
15.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169
16. 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운영	170
17.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171

VI 투자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1.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원	175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178
3. 기업기술정보 지원 사업	181
4. 신발산업 정보화 사업	182
5.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	183
6. 소상공인 IP역량강화	184
7. 중소기업 품질경영 진단 및 기술지도	185
8. 기술자료 임치지원	186
9.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기업옴부즈맨) 운영	187
10.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188
11.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189
12. 부산경제동향 종합 포털 운영	190
13. 월간경제동향 발간	191

VII 중소기업 창업 지원

1. 부산창업지원센터 운영	195
2. 창업보육센터 운영	196
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97
4.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운영	198
5.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199

VIII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 1.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203
- 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8
- 3.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210

IX 유관기관 지원시책

- 1. 부산지방국세청 213
-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267
- 3.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277
-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292
- 5.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314
- 6. 기술보증기금 330
- 7. 한국은행 부산본부 357
- 8.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362
- 9. 부산상공회의소 369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377
- 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86

I. 중소기업 자금지원

2023년도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1. 중소기업 자금지원

1-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대상 : 부산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지식·향만물류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전 업종
 -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운영 <붙임1>

지원조건

자금명	용자한도	상환조건·금리
시설자금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금리 5.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	▷기업체부담 3.7% ▷市 이차보전 1.5%(우대금리+0.3%)

- ▷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창출 5명 이상 기업, 최고 0.2% 추가 이차보전
- ▷ 우대기업
 - 부산광역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국내복귀기업 및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인증기간 내)
 - 부산공예명장,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수상일로부터 3년 적용)
- ▷ 자금용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짝수월(2, 4, 6, 8, 10월)
- 접수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 ▷ 총 6개월 이내)

대출방법

- 본 자금은 취급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용자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신청
- 용자추천서[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5 FAX 888 - 7719
TEL 600 - 1714 FAX 600 - 1805
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1-2 중소기업 시설자금 용자지원

지원규모 : 100억

지원대상, 신청 및 절차, 대출방법 : [1-1]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동일

※ 단, 추천서 유효기간은 다음 접수일 시작 전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지원조건

자금명	용자한도	상환조건 · 금리
시설자금(공장신축, 증·개축 제외)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금리 3.1%(고정),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	

※ 금리는 부산시 자금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시 예산 한도 초과 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재추천
- ▷ 자금용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5 FAX 888 - 7719
TEL 600 - 1714 FAX 600 - 1805
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1-3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대상 : 부산 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지식·향만물류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전 업종
 -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운영 <붙임1>

지원조건

- 용자한도 및 조건 : 8억원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 용자 취급 은행 적용금리에서 市 이차보전액을 공제한 금리

구 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회~4회	1~4회
이차보전	2.0%	1.0%	2.5%

- ▷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창출 5명 이상 기업, 최고 1% 추가 이차보전
- ▷ 우대기업
 - 부산광역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국내복귀기업 및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인증기간 내)
 - 부산공예명장,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수상일로부터 3년 적용)
- ▷ 자금용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홀수월(1, 3, 5, 7, 9월) ▷ 평균 3일정도 신청받음
-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자금지원홈페이지 <http://capital.bepa.kr> 회원가입 후 접수)
- 추천통보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방법 : 육성자금과 동일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5 FAX 888 - 7719
TEL 600 - 1714 FAX 600 - 1805
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참고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용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4102 중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중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중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배점표

○ 점수배점 : 기본 65점, 가점 적용

구 분	가점	대상확인
기본점수	65	지원대상 적격기업
신규업체	7	시 운전자금 대출이력
전분기 탈락기업	3	전분기 탈락기업
우대기업	3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 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인증기간 내), 기타 부산공예명장 및 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고용신장기업(20%이상)	3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타시도 이전기업	3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1년이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2	해당기업 확인서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2	해당기업 확인서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	해당기업 확인서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2	해당기업 확인서류
수출기업	2	수출실적 증명(10만불 이상)
조선·해운기자재기업	2	조선기자재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류
매출신장(20%이상)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부가세확정신고서)
기술혁신기업	2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공공기관·언론 수상기업	1	해당기업 확인서류

※ 지원업체 선정시 기본 65점(자격요건 신청기업)과 가점 적용하여 분기 계획금액 내에서 지원 결정. 단 추천받은 이후 대출포기 기업은 다음 신청 시부터 2회까지 가점 및 자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 소요자금 산정 시준

- 국산시설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 가격
 - ▷ 자체 제작시설은 소요 부품 및 자재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내
- 외국산 시설은 C. I. F(운임보험료포함) 가격 이내(관세 포함)
- 외국산 시설 중 국내 구입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
- 공장설립 건축비 및 부대시설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1-4 지식문화기업 자금

지원규모 : 200억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기업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사업자
- 영상게임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협약업종

지원조건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 연 5.2%(기업체부담 3.7%, 이차보전 1.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지원은 부산시로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 디자인업종(협약업종)에 한함
 -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2.5%,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 분할상환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1월 ~ 9월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이용절차

상담·접수

- 회사 및 기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 기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 자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 기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기보)

지원대상 추천

- 신청업체 기술평가 결과 통보(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 용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거래희망 대출기관에 기술보증서 발급(기보)

사후관리

- 변경신고 사항 검토 승인(기보) →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부산본부 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본래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통상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하기술평가센터

TEL 888-7695 FAX 888-7719
TEL 600-1714 FAX 600-1805
TEL 606-7699
TEL 510-6900
TEL 320-3400
TEL 250-7808

〈참고 3〉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대상

○ 지식서비스산업 : 표준산업분류 업종 및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주)}	7390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주)}	752
일반 교습학원 ^{주)}	855
기타 교육기관 ^{주)}	856
교육지원 서비스업 ^{주)}	857
전자상거래 소매업 ^{주)}	47912
지주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에 한함) ^{주)}	64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주)}	75993
품목(혁신성장공동기준)*	업종 코드
스마트물류시스템	F27015
송금·결제	I46001
금융데이터분석	I46002
금융소프트웨어	I46003
금융플랫폼	I46004
혁신금융서비스	I46005
모바일서비스	I45004
티커머스	I45005
공유경제 플랫폼	I45006
제품서비스	I45008
주문형 맞춤 보안	I45009
글로벌의료서비스	I45007

주) 기술보증기금의 내규에 의해 기업이 실제로 영위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상세내용은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www.igs.or.kr)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 참조 또는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 표준산업분류 업종 및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연극단체	90121
무용 및 음악단체	90122
기타 공연단체	90123
공연기획업	90191
광고 대행업	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라디오 방송업	60100
지상파 방송업	60210
유선 방송업	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유선통신업	61210
뉴스 제공업	63910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그외 기타정보 서비스업	63999
만화출판업	58112
일반 서적 출판업(소설,수필,동화등 문학작품에 한함)	5811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2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1
제품디자인업	73202
시각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공연시설 운영업 ^{주)}	90110
공연예술가 ^{주)}	90131
비공연 예술가 ^{주)}	90132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주)}	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주)}	90199
프로그램 공급업 ^{주)}	60221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주)}	61220
통신재판매업 ^{주)}	61291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주)}	61299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주)}	63112
온라인 교육학원 ^{주)}	85503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주)}	58111
여행사업 ^{주)}	752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주)}	33120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주)}	26519
품 목(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코드
온라인게임	I40001
가상현실게임	I40003
게임엔진	F31004
영화 콘텐츠	I41001
방송 콘텐츠	I41002
케이팝(K-pop)	I41003
애니메이션 콘텐츠	I41004
웹툰	I41006
특수효과	I41007
무대기술	I42002
MICE산업	I42003
애드테크	I43001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I44001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I44002
서비스/경험 디자인	I44003
전자출판	I45003
OTT	I45010
에듀테크	I45002
확장현실	F28001
가상훈련시스템	F28004
스마트홈	F28005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F28006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F28009

주) 기술보증기금의 내규에 의해 기업이 실제로 영위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상세내용은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www.igs.or.kr)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 참조 또는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술혁신기업 자금

지원규모 : 600억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지원조건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 연 5.2%(기업체부담 3.7%, 이차보전 1.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2.5%,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1월 ~ 9월(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이용절차

상담·접수

- 회사 및 기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 기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 자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 기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기보)

지원대상 추천

- 신청업체 기술평가 결과 통보(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거래희망 대출기관에 기술보증서 발급(기보)

사후관리

- 변경신고사항 검토 승인(기보) →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부산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상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하기술평가센터

TEL 888 - 7695
TEL 600 - 1714
TEL 606 - 7699
TEL 510 - 6900
TEL 320 - 3400
TEL 250 - 7808

FAX 888 - 7719
FAX 600 - 1805

<참고 4>**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해당하는 기업

대 상 기 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다음 업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 혁신성장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선도콘텐츠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기술인증기업

기술관련 수상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

※ 기타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

1-6 안전인프라 특별자금

지원규모 : 200억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재해율 및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 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조건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 연 5.2%(기업체부담 3.7%, 이차보전 1.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2.5%,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1월 ~ 9월(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이용절차

상담·접수

- 회사 및 기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 기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 자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 기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기보)

지원대상 추천

- 신청업체 기술평가 결과 통보(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거래희망 대출기관에 기술보증서 발급(기보)

사후관리

- 변경신고사항 검토 승인(기보) →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부산본부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상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하기술평가센터

TEL 888 - 7695
TEL 600 - 1714
TEL 606 - 7699
TEL 510 - 6900
TEL 320 - 3400
TEL 250 - 7808

FAX 888 - 7719
FAX 600 - 1805

〈참고 5〉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지원대상

□ 재해율 및 고령취업자 재해율 높은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
고무제품 제조업	2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
시멘트 제조업	23311
식료품 제조업	10
도금업	2592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섬유제품 제조업	13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추천한 기업으로, 보증신청 시 기술보증기금에 컨설팅 추천 요청 가능
 - 컨설팅 신청 및 관련 교육 수수료 시 보증심사 진행 가능

【 위험성평가 컨설팅 】

-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 시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사업장 보조금 추가지원
- 기술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컨설팅 추천 시 신청기업은 컨설팅 비용 100만원 면제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아래 5개 유형 중 하나를 획득한 기업

사업명	판단기준	유효기간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 증	3년
②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1년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확인심사	적합판정	1년
④ 위험성평가 사업	인 정	3년
⑤ 안전 신기술 육성 플랫폼 운영(안전신기술 공모전)	공모전 수상	3년

1-7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일자리 혁신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기업

지원조건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 연 5.2%(기업체부담 3.7%, 이차보전 1.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2.5%,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1월 ~ 9월(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이용절차

상담·접수

- 보증상담 및 신용보증서류 제출(업체 → 신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신보 → 부산경제진흥원)

현장평가 및 심사

- 현장평가 및 보증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신보)

지원대상 추천

- 지원대상자 선정 추천서 제출 (신보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 용자추천 대상확정 및 대출은행에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대출은행에 신용보증서 발급(신보)

사후관리

- 변경신고사항 검토 승인(신보) →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기금

TEL 888 - 7695
TEL 600 - 1714
TEL 1588 - 6565

FAX 888 - 7719
FAX 600 - 1805

〈참고 6〉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아래의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테 마	분 야
첨단제조 · 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 · 우주, 차세대동력장치
화학 · 신소재	차세대전자소재, 고부가표면처리, 바이오소재, 융복합소재, 다기능소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환경 · 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건강 · 진단	생체조직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유전자연구고도화,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정보통신	차세대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전기 · 전자	차세대반도체, 감성형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능동형조명, 차세대컴퓨팅
센서 · 측정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지식서비스	게임, 영화 · 방송 · 음악 · 애니메이션 · 캐릭터, 창작 · 공연 · 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 일자리 창출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보가 선정한 "좋은 일자리기업" 또는 "최고 일자리 기업" 등 신보의 일자리 창출 관련 보증 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으로 신보의 고용창출우수기업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기업

□ 유망창업기업

- 신보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유형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을 받은 기업

1-8 혁신성장기술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중소기업 운전자금 규모 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지원조건

-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운전자금 3억원 이내 이차보전 0.8% 지원)
- 운전자금 : 이차보전 0.8%(3억원 내 이차보전 지원),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1월 ~ 9월(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이용절차

상담·접수

- 회사 및 기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 기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 확인(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 자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 기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기보)

지원대상 추천

- 신청업체 기술평가 결과 통보(기보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거래희망 대출기관에 기술보증서 발급(기보)

사후관리

- 변경신고사항 검토 승인(기보) →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부산본부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상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사하기술평가센터

TEL 888 - 7695
TEL 600 - 1714
TEL 606 - 7699
TEL 510 - 6900
TEL 320 - 3400
TEL 250 - 7808

FAX 888 - 7719
FAX 600 - 1805

항 목	세 부 사 항			
	□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작기계 제조업
	28121	전회로 기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분야(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제조 또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승인기업으로 유효(지정)기간 이내인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예약 취소, 수출·입 애로,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자료 및 현장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참조)

- 벤처·이노비즈 기업
- 기술인증(NEP, NET 등) 및 기술관련 수상(장영실상,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등) 기업
-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며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기술집약산업, 혁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컨텐츠사업, 기후·환경산업 등

1-9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개요

- 보증규모 : 1조 7,140억원
- 대상기업 :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사차·유형향락 업종, 신용부실 기업, 보증기관 중복지원 기업
- 대상업종 : 모든 업종
 - ※ 단,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재보증계약서」 상 재보증 제한업종 <참고7>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참고8> 제외
- 보증한도 :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보증수수료 연 1.2% 내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 매출, 업력, 기보증지원액, 기업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보증한도액 탄력적 운용
- 보증기간 : 대출기간 이내
- 접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이용절차

- ① 신용보증 상담 : 신청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② 신용보증 신청 : 신용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③ 신용조사 :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 가동상황, 성장성 등 조사
- ④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신용보증약정 체결 : 지원여부, 지원규모 결정
- ⑤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 ⑥ 사후관리 : 애로해결 및 경영진단·지도 실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참고 7〉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3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333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참고 8〉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건전 문화 관련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투기 조장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1-10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사업목적

-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출 받기 힘든 중소기업 긴급자금 필요

지원개요

- 대상 : 고환율 피해기업, 중·저신용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BB+ ~ CCC-)
- 지원규모 : 1,000억원(고환율 500억원, 긴급유동성 500억원)
- 보증한도 : 고환율(2억원), 긴급유동성(5억원)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보증수수료 0.5% ~ 0.9%
- 이차보전 : 2.0%
- 지원방법 : 1년거치 4년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또는 대출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 현장실사 → 지원자격심사 → 보증서발급 → 자금대출
- 신청서류
(상담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등
(심사시)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1 조선·해양기자재기업 특례보증

사업목적

- 지역 내 조선·해운사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대량실업을 예방하고, 부산시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NICE 기업신용등급 CCC이상 기업*
 - * ①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 이상 기업
 - * ② ①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 *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8억 이내(CCC등급 4억원)
-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금리 : 변동금리, 보증료율 0.4%
- 시행기간 : 2023. 1월 ~ 12월(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 현장실사 → 지원자격심사 → 보증서발급 → 자금대출
- 신청서류
 - (상담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등
 - (심사시)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88 - 7695

TEL 860 - 6600

FAX 888 - 7719

FAX 816 - 4551

1-12 부산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사업목적

- 지역 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불황 및 구조조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부산시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기업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 *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비중 20% 이상
- 지원한도 : 기업당 10억 이내
- 상환기간 : 1년 일시상환 조건(1년 단위 기한연장 2회 가능)
- 대출은행 : 부산, 경남,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리은행
- 대출금리 : 변동금리, 보증료율 0.4%
- 시행기간 : 2023. 1월 ~ 12월(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또는 대출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 현장실사 → 지원자격심사 → 보증서발급 → 자금대출
- 신청서류 : (상담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등
(심사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3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동성 자금지원

지원목적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미래차 산업으로 업종전환 등에 따른 육성·운전자금 등 유동성 공급

사업개요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

- 사업기간 : 2020. 6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시비출연 : '20년 10억원, '21년 10억원, '22년 10억원(지원실적에 따라 추가 출연예정)
- 보증재원 : 310억원(정부 100, 완성차 140, 지자체 70)
- 지원조건 : 완성차 및 기술보증기금 등이 추천하는 1~3차 협력업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하 부품기업, 보증한도 100%, 보증료 0.3%감면
- 지원규모 :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 사업주관 :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기술보증기금

TEL 888 - 4644
TEL 606 - 7473

FAX 888 - 4639
FAX 0505 - 020 - 2279

1-14 소상공인 특별자금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의 협력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
-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개선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규모 : 4,500억원
- 보증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보증료율 0.8~0.9%
- 고객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분 1.5% 또는 1.7%를 차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또는 협약은행 각 영업점
- 상담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심사시 :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협약은행 :
- 이용절차 : 자금신청(부산신보, 협약은행) → 현장실사(부산신보, 협약은행) → 지원자격심사(부산신보) → 보증서발급(부산신보) → 자금대출(협약은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5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의 협력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
-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사업자의 경영애로 개선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0억원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1.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보증료율 0.9%
- 고객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분 최초 1년간 전액 지원, 이후 4년간 0.8% 차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또는 협약은행 각 영업점
- 상담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심사서 :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이용절차 : 자금신청(부산신보, 협약은행) → 현장실사(부산신보, 협약은행) → 지원자격심사(부산신보) → 보증서발급(부산신보) → 자금대출(협약은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6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자금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의 협력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
- 전자상거래, 스마트상점, 지식서비스사업 등 디지털 기업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규모 : 500억원
- 보증한도 : 기업당 0.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보증료율 0.9%
- 고객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분 최초 1년간 1.7% 지원, 이후 4년간 1.5%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및 각 지점 또는 협약은행 각 영업점
- 상담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심사시 :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이용절차 : 자금신청(부산신보, 협약은행) → 현장실사(부산신보, 협약은행) → 지원자격심사(부산신보) → 보증서발급(부산신보) → 자금대출(협약은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7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개선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등급(1~10등급)이 신청가능하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2021.6.30.이전 창업기업)
- 지원규모 : 2,000억원
- 보증한도 : 기업당 1천만원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조건 : 변동금리, 보증료율 0.8~0.9%
- 고객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분 최초 1년간 전액 지원, 이후 4년간 0.8% 차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1. 12. 13. ~ 2023. 6. 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개인기업 : 협약은행 모바일 앱 신청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방문 신청
- 상담시 구비서류(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또는거주지)
 - 법인기업 : 개인기업 신용조사자료 일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 정관(사본)
- 협약은행 :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이용절차 : 자금신청(부산신보, 협약은행) → 현장실사(부산신보, 협약은행) → 지원자격심사(부산신보) → 보증서발급(부산신보) → 자금대출(협약은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부산은행(모바일뱅킹)	TEL 1588 - 6200	
국민은행(스타뱅킹)	TEL 1588 - 9999	
신한은행(솔SOL)	TEL 1599 - 8000	
하나은행(원큐)	TEL 1588 - 1111	

1-18 부산 모두론Plus(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지원규모 : 1,000억원(3년간)

추진배경

-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
-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기업규모별 금융지원 제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수·정상 업체	영세중소기업	우수·정상 업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부산시 선도기업지원 및 5대전락산업지원(재단) 신보, 기보 보증지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소상공인지금(6천억 이차보전)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햇살론(재단) 등 서민금융지원

『부산 모두론』 특별자금 지원 개요 > 100억 출연, 1,000억 보증지원

구 분	부산 모두론(160억원)	부산 모두론 플러스(총 1,000억원 3년간)
지원대상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6~8등급, BB~CCC등급 ※ 저신용등급 전용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4~10등급(744점 이하), BB~CCC등급 ※ 저신용등급 전용
대출한도	3천만원(소상공인), 5천만원(소기업)	3천만원(소상공인), 5천만원(소기업)
금리	우대금리(변동)	
이차보전	0.8%	
상환조건	만기1년 일시상환(4회 연장가능)	
보증료율	0.7%	
보증비율	100%	
시행일	'20.6.30.~'23.6.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21.7.13.~'23.6.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7695 FAX 888 - 7719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19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투자

사업목적

- 정책자금 유치 및 투자조합 결성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벤처투자법)
- 지원대상 :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사업기간 : 펀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통상 8년)
- 시행주체 : 벤처투자조합
- 지원내용 :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

운영펀드

-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자펀드 3개 750억원('23. 1. 현재)
 - BNK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250억원, 포스코 부산 지역뉴딜 벤처투자조합 250억원, 선호엔젤 오픈이노베이션 지역혁신펀드 2호 250억원
- 창업펀드 총괄 현황 : 38개 7,291억원('23. 1. 현재)

조합명	결성규모(억원)				운용기간	운용기관 (창투사)
	총액	시비	모태	기타		
KoFC-BK Pioneer Champ 2010-13	155.9	13.9	95.3	46.7	'10.7~'23.3	B K 인 베 스투 먼 트
BK동남권일자리창출투자조합	105	10.5	70	24.5	'12.4~'23.2	B K 인 베 스투 먼 트
부산 엔젤투자매칭펀드	50	10	39.5	0.5	'12.6~'24.6	한 국 벤 처 투 자
L&S 농수산업투자조합	160	16	80	64	'12.7~'23.7	L & S 벤 처 캐 피 탈
엘앤에스 6호EarlyStageII투자조합	150	15	90	45	'13.9~'23.9	L & S 벤 처 캐 피 탈
엘앤에스7호동남권상생투자조합	96.63	15	50	31.63	'14.11~'23.11	L & S 벤 처 캐 피 탈
BK동남권서비스전략산업투자조합	75	11.25	37.5	26.25	'15.6~'23.6	B K 인 베 스투 먼 트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쿼터투자조합	310	100	100	110	'15.10~'23.10	스 톤 브 릿 지 벤 처 스
CCVC-부산 청년창업펀드	100	10	70	20	'16.3~'24.3	쿨 리 지 코 너 인 베 스투 먼 트
케이브릿지1호스타트업 투자조합	170	30	120	20	'16.3~'24.3	케 이 브 릿 지 벤 처 스
BK 5호동남권투자조합	75	11.25	37.5	26.25	'16.9~'24.9	B K 인 베 스투 먼 트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	501	15	9.8	476.2	'17.4~'25.4	이 노 폴 리 스 파 트 너 스
BK 조선업 투자조합	350	21	175	154	'17.5~'25.5	B K 인 베 스투 먼 트
케이브릿지2호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100	15	60	25	'18.1~'26.1	케 이 브 릿 지 인 베 스투 먼 트
케이브릿지-코나혁신스타트업투자조합	166	10	90	66	'18.9~'26.9	케 이 브 릿 지 인 베 스투 먼 트
CCVC코리아임팩트펀드	187.5	10	140	37.5	'18.11~'26.11	쿨 리 지 코 너 인 베 스투 먼 트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제1호 투자조합	179.1	10	100	69.1	'19.5~'27.5	케 이 그 라운 드 벤 처 스
SR 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50	5	100	45	'19.5~'27.5	하 이 투 자 파 트 너 스 (주)
WE초기기업펀드1호	578	20	300	258	'20.9~'28.9	위 벤 처 스 (유)
케이브릿지 관광산업 레벨업 투자조합	217.2	50	145	22.2	'20.8~'28.8	케 이 브 릿 지 인 베 스투 먼 트 (유)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165.4	7.5	80	77.9	'20.5~'28.5	BNK 벤 처 투 자 (주)
제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54	5	30	19	'20.10~'28.10	제 피 러 스 랩
부산-롯데 창조영화펀드	210	60	0	150	'16.3~'24.3	타 임 와 이 즈
라구나다이나믹 게임&콘텐츠펀드	158.6	10	75	73.6	'20.10~'26.10	쥬 라 구 나 인 베 스투 먼 트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펀드	385	10	180	195	'21.9~'29.8	스 마 트 스테 디 벤 처 스 (주)

조합명	결성규모(억원)				운용기간	운용기관 (상투자)
	총액	시비	모태	기타		
부산연합제1호 개인투자조합	52	7	40	5	'16.7~'23.7	부 산 연 합 기 술 지 주
부산연합제2호 개인투자조합	30	7	22	1	'17.10~'27.10	부 산 연 합 기 술 지 주
부산연합제3호 개인투자조합	41.8	7	30	4.8	'18.10~'27.10	부 산 연 합 기 술 지 주
BS다이나믹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50	5	30	15	'20.11~'27.11	부 산 연 합 기 술 지 주
비엔케이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250	24.7	74	151.3	'21.12~'29.12	BNK벤처투자(주)
포스코 부산 지역뉴딜 벤처투자조합	250	24.7	74	151.3	'21.12~'29.12	포 스 코 기 술 투 자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Ⅱ	125	10	100	15	'22.5~'32.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벤처 투자조합	96	10	60	26	'22.7~'30.7	NVC파트너스-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스마트 유니온 비대면 투자조합	147	10	44	93	'22.9~'30.9	유니온투자파트너스(주)
데일리 크릭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500	10	200	290	'22.11~'30.11	(주) 데 일 리 파 트 너 스
선보엔젤 오픈이노베이션 지역혁신펀드 2호	250	24.7	74	151.3	'22.10~'30.10	선 보 엔 젤 파 트 너 스
마이다스동아엔브이씨 2022 해양 산업업 투자조합	300	30	200	70	'22.12~'30.12	NVC파트너스-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베이비샤크 넥스트 웨이브 투어 펀드	350	50	225	75	'22.12~'30.12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
합 계	7,291.13	711.5	3,447.6	3,132.03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부산테크노파크

TEL 888 - 4422
TEL 921 - 6002

FAX 888 - 4379

1-20 창업특례자금

사업목적

-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성장 촉진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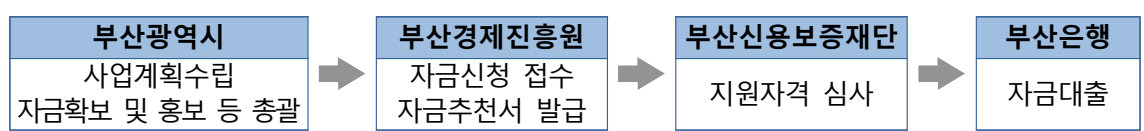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중 부산시 창업지원기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사업
- 지원규모 : 15억원
- 지원조건

구 분	창업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2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금리	· 2.7%(고정)	· 2.7%(고정)
신용보증	· 0.6% 고정요율	· 0.6% 고정요율
지원한도	· 5천만원	· 1억원

※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2023. 2월 ~ 연내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체계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 - 4415	FAX 888 - 4379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TEL 600 - 1867	FAX 600 - 1802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	TEL 860 - 6600	FAX 816 - 4551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TEL 860 - 6750	FAX 755 - 603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TEL 860 - 6700	FAX 316 - 6788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TEL 860 - 6800	FAX 242 - 6878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TEL 860 - 6730	FAX 831 - 118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860 - 6780	FAX 611 - 8944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TEL 860 - 6880	FAX 714 - 2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TEL 860 - 6687	FAX 714 - 6255

1-21 중소기업 자산매입 & 임대지원

사업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대상기업에 임대료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료를 받아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 이후 우선 매수 기회 제공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
 - ※ 단, 임대료 연체 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 지원내용 : 임대료 4%(부산시 2%, 캠코 2%) 지원
- 수행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절차

- 지원체계
 - 부산광역시 : 사업계획 수립, 자금확보 및 홍보 등 사업총괄
 - 부산경제진흥원 : 자금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및 자금추천서 발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5
TEL 600 - 1859

FAX 888 - 4379
FAX 600 - 1802

II.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2.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2-1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사업목적

- 부산지역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벅스코에서 3일간 지역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개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 행사기간 : '23. 7. 5. ~ 7. 7.(예정)
- 주관기관 : (주)벅스코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부산우수제품 발굴, 지역제품 전시·판매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

운영내용

- 사 업 명 :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지원
- 사업내용 : 부산우수제품 판로개척, 유통망 확대, 상품 홍보 지원(참여기업 일부 부담)

추진일정

- 2023. 2. : 수행기관 사업대행 계약
- 2023. 4. : 우수제품 발굴 및 참여기업 모집
- 2023. 5. : 부산브랜드페스타 계획 수립 등 행사 준비
- 2023. 7. :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벅스코 마이스사업실

TEL 888 - 7696
TEL 740 - 7546

FAX 888 - 7719
FAX 740 - 7559

2-2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요구 증대 및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 제공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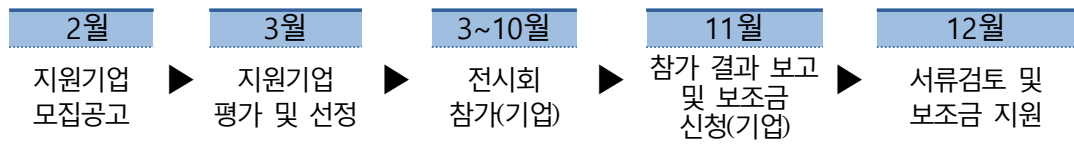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산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 비용 지원 ※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내용

- 국내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희망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 등 비용 지원
 - 부스비 : 기본부스 임차료
 -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
※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전시·박람회 참여 목적 위한 제작물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 2월 ~ : 사업자선정 공고 및 신청
- 신청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6 FAX 888 - 7719
TEL 600 - 1733 FAX 600 - 1805
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사업목적

-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구매기관 :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및 이전 공공기관
- 주요내용 : 공공기관에서 구매시(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
 - ※ 법정 의무 구매비율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 여성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물품·용역 5% 이상(공사는 3% 이상)
 -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운영내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www.smpp.go.kr)
 -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촉진을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유통센터	TEL 888 - 7696 FAX 888 - 7719 TEL 02 - 2656 - 9991
-------------------------------	--

2-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판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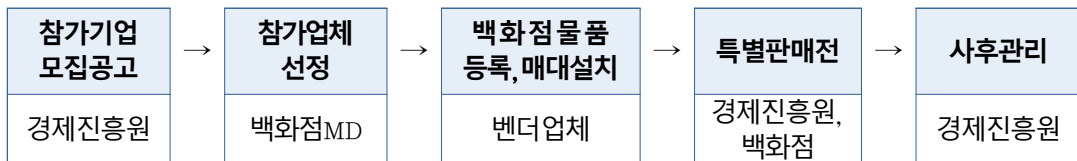
사업목적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으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대형백화점에서의 특별판매전 지원
- 사업비 : 20 백만원(시비)
 - 대형백화점 내 특별판매전 2회 개최 × 10백만원
 -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전액 업체부담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추진절차



신청방법

- 2023. 2. ~ : 특별판매전 기업모집 공고 후 대형유통사 심사로 입점기업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6
TEL 600 - 1736

FAX 888 - 7719
FAX 600 - 1805

2-5 동백상회(부산 우수제품 쇼핑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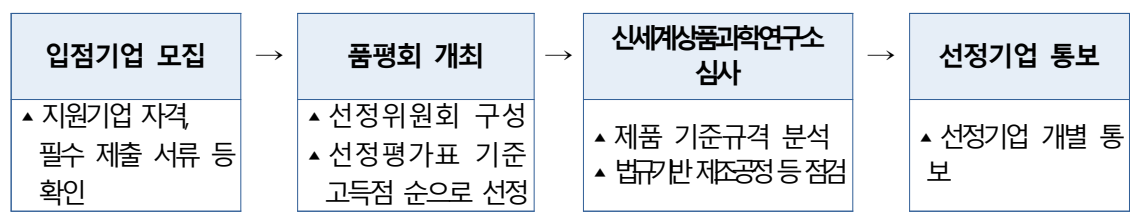
사업목적

- (주)신세계와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추진
- 부산지역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거점역할 수행

사업개요

- 매 장 명 : 동백상회
- 매장위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해운대구 우동)
 - ▷ 2023. 2월 「동백상회」 개장 예정
- 사 업 비 : 170백만원
- 판매품목 :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아이디어제품 등 소비재 위주
- 입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수제품
- 시행주체 : (재)부산경제진흥원

입점기업 선정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 8. ~ :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예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7691 TEL 600-1716
---------------------------------	------------------------------

2-6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 지원

사업목적

-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을 통한 유통망 개척과 판로확대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9조제1항제4호
-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된 8개사
- 사업기간 : 2023년
- 시행주체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120백만원(시비) ※ 홈앤쇼핑 부담 별도
- 사업내용 : 부산지역 8개 중소기업 홈앤쇼핑 방송 입점 지원
 - 기업당 홈앤쇼핑 입점비용 15백만원 지원
 - 상품판매기획자 상담, 품질검사, 방송기획, 판매준비, 방송·판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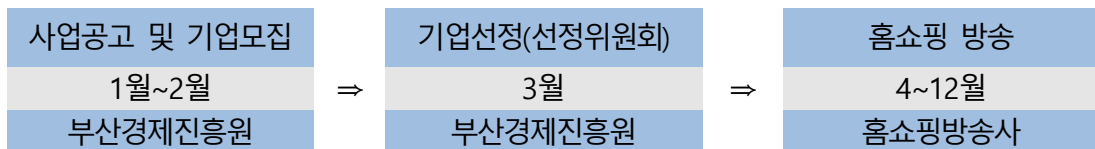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방송 입점 지원
- 지원규모 : 홈쇼핑 방송 입점비용 15백만원/1개사 지원(시비)
- 방송조건 : 1회 50분 방송, 판매 수수료율 전화주문8%, 인터넷주문22% 적용
 - 상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배송비, 보조 영상 비용은 업체 부담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4831

FAX 888 - 7739

2-7 온라인전용 상품개발 및 기획전 운영

사업목적

-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9조제1항제9호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시행주체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오픈마켓운영사 부담 별도
- 사업내용 : 기업별 특성에 맞춘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마케팅 지원
 -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 : 시장조사~디자인기획 원스톱 지원
 - 마케팅 지원 : 온라인기획전 운영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지원규모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 : 12여개사 (시비)
 - 마케팅지원 : 120여개사 (오픈마켓운영사 부담)

신청방법 및 절차

- 상품개발 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2월
 - 상품개발 대상기업 모집 : 경제진흥원 모집 공고
 - ※ 모집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직접생산 또는 OEM제품)
 - 상품개발 대상기업 선정 : 2배수 서면평가 → 최종 현장평가 후 선정
 - (1차 서면평가) 성장가능성, 제품경쟁력, 온라인적합성, 가격경쟁력
 - (2차 현장평가) 사업참여의지, 제품경쟁력, 제품생산력 및 서비스역량 등
- 지역 중소기업 온라인기획전 개최 ▶3~12월
 - ※ 지원대상 : 온라인판매 가능 상품 보유한 부산지역 중소기업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4831

FAX 888 - 7739

2-8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사업목적

- 소비패턴 변화 및 유통시장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추세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9호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사업내용 : 기업별 특성에 맞춘 온라인시장 역량 강화 지원사업
- 사업비 : 150백만원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판매 및 실무교육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신청기간 : 2022. 4.(예정)
- 참가신청방법 :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별도 공고
- 참가문의 및 신청 :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센터

TEL 888 - 4831
TEL 600 - 1712

FAX 888 - 7739
FAX 600 - 1803

2-9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지원

사업목적

-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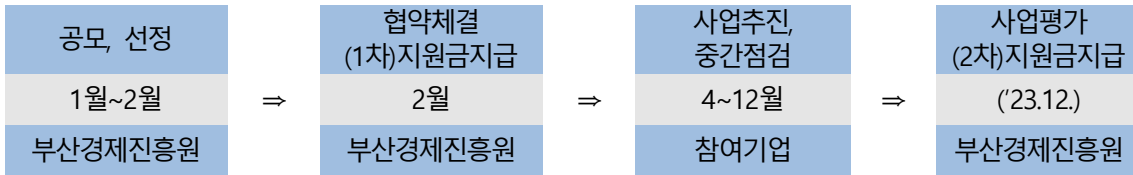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9조제1항제9호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시행주체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 업 비 : 59.5백만원(시비) *참여기업 부담 별도
- 사업내용 :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독립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기존 온라인 독립몰의 리뉴얼 및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부산지역 소재 4개 중소기업
 - 기업당 10~20백만원 범위 내 차등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4831 FAX 888 - 7739

2-10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사업목적

- ICT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전자상거래 교육 지원으로 기업의 정보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30조, 「상공회의소법」제54조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대상 :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 41백만원(시비) *부산상공회의소 부담 별도
- 사업내용 :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교육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지원내용

- 전자입찰정보서비스 운영 지원(1,000여개사)
 - 국내에 시행하는 입찰정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기업에 필요한 정보의 무상제공
 - ▶ 물품(구매)입찰, 시설(공사)입찰, 용역입찰 등
 - 홈페이지(<http://bid.bcci.or.kr>)를 통한 서비스지원 ▶ 회원가입 필요(무료)
 - 전자입찰 실무 상시 컨설팅(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
-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대응전략 수립 등 교육
 - 전자입찰 과정에 대한 기업 담당자 실무교육
 - 기업 맞춤형 전자상거래 교육

추진 일정

- 홈페이지(<http://bid.bcci.or.kr>)에서 연중 무료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4831

FAX 888 - 7739

2-11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비대면·온라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
- 회사에서만 가능한 업무를 모바일 앱이나 개인pc를 이용해 재택·이동 중 처리할 수 있어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중소기업시책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90개사
-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백만원 × 90개사(기업 자부담 10% 별도)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비대면 솔루션 지원
 - ① 화상회의 : 온라인 화상회의, 화상 면접 등
 - ② 재택근무 : 근태관리, 전자결재, 회계관리, 고객·거래처·재고관리 등
 - ③ 네트워크·보안 : 홈페이지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스팸메일 탐지 및 차단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신청기간 : 2023. 3월(예정)
- 참가신청방법 : 부산시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
- 참가문의신청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4832

FAX 888 - 7739

2-12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브랜드의 세계화
- 신발·섬유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경제 발전
- 신제품 개발 촉진·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23. 10월중 3일간
- 개최장소 : 미정('22년도 BEXCO 제1전시장)
- 전시내용 : 개막식, 전시회, 수주상담회, 학술대회 등 부대행사
 - 전시회 : 신발, 섬유 완제품 및 관련 원·부자재 등 관련 장비
 - 부대행사 : 스트리트 패션쇼, 세미나, 경진대회, 한국 신발디자인 공모전 등
 - ▷ 스트리트패션슈즈전, 한국전통의상공모전,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 BITE 포럼, 국제첨단신발기능경진대회, 신발생체역학 세미나, 범한국신발인대회 등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벅스코,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산업용섬유협회,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업체참가 안내

- 참가대상 : 국내외 신발·피혁·섬유·패션, 산업용섬유(융합 유기소재 등) 관련 업체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부스 설치비
- 접 수 처 : 벅스코(홈페이지: <http://www.fashionbusan.co.kr>)

지원내용

- 제품 전시·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구매상담 지원
- 국내외 방송·언론·전문잡지를 통한 전시회 홍보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주)벅스코

TEL 888 - 6754
TEL 740 - 7468

FAX 888 - 6739
FAX 740 - 3404

2-13 한-아세안패션위크 개최 지원

운영목적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로 향후 부산의 섬유패션 산업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22년 ~ 매년)
- 수행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비 : 35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패션디자이너
- 선정방법 : 공개 모집후 선정 평가

지원내용

- 한-아세안패션쇼 개최 지원(무대, 연출, 영상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23. 3월 ~ 5월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5 FAX 888 - 6739
TEL 790 - 1094, 1095

2-14 영상분야 지역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 영상분야 지역기업의 우수 콘텐츠 홍보기회 확대
- 우수 영상기술의 전시·홍보를 통한 부산지역 영상기업 인지도 향상
- 타 업종 정보교류, 상담을 통한 시장개척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영상분야 지역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부산 영상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부산지역 영상·게임 업체
- 운영내용 : 업체 기술력 및 콘텐츠 홍보, 1:1 마케팅 상담, 기업행사 홍보 지원 등
- 총사업비 : 26백만원(시비)
 - 전시회 부스설치비, 통번역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추진일정

- 2023. 3. ~ 5. : 부산지역 영화영상관련 국제행사 등 리스트 작성
- 2023. 6. ~ 7. : 공동마케팅 참가할 행사 및 참여기업 선정
- 2023. 8. ~ 12. : 지역영상기업 공동마케팅 참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TEL 888-5141
TEL 746-0016

FAX 888-5139

2-15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3 개최

사업목적

- 부산 게임산업 기반조성 및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자간 네트워크 장 마련
- 글로벌 인디게임 유통·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인디게임 개발자, 인디게임 관련 업체 등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행사기간 9월중 4일간 ※온라인 9월 1개월간
- 행사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온라인 www.bicfest.org
- 시행주체 : (사)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 사업비 : 6억원(시비)
- 사업내용
 - 전시행사 : 국내외 인디게임 경쟁작 및 초청작 전시, 어워드
 - 컨퍼런스 : 인디게임산업 동향, 게임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발표 세션
 - 부대행사 : 웰컴 리셉션, B2B상담, 럭키드로우 행사 등

지원내용

-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자 간 네트워크 장 마련
- 인디게임 어워드 수상을 통한 취·창업 기회 제공
- 후원사 및 파트너사 B2B 상담 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신청기간 : 2023. 4. ~ 5월(예정)
-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www.bicfest.org)
- 참가 문의 및 신청 : (사)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TEL 888 - 5155

FAX 888 - 5139

(사)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TEL 070 - 8855 - 5015

2-16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운영

사업목적

- 지역 내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후속지원 등을 통한 지역 스타 기업 발굴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융복합 등 콘텐츠 분야 전반(게임 제외)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후속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지원 : IP융복합 콘텐츠, 기술기반 콘텐츠, 파일럿 콘텐츠 제작 지원
- 마케팅 후속 지원 : 국내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 과제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공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결과보고
- 마케팅 후속 지원 : 사업공고 → 서면평가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검토 및 지급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 기업 후속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진흥단

TEL 888 - 5151
TEL 749 - 9144

FAX 888 - 5139

2-17 부산국제수산 EXPO(BISFE) 개최

사업목적

- 수산가공·식품·기자재 등 관련업계 해외 수출입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확대
- 국제수산업 관련 학술행사 및 관련행사 동시 개최로 해양수도 위상 제고
- 수산업 및 관광·컨벤션·창업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23. 11. 1.(수) ~ 11. 3.(금) / BEXCO 제1전시장
- 규 모 : 26,508㎡, 22개국, 417개업체, 950부스
- 사 업 비 : 1,340백만원(국비 200, 시비 450, 자부담 690)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주)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
- 주요내용
 - 개막행사 : 주요내빈 환담회, 행사브리핑, 커팅식, 전시장 순회
 - 전시행사 : Seafood관, 수산기자재관, 해외국가관, 창업투자지원관, 수산식품명인관
 - 교역행사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국내비즈니스상담회, BISFE네트워킹교류회 등
 - 학술대회 : 수산식품성장포럼, 한국양식기술크숍,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등
 - 동시·부대행사 : 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 유튜브온라인 라이브방송, 해외참가업체 산업시찰 등

지원내용

- 부산시 보조금 지원 : 2개 주관사(BEXCO, 한국수산무역협회)에 대한 행사보조
- 부스비 지원 : EXPO 참가 업체에 대한 부스 임차료 할인율 차등 지원
- 행사장임대료 지원 : 전시장 임대료 지원
- 광고비 지원 : 행사홍보 마케팅 등 광고(방송, 신문, 전문지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TEL 888 - 5454

FAX 888 - 5429

2-18 국제수산교류협력 지원

사업목적

- 관내 중소 수산 관련 수출입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수산 관련 박람회참가 지원 등으로 수출입 시장 확대
- 수출입 업체의 마케팅 능력 증대를 통한 수산 관련 상품 수출입 교역 촉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수산물(식품) 및 수산 기자재 업체(또는 지원단체) 등
- 시행시기 : 2023. 1월 ~ 12월
- 사업비 : 11,900천원(시비) * 자부담 별도
- 수행단체 :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사)수산기자재협회, (사)부산명품수산물협회, (사)수산가공선진화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사)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 (사)부산고등어전략식품사업단 등 수산 관련 단체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 국제수산 관련 박람회참가 지원
 - 해외박람회 부스비 및 부대경비 등 참가비용 지원
-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지원
 - 2023년 부산국제수산EXPO 연계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1월) ⇒ 사업공모 및 접수(2월)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3월)
⇒ 사업자 선정(3월) ⇒ 사업추진 및 완료·정산(4월~12월)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TEL 888 - 5451

FAX 888 - 5429

2-19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급변하고 있는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신규 판로개척 지원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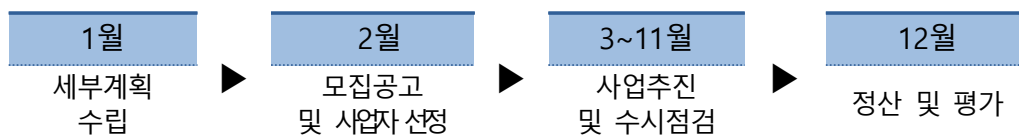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대상 : 수산(물)가공업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등
- 사업기간 : 2023년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온라인광고비·택배비 중 택1 지원
 - 재원비율 : 시비 90%, 자부담 10%

지원내용

- 온라인광고비·택배비 중 택1 지원
- 지원한도 : 1개사당 1,500천원

신청방법 및 절차

- '23년 2월 사업자 선정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
-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TEL 888-5434

FAX 888-5429

2-20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역량 교육지원, 수출바우처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시장 진출 도모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증진 도모하여 신발산업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주요사업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바우처 및 수출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사업,
해외 신발전시회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업체 지원사항

- 신발산업 스타트업 수출바우처 지원
- 해외유통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 입점 지원, 해외특허·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클라우드 펀딩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홍보영상 제작지원
- 수요기업 맞춤형 신발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실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TEL 888 - 6751
TEL 979 - 1884

FAX 888 - 6739
FAX 979 - 1729

2-21 2023 IT EXPO BUSAN 개최

사업목적

- 부산지역 IT 관련 신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등 IT산업 성장 지원
- 국내외 IT산업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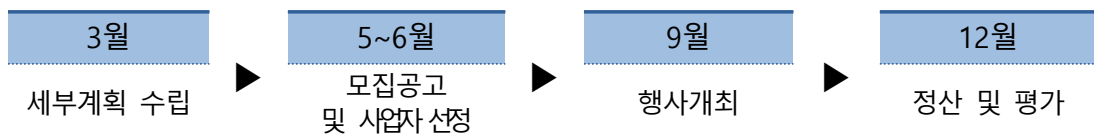
- 지원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2월 ※ '23. 9월중 행사 개최 예정
- 수행기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IT제품·기술 전시회,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등

지원내용

- IT기업 전시홍보관 지원
- 온·오프라인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신청기한 : 2023. 5월 ~ 8월(예정)
-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등록(www.itexpo.or.kr) 및 팩스 접수
- 신청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TEL 888 - 4561 FAX 888 - 456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SW서비스진흥팀 TEL 749 - 9332 FAX 731 - 6664

2-22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

사업목적

- 4차산업 혁명의 기반기술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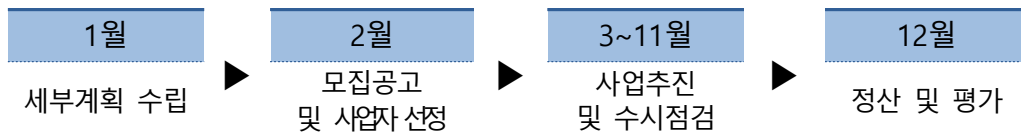
- 지원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비 : 1,370백만원
- 사업내용
 - 클라우드 혁신센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인증 지원
 - 클라우드 아이디어 공모전 및 인식 확산 지원

지원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인증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23년 2월 사업자 선정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
- 신청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클라우드확산팀

TEL 888 - 4564
TEL 749 - 9448~9

FAX 888 - 4569

2-23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개최

사업목적

- 클라우드 전문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콘퍼런스 개최로 클라우드 산업 육성 도모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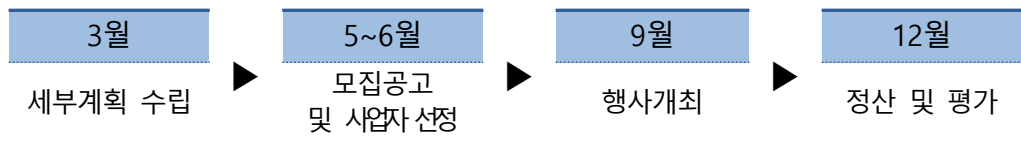
- 지원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23. 9월중 행사 개최 예정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비 : 216백만원
- 사업내용
 - 클라우드 제품 전문 전시회
 -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 개척
 - 클라우드 인식확산을 통한 지역 디지털 전환 촉진
 -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기술 소개

지원내용

-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참가 지원(기업부스, B2B, 기업간 네트워킹, 교육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23년 5월 사업자 선정 공고문 참조하여 신청
- 신청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클라우드확산팀	TEL 888 - 4564 TEL 749 - 9448~9	FAX 888 - 4569
---	------------------------------------	----------------

2-24 2023 AI KOREA 개최

사업목적

- 수도권 중심으로만 개최되던 AI전시회를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AI 도시 부산' 성장 견인 동력 확보 및 AI 붐업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 지역 중소 ICT업체
- 사업기간 : '23. 9. 6. ~ 9. 8. ※ 클라우드 엑스포, IT 엑스포 동시 개최 추진
- 수행기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장 소 : 벅스코 전시장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 행사내용
 - 전시회 : AI 관련 정책 및 기술, 제품 소개, 부산 AI특별관, AI기업관 등
 - 콘퍼런스 : AWC&AMC, 국내외 AI 명사 강의, 인공지능 윤리대전 등

지원내용

- 2023 AI KOREA 참가 지원(기업부스, B2B, 기업간 네트워킹, 교육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 7월 ~ 8월(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aibusan.kr)
- 신청문의 : 2023 AI KOREA 사무국(051-740-7401)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데이터·AI팀

TEL 888 - 4594
TEL 749 - 9343

FAX 888 - 4569

2-25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추진목적

- 기계 관련 지역 업체의 판로 및 수출 촉진과 전시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계산업이 집적된 동남권(부·울·경)을 기계 및 기계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기계산업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기간·장소 : 2023. 5. 16. ~ 5. 19. (개최 예정) / BEXCO ▷ 격년제 홀수년 개최
- 참가업체 : 30개국 500여개 업체(전망)
- 전시분야 : 기계관련 종합 전시회
 - ▷ 공장자동화기계, 공작기계, 금형, 용접기기, 부품소재 등
- 수출상담 : 2,000백만달러 목표
- 경제효과 : 920억원 전망
- 부대행사 : 학술대회,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수출상담회, 로보윈 대회, 기술과학아카데미 등

업체 지원사항

- 전시 참가시 부스비 일부 할인, 참여업체 바이어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
- 초청 바이어 숙박비 일부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TEL 888 - 4632
TEL 266 - 4517

FAX 888 - 4639
FAX 266 - 4521

2-26 품질경영대회 개최 지원

사업목적

- 매년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 품질경영 운동 확산·보급
- 품질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업체를 표창하고, 우수 품질분임조를 발굴·포상하여 기업이 스스로 품질경쟁력 제고하도록 유도함
- 전국 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할 부산 대표 품질분임조 선발

사업내용

- 일 시 : 2023. 6월중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등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 사 업 비 : 9,750천원
- 대회내용 : 품질경영 유공자 및 유공업체 표창, 부산광역시 품질경영대회 개최

추진실적

- 1973년 12월 QC서클대회(부산시 주관) 전국 최초로 개최후 1975년 부터 매년 개최
- 2022년 추진실적
 - 품질경영 유공자 및 유공업체 표창(7점) : 유공자(4명), 유공업체(3개사)
 - 부산광역시 품질경진대회 개최 : 8개 부문, 11개사, 16개 분임조 참가
 - ☞ 최우수상 12개 분임조 선발 : 전국 품질경진대회 참가(경북 경주시, 금상3, 은상8, 동상1)

업체 지원사항

- 부산지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장소, 인쇄물, 심사위원 초빙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센터

TEL 888 - 4645
TEL 557 - 1239

FAX 888 - 4639
FAX 557 - 0430

2-27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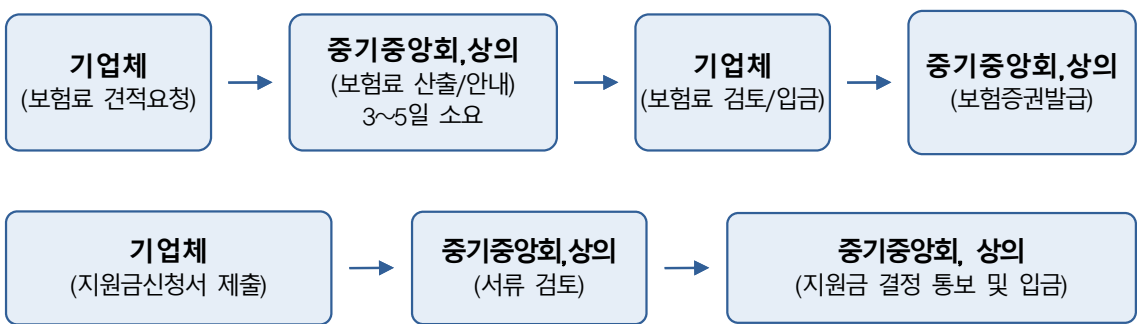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와 제조물 신뢰성 향상을 통해 수출 촉진 도모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주소가 부산인 업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료(1년 단위 소멸성 보험) 20% 지원
 - 주관기관의 단체보험 할인율 20% 적용으로, 기업입장에서 총 40% 할인효과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TEL 888 - 7691 FAX 888 - 7719 TEL 861 - 9376 TEL 990 - 7064
--	--

2-28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 부산형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입주기업 선정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지역 전통기업과의 산학협력 사업 발굴
 - 관광업계 간 네트워킹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 관광 일자리 상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기관 : 부산관광공사

지원내용

- 입주기업 공간 제공(1인실, 2~3인실, 4~6인실)
-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업체별 3,000만원 이내(약 20개 기업)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2023년 입주기업 모집

- 모집공고 : 2023. 2 ~ 4월중(예정)
-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 현재 111개 기업(비상주기업 포함)
- 신청자격 : 지역 소재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전통 기업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usan.tourbiz.or.kr>) 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TEL 888 - 5212
TEL 715 - 3272

FAX 888 - 5199
FAX 715 - 3284

2-29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목적

- 현지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1:1 비즈니스상담회 개최로 신규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240억)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사업규모 :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 등 6회 74개사 파견
-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
 -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기업 제품 홍보자료 등 제작, 시장조사 등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사전 컨택 및 마케팅 기법 등 상담
 - 일정기간 통상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 주요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50%, 현지 단체이동경비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 1개월간의 사전 마케팅을 거쳐 현지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1~6
888-4821~4

FAX 888-7759

〈참고〉

2023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 가	사 업 명	품목	업체 수
부산경제진흥원	5월	튀니지	북아프리카 무역사절단	종합	8
부산경제진흥원	9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시장개척단	종합	1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UAE	중동 산업재 무역사절단	산업재	10
부산경제진흥원	11월	태국 등	아세안 소비재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부산조선해양 기자재공업 협동조합	6월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조선기자재	1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목적

- 해외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및 수출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240억)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사업규모 :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등 13개 사업, 128개사 지원
-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한도(부스임차비, 상품운송비, 통역비, 장치비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제출 서류 평가는 5개 요소(기업일반, 영업력 및 성장성, 참가품목, 마케팅 노력 및 수출 실적 등), 11개 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신규기업과 미수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1~6
888-4821~4

FAX 888-7759

〈참고〉

2023년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4월	홍콩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5월	태국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식음료	8
부산경제진흥원	6월	일본	오사카 한국우수 상품전시회	종합	6
부산경제진흥원	7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 소매 프랜차이즈 박람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9월	일본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12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기계	8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종합	12
코트라 부산지원단	5월	인도	인도 소비재 대전	소비재	20
코트라 부산지원단	6월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바르샤바) 전시회	라이프스타일	20
부산상공회의소	8월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 및 식음료 박람회	식음료	8
부산상공회의소	8월	베트남	MTA 베트남 하노이 기계박람회	제조기계	8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11월	중국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종합	8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12월	중국	중국 상해 조선전시회	기자재	6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1 바이어상담회 개최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및 화상상담회 지역기업들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바이어 구매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소재 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사업규모 :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5회, 370개사 지원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CHECK SHEET 프로세스 도입(매칭 및 사전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품목 일치율 제고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통역 지원
- 마케팅 기법 지도 및 사전·사후마케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해외바이어 모집, 신청기업 중에서 바이어가 상담 대상 기업을 지정하여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1~6
888-4821

FAX 888-7759

〈참고〉

2023년 해외바이어상담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3월	아프리카	튀한 상공회의소 초청 수출상담회	종합	50
부산경제진흥원	5월	미중일베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종합	100
부산경제진흥원	9월	아세안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2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전지역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상담회	종합	50
코트라 부산지원단	4월	전지역	2023 봄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종합	4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2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정착 기회제공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사업규모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등 7개 사업, 205개사 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플랫폼 입점(계정등록) 교육,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B2B온라인 화상상담, 오프라인 판촉행사 참가 등

신청방법 및 사업내용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사업내용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아세안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	소비재	5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종합	3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미국,일본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45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인도	인도 K-Brand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2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중국	중국 온라인 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소비재	10
코트라 부산지원단	7~10월	미국	미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지원사업	소비재	20
코트라 부산지원단	연중	연중	영국 아마존 UK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30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1~6
888-4821

FAX 888-7759

2-33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목적

- 3高(환율, 금리, 유가) 현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입 기업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출(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일부(소요 금액의 80%, 기업당 최대 200만원)
- 지원분야 : 통번역, 홍보/광고 등 7개 분야

분류	정의	메뉴(예시)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 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2

FAX 888-7759

2-34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마케팅 수단인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 홈페이지 지원기업의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지원규모 : 카달로그(9개사), 동영상(10개사), 홈페이지(12개사)
- 추진방법 : 전문 수행기업 선발 후 참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지원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외국어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1가지 지원, 항목별 한도 내 비용의 80% 지원

지원항목	지원한도(원)	지원내용
홍보 카달로그	1,300,000	▶ 외국어 제품/기업 카달로그 디자인(E-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제작 - 카달로그 기입내용 외국어 번역
홈페이지	2,500,000	▶ (A형) 국문 홈페이지 미보유시 - 국문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B형) 국문 홈페이지 보유시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개선 서비스 지원 ※ 개선 서비스 : 신규 페이지 개설, 제품 촬영, 관리기간 확장 등
홍보 동영상	3,800,000	▶ 5분 내외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 외국어 내레이션, 동영상 내용 외국어 번역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1
FAX 888-4449

2-35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목적

- 해운·항공 운임 등 글로벌 물류비 폭등으로 수출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수출 물류비 보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기업
 - 타 기관 물류비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 해상 운송 및 국제특송 등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가세를 제외한 항공, 해상운임 (단, 국제특송은 총비용 기준)
 - 해상운송의 경우 인코텀스(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조건에 한함
 - 해외플랫폼 입점 및 자사물 판매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20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 합산금액의 7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기 지출한 물류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2

FAX 888-7759

2-36 부산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 수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대행 및 해외 바이어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전문무역상사* 10개사 * 산자부 매년 7월 지정, 유효기간 2년
- 사업기간 : 2023. 4. ~ 12.
-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국가별·사업별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무역상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및 해외 바이어 방문 초청 지원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초청 경비 지원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 (바이어방문) 왕복 항공료 80%
 - (바이어초청) 바이어 왕복 항공료, 숙박료
- ※ 업체별 2백만원 한도, 증빙자료 통한 사후정산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5

FAX 888-7759

2-37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목적

- 물리적 거리상의 한계로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물류 거점이 필요한 지역수출기업에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공동물류센터 제공으로 물류네트워크를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 수출기업 15개사
 - 미주지역 수출 진행 중 또는 현지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한 수출기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물류센터 입고 후 출고까지 수반되는 물류서비스 일체 지원
 - 창고보관 및 입·출고, 재고관리, 라벨링, 재포장, 반품 등

지원내용

- 참가기업의 미주지역 물류비용 지원(물류센터위치 : LA, 시애틀, 애틀란타)
 - 지원범위 : 현지 창고이용료,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 A/S 등
 - ※ 현지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발생 세금 지원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시장성 검토, 물류회사 수용가능여부, 현지 거래선 보유 확인(MOU, 거래내역 등 증빙) 등을 심사하여 평가기준 점수 이상 기업을 선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5

FAX 888-7759

2-38 수출 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목적

- 부산지역 내 우수 내수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수출 초보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업 육성체계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코트라 글로벌역량진단(GCL)* 결과 내수기업 또는 글로벌 초보기업(D~B0)
 - * 글로벌역량진단(GCL) : 기업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 확인 평가, 점수구간에 따라 10단계로 구분(D, C-, C0, C+, B-, B0, B+, A-, A0, A+)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마케팅 코디네이터 방문 상담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기반 구축 및 수출 초보기업에 맞춘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마케팅 코디네이터 POOL 구성 및 매칭을 통해 기업별 맞춤 수출로드맵 수립
 - 해외시장조사 ⇒ 마케팅 ⇒ 수출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 참여율 제고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6

FAX 888-7759

사업목적

- KOTRA 현지무역관을 통한 해외진출 사전/사후 마케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64.4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지원내용

- ‘KOTRA 해외지사화사업’ 발전단계에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지역별 참가비(220만원~400만원)의 50%(기존기업) ~ 70%(신규기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기업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Ⅲ.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1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목적

- 지역산업 연계 원전해체 핵심기반 기술 실용화
- 원전해체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및 육성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전략산업 육성산업)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판매 및 기술지원), 제14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
- 시행시기 : 2018년 ~ 2023년
- 수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 사업비 : 1,140백만원('18-2억, '19-1.4억, '20-2억, '21-2억, '22-2억, '23-2억)
 - ▷ 시비 50%, 민자 50%
- 사업내용 :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부산지역 내 기업지원 등

지원내용

- 실용화기술 개발지원
- 고도장비 활용 시험분석
- 현장 어려움 기술자문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모집공고 : 2023년 3월 (부산광역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TEL 888 - 3031	FAX 888 - 30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TEL 309 - 7411	FAX 309 - 7510

3-2 클린에너지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

사업목적

- 클린에너지 기술 관련 리딩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강소·중견기업으로의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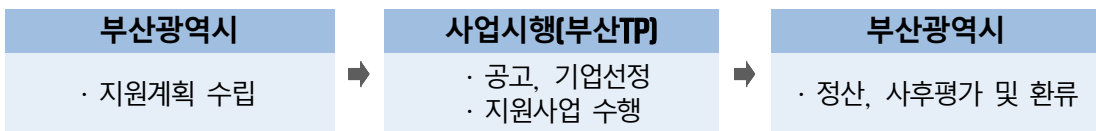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 시행시기 : 2023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300, 남부발전 100)
-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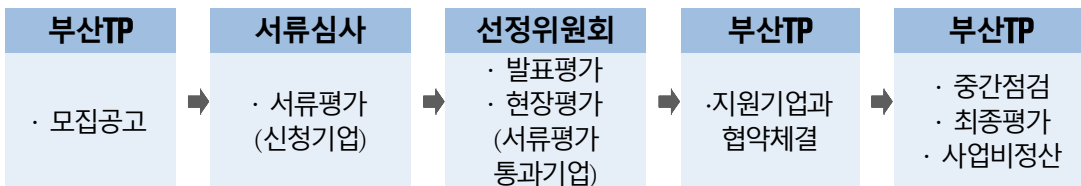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내외 시험 및 인증지원
- 벤더등록 및 TEST BED 설치 지원
- 제품개선 지원
- 기타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절차



기업 선정 절차 및 지원프로그램 선정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부산테크노파크

TEL 888 - 4726
974 - 9360

FAX 888 - 4679
974 - 9375

3-3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기술기반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성장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혁신기술역량을 보유한 부산지역 본사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200, 남부발전 200)
- 사업내용 : 조달청의 혁신조달*을 위한 혁신시제품 지정의 전·후 과정을 지원

「혁신조달」이란?

- (내용) 혁신제품 상용화 전, 공공기관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테스트)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발, 공공서비스 질 향상
- (혜택) 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 가능
② 공공기관이 테스트 신청한 혁신제품 중 조달청 예산(2~3억원/건)으로 구매 가능

지원개요

구분	지원내용(안)
(前) 예비지원 트랙 (기술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부산지역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지원 : 제품 성능테스트 및 인증심사, 특허·지재권, 컨설팅 ● 조건 : 지원 후 6개월 이내 혁신시제품 신청 ● 규모 : 160백만원 (20백만원×8건)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상용화 이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시제품 지정단계(상용화 이전) ● 조달청 구매 및 수요기관 구매 지원
(後) 활성화 트랙 (사업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부산지역 본사 소재 혁신시제품 지정기업 ● 지원 : 마케팅, 시장조사, 전시회참가, 디자인개발, 홍보 ● 규모 : 140백만원 (28백만원×5건)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 3. ~ :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TEL 888 - 7696 TEL 320 - 3546	FAX 888 - 7719
---------------------------------------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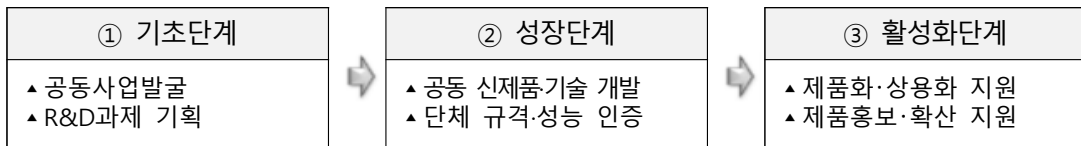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공동기술 발굴 및 육성으로,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 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기술 발굴 및 육성 지원



추진일정

- 2023. 2. ~ : 수행기관 사업대행 계약
- 2023. 3. ~ 4. : 기초단계 참여 조합 모집
- 2023. 4. ~ : 기초단계 사업(공동사업 발굴·R&D기획 컨설팅) 추진
- 2023. 6. ~ 7. : 성장단계, 활성화단계 참여 조합 모집
- 2023. 7. ~ : 성장단계(공동연구개발 지원), 활성화단계(R&D상용화 지원) 추진

:	TEL 888-7695 TEL 320-3544	FAX 888-7719 FAX 320-3559
---	------------------------------	------------------------------

3-5 인공지능 로봇활용 기업경쟁력 고도화

사업목적

-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및 로봇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목적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제조업 및 로봇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비 : 668백만원
- 시행기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URI-Lab.

지원내용

- 로봇디자인 및 기업공정개선 지원
- 로봇 시제품 개발지원
- 로봇 신산업 아이템 발굴 지원 등

신청방법

- 모집공고 : 2023년 상반기 예정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TEL 888 - 4631
TEL 220 - 7622

FAX 888 - 4639

3-6 미래수송기기기술단 수송기기부품지원센터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에 맞춰 수송기기부품분야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과 부품산업 발전 지원
- 수송기기부품 기술고도화 및 xEV 부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과학기술구역내
- 규 모 : 연면적 400㎡(사무동)
- 기술지원분야 : 차량부품 설계 및 해석, 전자파 및 환경 신뢰성 지원

주요사업

- 장비구축 : e파워트레인관련 성능, 시험, 인증관련 장비 구축 예정
- 네트워킹 : 지역 산학연 기술혁신 자원 연계 협력 체계 구축 기술 지원
- 공동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R&D) 수행
- 기술지원 : 기 구축 인프라 활용으로 기업 기술애로를 종합적 지원

센터사업 추진전략

-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전환 지원을 위한 전기차부품 허브센터 구축
 - 전기차 부품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을 위한 전기차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 전기차부품 기술지원 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 설계, 제작, 시험인증, 수출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 수소모빌리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 생산/충전시설 구축 지원
 -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기업 지원사항

- 수송기기 부품관련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해외 마케팅지원
- 전기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한 차량부품 다변화, 다각화 지원
-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수송기기부품지원센터

TEL 888 - 4644
TEL 974 - 9214

FAX 888 - 4639
FAX 974 - 9219

3-7 전기차 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지원목적

- 지역자동차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기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및 확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6월 ~ 2023. 5월
- 사 업 비 : 8,275백만원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제조 중소기업체
- 주요사업 : 장비확충 6종, 부품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네트워크 운영
- 사업주관 : 부산테크노파크

사업개요

- '22. 1월 ~ 2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부산시 ⇔ 부산TP)
- '22. 2월 ~ 3월 : 3차년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2. 3월 ~ '23. 5월 :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 장비 확충(3종) 및 설치, 기업지원

업체 지원사항

- (시험장비 확충) 전기차 핵심부품의 시험인증을 위한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및 확충
- (부품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시제품제작 지원 및 기술지원 61건, 전문인력 양성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테크노파크 미래수송기기기술단

TEL 888 - 4644

TEL 974 - 9203

FAX 888 - 4639

FAX 974 - 9219

3-8 미래자동차산업 부품생태계 지원

지원목적

-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 자동차 부품 공급망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및 애로기술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6월 ~ 2023. 5월
- 사업비 : 1,660백만원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제조 중소기업체
- 주요사업 : 지역거점화 DB구축, 애로기술지원,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지원, 마케팅 지원 등
- 사업주관 : 부산테크노파크

추진계획

- '22. 5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부산시 ⇔ 부산TP)
- '22. 6월 ~ 7월 :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
- '22. 7월 ~ '23. 5월 : 3차년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업체 지원사항

- (기업지원) 시험분석 지원 13, 애로기술지원 5, 시제품제작 지원 8, 마케팅 지원 7
- (지역거점화) 연구기관과 부품기업간 협력체계 등 지역 거점화 DB 구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테크노파크 미래수송기기기술단

TEL 888 - 4646
TEL 974 - 9203

FAX 888 - 4639
FAX 974 - 9219

3-9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목적

- 국내에서 제작·납품하는 친환경 선박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기자재는 해외제품으로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산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지원대상 : 조선기자재기업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시행주체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사 업 비 : 430억원(국비 257.5, 시비 143.5, 민자 29)
- 주요사업
 - 해상실증 선박건조(17천톤급), 기자재 실증 기반구축 및 실증지원
 - 실증기자재 : LNG연료 공급시스템, 배기가스 저감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지원내용

- 국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 급성장 예상됨에 따라 해상 환경에서의 시스템 단위(IS) 검증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
- 업체의 납품실적 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원
-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실증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TEL 888 - 4655

FAX 888 - 6739

TEL 051 - 400 - 5078

3-10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목적

- 지역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R&D 및 비R&D 지원으로 기업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지원대상 : 지역주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계산업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사업비 : 19,350백만원(국비 13,545 시비 5,805)
- 사업내용
 - (R&D)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지원(11,433백만원)
 - (비R&D)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7,917백만원)
- 관리기관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예산	관리기관
합계		19,350	
기술개발(R&D) 소계		11,433	
■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 R&D 과제 지원	11,433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320-9264)
사업화(비R&D) 소계		7,917	
■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	2,065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320-9263)
■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주력산업분야 육성대상 타겟 기업군에 비R&D 지원	4,012	(재)부산테크노파크(320-3543)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대상지원	430	(재)부산테크노파크(320-3542)
부산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대상지원	1,500	(재)부산테크노파크(320-3531)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민간 네트워크 연계 수출지원	300	(재)부산테크노파크(320-3541)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	TP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특화지원	143	(재)부산테크노파크(865-3574)
성장사다리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성장단계별 현황에 따른 타겟 기업별 맞춤형 기업지원	1,524	(재)부산테크노파크(865-3543)
지역투자생태계조성	전문인력양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기반조성	115	(재)부산테크노파크(921-6005)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기술닥터 등 기업 성장 지원	1,740	(재)부산테크노파크
■ 지방비 평가관리지원사업	*부산지역사업평가단 지원사업	100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신청방법 및 절차

- 세부사업별 사업공고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TEL 888-6745 FAX 888-6739
TEL 320-3543 FAX 320-3559
TEL 315-9264 FAX 315-9259

3-1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제도 운영

운영목적

- FTA, TPP 등 급속히 개편되는 국제무역 질서 및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 브랜드 개발로 국내외 마케팅 적극 추진
- 부산지역 생산 수산가공품의 명품화로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및 중소기업 판매시장 확대

※ 부산명품수산물 로고 ( ) 활용, "부산광역시 명품수산물" 품질 보증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정대상 : 부산지역 수산가공업체 (HACCP 인증기업)
- 대상품목 : 7개 품목(고등어, 어묵, 미역, 다시마, 명란젓, 가공김, 멸치액젓)
※ 2022년 기준 지정업체 17개사(간고등어 3, 어묵 5, 미역다시마 2, 명란젓 4, 가공김 2, 멸치액젓 1)
- 선정방법 : 조례·지침에 따라 시설과 제품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업체 및 제품
- 사업내용 : 부산명품수산물 로고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 품질보증 체제 구축
-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업체 지원사항

- 우체국 쇼핑몰내 명품 브랜드관 개설 운영
- 국내외 각종 전시·박람회, 특별행사 등 참가 지원
- 부산명품수산물 특판 행사 지원, 지정업체 홍보 및 판로개척
- 부산시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협력체제(산관학연) 구축으로 기술 발굴 및 애로 해결
- 품질관리 및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제품검사 지원
- 2009~2013년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금상 3회, 은상 1회, 동상 3회)

상표사용 허가업체 현황

(22.12월 기준)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1	간고등어	(주)부광에프앤지	이충근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B동 601,602호	201-3001
2		세동상사	박희석	서구 충무대로 174	253-8831
3		(주)동원해사랑	장창익	사하구 감천항로 24	291-5101
4	어묵	(주)늘푸른바다	김세종	사하구 다산로 277	266-5599
5		(주)맛뜰안식품	박종윤	사하구 하신중앙로17번길 13	265-8537
6		삼진식품(주)	박용준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51, A,B,D동(장림동)	412-5468
7		(주)어메이징팩토리	박용준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A동 305호	412-5468
8		(주)부산세광식품	김수진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36	264-4324
9	미역·다시마	기장물산(주)	김양춘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722-0239
10		(주)석하	서만석	기장군 정관면 산단2로 6-17	721-5666
11	명란젓	대경에프앤비(주)	강치범	서구 구덕로 301번길 4	255-7211
12		(주)덕화푸드	장종수	서구 원양로 35 도매장동 3층	265-8163
13		삼양씨푸드(주)	이권주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B동 703호	265-0877
14		희창물산(주)	권중천	서구 충무대로 146	241-4335
15	가공김	세화씨푸드(주)	배기일	금정구 회천로 26번길 31	527-3871
16		(주)남광식품	조선자	사하구 장평로 132번길 7	263-9821
17	멸치액젓	기장특산물 영어조합법인	최영철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96	727-736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TEL 888 - 5445

FAX 888 - 5429

3-12 창업기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전자상거래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스타트업의 기술지원 필요
- 5G 상용화 계기로 관련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초기 기술단계인 VR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지원
- 가상현실 쇼핑의 향후 2~3년간 폭발적인 발전에 대비, 한류 연계 마케팅이 용이하고 수출제 성격이 강한 화장품, 의류, 신발 등 분야 스타일 테크 생태계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화장품, 신발, 리빙, 뷰티 등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IT융합기술에 관심이 있는 7년 미만의 전자상거래 기업
- 모집공고 : 2023. 3. ~ 5월 중(예정)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수행기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내용

- 4D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지원
- VR런웨이 또는 제품 전시회 개최 및 홍보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 - 4414 FAX 888 - 4379

3-13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목적

- 지역기반 게임기업 육성을 통한 게임산업 지역 불균형 해소 및 미래 게임산업 성장 동력 확보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부산·경남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비 : 26.2억원(국비 14, 시비 12.2) * 국가직접지원
- 사업내용
 - 부산 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시설 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형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 게임기업 국내외 비즈니스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 인디개발자 육성 등 인디게임 산업 육성

지원내용

- (인큐베이팅) 입주지원, 게임개발 인프라 제공,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 (제작지원)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게임콘텐츠 퀄업(고급화) 지원
- (마케팅/비즈니스) 게임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게임전시회 참가 지원
- (인디육성) 인디 개발자 육성,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전시 참가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인큐베이팅)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선정평가 → 계약체결 → 게임센터 입주
- (제작·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지원 → 결과보고 및 검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참가 공고 → 평가 및 선정 → 전시회 참가 → 결과검수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사업진흥단

TEL 888-5152

TEL 749-9152

FAX 888-5139

FAX 749-9184

3-14 영상산업센터 운영 지원

사업목적

- 지역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화·영상 관련 창작자 및 기업 대상의 공간 지원
- 지역중심의 스토리 창작 기능 강화를 위한 창작자 및 창작기업을 육성으로 부산지역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제작역량 확대

사업내용

- 사업위치 :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 사업규모 : 연면적 18,691.15㎡(1~12층)

구 분	용 도	규 모	비 고
지원기관실	게임물 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실	1-3층	
빅랩(예정)	초기 창업자, 창작자 등 입주공간	5-6층	총 22개실
프로덕션오피스	부산 영화촬영 제작팀 사무실 지원	10층	총 3개실
영화·영상 기업사무실	영화영상 관련 기업 입주공간	7-12층	총 35실

- 사업기간 : 2017. 4. ~ 계속
- 사업주관 : (사)부산영상위원회
- 주요사업
 - 지역 영화·영상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교육 및 컨설팅, 영상산업 네트워킹 지원
 - 지역 스토리콘텐츠 판로개척 지원프로그램 / 지역 영화영상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창작자 및 입주기업 유치 및 공간 운영
 - 역외기업 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
 - 영상산업센터 시설운영
 - ▶ 공동직장어린이집(1F), 구내식당(4F), 체력단련실, 카페테리아(8F), 휴게 라운지 및 각종 회의실
- 이용방법 : 영상산업센터 홈페이지(<http://www.bvic.kr/>) 참조

지원사항

- (인프라) 사무 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인프라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성장프로그램) 기업주도형 활동 기반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산업교류팀
TEL 888-5144 FAX 888-5139
TEL 720-0306, 0377, 0357

3-15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사업목적

- 동남경제권(부·울·경) 중심의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정보 인프라 집적 및 활용
- 디자인산업 육성·발전으로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우동 1457번지)
- 규 모 : 부지 5,410㎡, 건물 23,435㎡(지하 3층, 지상 8층)
- 사 업 비 : 295억(2023년 본예산)
- 조 직 : 1실 2본부 1TF추진단
- 인 력 : 73명(원장, 일반직 31, 무기직 19, 기간제 22)

업체 지원사항

사업명	지원사항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지원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시제품 생산 지원
권역형 창업도약 디자인거점센터 운영	도약기(3~7년) 기업의 혁신성장 및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운영	스포츠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멘토링 지원
디자인제조특화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비용,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
의류제조 집적지구 소공인 활성화 지원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중심의 생산자동화지원, 실습교육지원, 공간운영지원
부산 섬유패션 R&D 지원	섬유패션산업 정부R&D 과제기획을 통한 메타버스 기반 부산 섬유패션산업 고도화 추진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디자인 산업 특화 무료법률자문 1:1 맞춤형상담 서비스 제공
아시아디자인플랫폼 기업지원	디자인 기업 및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매출 향상 및 역량 강화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	동남권역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부산청년 소셜벤처 PLUS 소셜디자인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셜디자인 기업의 창업 성장 지원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	리사이클 디자인 기업 제품개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4
TEL 790 - 1013

FAX 888 - 6739

3-16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

지원목적

- 신발·피혁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핵심 소재 및 부품개발, 생산자동화기술, 산업용 부품소재 분야 등 신발·피혁에 관련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신발산업 분야의 기술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조 직 : 이사회(17명), 원장, 1본부 8연구단 1부 1센터
- 인 력 : 129명
- 장 비 : 868종 150억원(화학분석, 신발제조, 피혁가공, 자동화 등)
- 사업기간 : 1987년 ~ 계속(매년)
- 2023년 사업비 : 800백만원
- 주요사업 : 신발피혁관련 연구개발, 중소기업 기현장방문 애로기술지도 등

업체 지원사항

- 연구개발 : 신발소재, 피혁, 생산자동화, 산업용 부품소재 분야
- 중소기업 기술지원 : 분석시험, 시제품제작, 피혁임가공, 시험인증
- 현장방문 애로기술지도 : 연구원이 직접 생산현장 방문지도
- 창업보육기업 육성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
- 정보지원 : 신발피혁관련 경영, 수출, 기술개발 동향 등 정보제공
 - 한국신발피혁연구원(www.kfit.re.kr) 참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신발피혁연구원

TEL 888 - 6752
TEL 605 - 3231

FAX 888 - 6739
FAX 897 - 9766

3-17 부산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목적

- 부산 섬유패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테크기술 융합 정책 연구 및 과제 발굴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의류제조 및 섬유패션 관련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섬유패션 관련 R&D 전문가, 각 대학 연구자 등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비 : 45백만원(시비 45백만원)
- 사업내용 : 섬유패션산업 관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연구 지원 디자인&테크기술 융합 R&D 과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디자인&기술테크 융합 R&D과제기획 랩 운영
- 과제기획 랩을 통한 정부과제 기획 : 5개 과제
- 과제기획 랩을 통한 정부과제 발굴 : 25개 과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정부과제 기획을 위한 융합얼라이언스 구성
-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한 정부R&D 과제 제안 및 사업화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5
TEL 790 - 1041

FAX 888 - 6739
FAX 790 - 1099

3-18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목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인 지역 유망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특허맵·브랜드·디자인, 해외권리화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육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식재산권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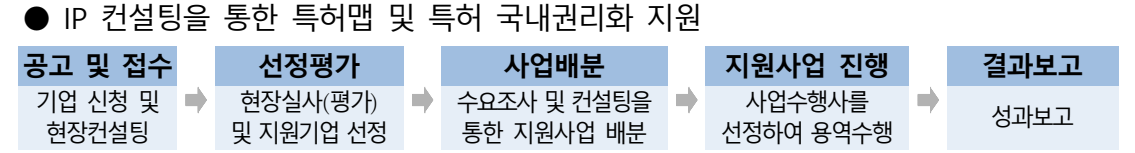
-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1. ~ 12.(매년)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사업비 : 2,287백만원(국비 1,167, 시비 1,120)
- 사업내용 : IP기술·경영컨설팅(특허맵), 해외권리화 및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등

지원내용

- IP전문컨설턴트가 현장컨설팅 후 특허맵, 브랜드, 디자인, 해외권리화 등 맞춤형 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수출 예정) 중소기업
 - IP나래사업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구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구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글로벌 IP기업 육성사업	맞춤형 특허맵		IP나래사업	IP기술·경영컨설팅	20백만원 이내 지원
	선택형IP	특허맵			
		디자인			
		브랜드			
특허 시뮬레이션		국내권리화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이용방법

- 업체모집 : '23. 1.~2.(글로벌IP기업육성사업), '23 1월, 6월 연2회(IP나래사업)
-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TEL 888 - 7734 FAX 888 - 7739
TEL 714 - 0681 FAX 714 - 6958

3-19 부산 IP경영인 클럽 운영

사업목적

- 지역 내 IP 선도 조직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의 IP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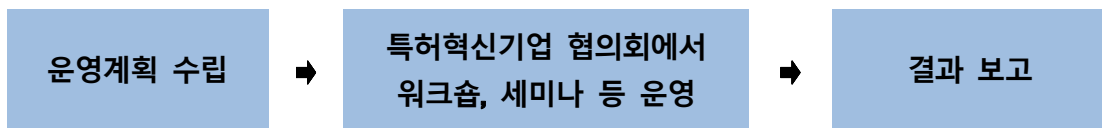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식재산을 소유한 특허 혁신 중소기업 64개사
- 사업기간 : 2023. 1. ~ 12.(매년)
- 사업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사업비 : 5백만원(국비 3.5, 시비 1.5)
- 사업내용 : 지역 내 지식재산 선도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IP경영수준 향상

지원내용

- 워크숍, 기업 간담회 등 4회 개최
- 기업 탐방,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총회 등
-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신청방법 및 절차



이용방법

-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TEL 888 - 7734
TEL 714 - 0681

FAX 888 - 7739
FAX 714 - 6958

3-20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운영목적

- 개별업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디자인, 금형, 시제품 개발 등을 One-Stop Total Service로 지원
- 신발업계의 공통 애로사항인 마케팅·특수생산·정보 등 경영지원과 고가장비 공동 활용으로 신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개요

- 센터 현황
 - 조직 및 인력 : 5팀 31명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길 55(녹산공단내)
 - 장 비 : 200여 종(시제품, 금형, 디자인 등)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매년)
- 2023년 사업비 : 9,601백만원(국비 2,180, 시비 3,414, 자체 4,007)
- 주요사업
 - 제품개발서비스, 특수·기능화 공동개발 등 신제품 개발 지원
 - 신발산업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마케팅, 시장정보 지원 등
 -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신발산업 기술개발 활동 및 역량 강화 등
 - 학술활동 지원, 생체역학 기반 성능평가 분석 등 품질향상 지원
 - 신발 원·부자재 활용, 신발산업 수요·실태조사 등
 -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사업

업체 지원사항

- 특수화, 기능화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
- 디자인, 소재, 공정, 금형 등 관련기술 개발 지원
- 각종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계 공동 활용 적극 지원
-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소량의 샘플 주문 생산 지원
- 바이어 정보 등 신발관련 각종 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지원
 -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shoenet.org) 참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신발산업진흥센터	TEL 888 - 6752 TEL 979 - 1700	FAX 888 - 6739 FAX 979 - 1739
-------------------------------	----------------------------------	----------------------------------

3-21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사업

추진목적

- 부산신발 로컬브랜드 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지역 중소신발기업 신제품 개발력 강화 및 기술력 지원을 통해 기존 OEM 산업구조 탈피, 자체브랜드 중심의 산업전환 유도

사업내용

- 사업주관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주요사업
 - 부산지역 브랜드 보유업체 중 경쟁력 있는 유망 초기 개발제품에 대한 협력 지원
 - 제품 개발에서 상용화 및 마케팅까지 연속적 지원을 통한 대표브랜드 사업화
- 총사업비 : 493백만원(시비 400, 기업자부담 93)

업체 지원사항

- 첨단소재, 인체공학적설계, 디자인 등 개발 지원
- 성장사다리 구분 기업별 개발사업비 20백만원 ~ 40백만원 이내 지원
- 이어달리기식 지원을 통한 브랜딩 사업화 마케팅·홍보비 30백만원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6751
TEL 979 - 1803

FAX 888 - 6739
FAX 979 - 1729

3-22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도모
- 지식기반 핵심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산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 양질의 고용확대 및 전·후방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육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비 : 1,450백만원(시비)
-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R&D,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R&D 기획 및 개발 지원
 - 마케팅, IP(지식재산) 서비스 및 시제품·금형 제작 등 기술 지원
 - 기업성장전략수립 컨설팅 및 기술교류회·세미나 개최 등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연 최대 90백만원 내외

추진안내

- '23. 2월 사업공고
- '23. 2월 ~ 3월 선정평가
- '23. 4월 기업선정
- '23. 5월 ~ 11월 기업지원
- '23. 12월 사업정산 및 제출(지원기업 → 부산테크노파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TEL 888 - 6734
TEL 320 - 3534

FAX 888 - 6739

3-23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사업목적

-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성장 유망 타겟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친화적 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15개사)
- 시행시기 : 2023년
-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900, 시비 600)
-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지역내 전문가 (PM) 전담매칭방식의 기업별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지원
 - 기업 성장전략 수립, 투자전략, R&D과제 기획 및 연계 등 종합지원
- 기업이 자율 기획한 기술혁신활동을 협업 상시 지원
 - 선행기술 검토, 해외기술장벽 대응, 국내외 시장조사, 기술개발 컨설팅 등 고도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기업이 자율제안, 수행
- 기술사업화 수립결과 우수한 Pre-창업기업에 차년도 지역 R&D 신규예산 우선 배정

추진안내

- '23. 4월 사업공고 ▷ 부산광역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www.btp.or.kr)
- '23. 5월 현장평가 및 협약체결
- '23. 7월 기업 중간모니터링(과제평가)
- '23. 10월 기업 최종모니터링(과제평가)
- '23. 12월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기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TEL 888 - 6738
TEL 320 - 3532

FAX 888 - 6739

3-24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 지원

사업목적

- 선도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
- 선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략산업 선도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표
-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http://busancompany.com>)
 - 2023년도 선도기업 선정('22. 12월)
- 선도기업 금융우대(보증 특례, 운전자금) 등 연계 지원
- 「부산테크포럼」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정보동향 등 제공

추진일정

- '23. 3월 사업공고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www.btp.or.kr)
- '23. 4월 선도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기업선정
- '23. 5월~11월 기업지원
- '23. 9월 '24년도 선도기업 선정 공고 ▷ 부산광역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 '23. 12월 선도기업 최종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TEL 888-6738
TEL 320-3531

FAX 888-6739

3-25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사업목적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동력 창출 및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울산 소재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비 : 970백만원(국비 407, 지방비 550, 민간 13)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원내용

- 수요기술 발굴 및 기술 이전 연계지원 및 컨설팅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패키지 지원) R&D 기획·컨설팅, 판로개척·마케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4개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술이전 운영 지원) 부산·울산지역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의 기술교류회 활동 지원
 - (기술이전 사업화 맞춤형 지원) 검·인증 비용, 투자·용자 유치 지원, 홍보물 제작 등
 - (도입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또는 mock-up(제품모형) 제작 지원
- 기술보유기관 및 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DB 구축

추진일정

- '23. 1. ~ 2.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3. 3. 신청과제 접수 및 서면·대면 평가, 최종 선정
- '23. 4. ~ 11. 과제 수행
- '23. 9. 중간성과 평가 실시
- '23. 12. 과제수행 최종 평가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TEL 888 - 7734
TEL 320 - 3552

FAX 888 - 7739

3-26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 지원

사업목적

- 부산지역 해양바이오기업들의 타겟 국가에 맞는 국제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등 지역 기업 역량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3. 1. ~ 12. 31.(10개월)
- 사업비 : 126백만원(시비)
-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지원내용

- 국제인증 획득 지원 : 인증서 획득(갱신)을 위한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제품 고급화 지원 : 제품개발비,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인증획득 전후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이용방법

- 업체모집 : 2023. 3월 중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 지원대상 :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TEL 888 - 5251
TEL 720 - 8925

FAX 888 - 5259
FAX 723 - 3320

3-27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술개발

추진목적

- 지역 내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의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KOLAS 국제공인시험 및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등 국제공인시험 서비스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 선박평형수처리 기술 및 장치 개발 관련 기술상담 및 연구개발 자문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수행 지원 (해수부 지정 형식승인시험기관)
- 기타 해양바이오, 식품 및 해양생물 유해 유용물질 관련 연구개발 기술 지원 등

시험항목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
- KOLAS 국제공인시험 : 수중생물학(플랑크톤 계수, 미생물시험 등) 및 수질분석

이용방법

- 신청방법 : 기업 → 센터(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기술단
- 접수시기 : 연중 접수 및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기술단

TEL 888 - 5281
TEL 720 - 8948

FAX 888 - 5259
FAX 723 - 3320

3-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역협력 연구개발 사업

사업목적

- ETRI가 보유한 ICT 관련 유망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소개하고, 기술이전 상담 및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ETRI가 보유한 ICT 유망기술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2월
- 사업비 : 20백만원
- 수행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화 과제 기획 상시 협력 및 코칭(연중 계속)
- ETRI 유망기술 설명, 기술이전, 사업화 상담 등 설명회 개최(연1회, 9월경)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관련 기관 연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에트리홀딩스(주)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전화 또는 방문 상담(ETRI 부산공동연구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TEL 888 - 4602 FAX 888 - 4569
ETRI 부산공동연구실 TEL 747 - 8972

3-2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운영목적

- 지역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IT) 등 정보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IT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계속
- 사업비 : 2,090백만원(2023년)
- 주요사업
 -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사업
 - 정보통신·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추진
 - 정부·자치단체 및 정보통신관련기관 위임·위탁사업
 - 정보통신·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정보통신·문화콘텐츠산업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업체 지원사항

- IT벤처센터(센텀벤처타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등 입주지원시설 운영
- 취업/창업 지원 관련 지원사업 추진
- 지역 IT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IT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TEL 888 - 4595 FAX 888 - 456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749 - 9411~14 FAX 743 - 7163

□ 4개 입주지원시설, 10개 외부센터

구분	시설명	주요내용	
입 주 시 설 (4)	센텀벤처타운(본원) 시 소유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 규 모 : 10,507㎡ ○ 시 설 : 입주지원 33실, 회의실 등 ※ 부산영상위원회 및 영상위 입주기업 되기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시 소유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 규 모 : 19,844㎡ ○ 시 설 : 입주지원 78실, 게임센터, 웹툰센터 등	
	부산SW지원센터 임차시설	○ 소재지 : 남구 대연동 (센추리빌딩 8층) ○ 규 모 : 2,371㎡ ○ 시 설 : 입주지원 12실, 회의실 등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시 소유시설	○ 소재지 : 영도구 남항동 ○ 규 모 : 4,555㎡ (1,008㎡) ○ 시 설 : 입주지원 26실(15실), 회의실(도서실) 등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임차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 사무동) ○ 규 모 : 372.85㎡ ○ 시 설 : VR/AR 전시·체험, 교육장 등	
외 부 산 하 센 터 (10)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임차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부산영상산업센터 7층) ○ 규 모 : 1,495㎡ ○ 시 설 : 입주지원 10실, 오픈오피스 5실 등	
	부산 클라우드혁신센터 Powered by AWS 임차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동서대 센텀캠퍼스 12층) ○ 규 모 : 810㎡ ○ 시 설 : 스타트업 지원실, 교육장, 회의실 등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임차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센텀그린타워 3층) ○ 규 모 : 160㎡ ○ 시 설 : 회의실, 테스트베드실(CCTV), 보안리빙랩 등	
	부산음악창작소 임차시설 (무상)	○ 소재지 :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교 한울관 B1층) ○ 규 모 : 1,143㎡ ○ 시 설 : 녹음 스튜디오 2실, 회의실 등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경성대서브센터 임차시설 (무상)	○ 소재지 : 남구 대연동 (경성대 중앙도서관 15층) ○ 규 모 : 1,063㎡ ○ 시 설 : 강의실 3실, 복합공간 1실 등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플러스 부산 임차시설 (무상)	○ 소재지 : 부산진구 부전동 (KT&G 상상마당 부산 5층) ○ 규 모 : 352㎡ ○ 시 설 : 편집실 3실, 스튜디오 3실, 휴게실 1실 등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시 소유시설	○ 소재지 : 수영구 망미동 (B-Con그라운드 내) ○ 규 모 : 370㎡ ○ 시 설 : 교육장 2실, 포토존 1실 등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시설	○ 소재지 : 부산진구 부전동 (삼정타워 15-16층) ○ 규 모 : 2,739㎡, 경기장 400여석, 장비 300여종 ○ 시 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B-PUB, 스위트박스 등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임차시설	○ 소재지 : 해운대구 우동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4층) ○ 규 모 : 1,303㎡ ○ 시 설 : 360 볼륨메트릭 MR스튜디오, 교육장 화실 등	

3-3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

지원목적

-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ICT선도기술 연구, 산학협력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 동남권 제조 IT기술혁신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석사급 고급 인력양성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2월
- 사업비 : 2,150백만원
-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산학연 공동연구) ICT 신기술 연구 및 제조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
 -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현장 진단 및 스마트공장 전환 컨설팅
 -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대학원 석사과정 고급 인력 양성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요기반 산학 미래 ICT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부산대학교 동남권 그랜드 ICT연구센터

TEL 888 - 4731
TEL 717 - 0435

FAX 888 - 4569

3-31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운영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IoT 유망 도시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실증을 위한 개발 환경 제공부터 기술지원, 사업화, 마케팅 등 IoT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 산업과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축·확산을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ICT/IoT 중소·벤처기업
- 시행시기 : 2023. 1. ~ 12.
- 사업비 : 300백만원
- 수행기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도시서비스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실증테스트, 인증/특허 지원
-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 **(생태계 조성)**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체험 및 시민 대상 IoT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산 스마트시티 포럼 운영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부

TEL 888 - 4557 FAX 888 - 7739
TEL 749 - 9485 FAX 749 - 7463

홈페이지 : <http://www.k-smartcity.kr/>

3-32 중소기업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지원목적

- 부산지역 기업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시 요구되는 글로벌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

사업내용

- 기간/주관 : 2023. 1월 ~ 12월 /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9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글로벌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CE, UL 등 해외 품질/규격 인증(481종)
- 선정기준 : 종업원 규모, 기술혁신형기업,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실적

- '97. ~ '21. 지원실적 : 1,152개 인증획득, 4,310백만원 지원
- '22년 실적 : 13개사 13개 제품인증 획득 추진

추진계획

- '23.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부산시 ⇔ 부산경제진흥원)
- '23. 2월~4월 :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
- '23. 5월~12월 : 기업 인증획득 추진, 인증획득 비용 지급(수행기관→기업)

지원사항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제품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1개 제품 취득비용의 70% 한도 내 사후지원
 - 지원조건 : 1기업당 1건, 5백만원 한도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TEL 888 - 4645
TEL 600 - 1711

FAX 888 - 4639
FAX 600 - 1805

3-33 부산품질혁신센터 운영

운영목적

- 지역 산·학·연·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품질혁신 지원
- 21세기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사업개요

- 설치장소 : 부산진구 엄광로 176 부경대학교 가온관 716호
- 추진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품질시스템 보급지원
 - 부산시가 품질향상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지원
- 주요사업
 - 산·학·전문기관이 연계된 공동정보 인프라 구축
 - 지역 품질경영 실태 및 문제점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지역기업 및 특화산업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품질경영 기술개발
 - 품질경영 확산·보급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방안 추진

업체 지원사항

- 부산지역 중소기업체, 품질관계자 계층의 품질관련 연구자료, 연구동향, 품질인증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중소기업 품질경영 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 부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후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사)부산품질혁신센터

TEL 888 - 4645
TEL 513 - 1484

FAX 888 - 4639

3-34 부산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위기 및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
- 기존 공장에 자동화, 운영관리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ICT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국비 확정후 작성)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 시행시기 : 2019년 ~ 2022년
- 사업비 : 2,700억원(국 1,350, 시 270, 민 1,080)
- '22년 사업비 : 500억원(국 300, 시 50, 민 200)
- 수행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업종 : 제조업)
- 지원금액 : 최대 2천만원(개소 당)
- (지원비율) 국비 : 시비 : 민자 = 50%(1억까지) : 10%(0.2억까지) : 40%(0.8억까지)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업모집 : 2022년 수시
- 참가신청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TEL 888 - 4634 FAX 888 - 4639
부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974 - 9150

3-35 노후공정 제조데이터 활용 고도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 및 단계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공급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부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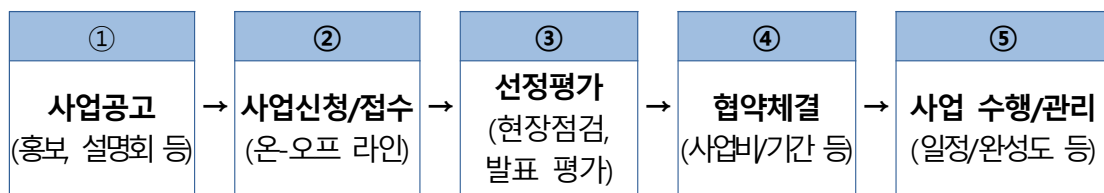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체(15개사)
- 시행시기 : 2023.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500, 민자 100)
- 위탁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공급기술개발 지원(최대 5천만원)
- 제조데이터 획득 애로기술지원 지원(최대 1천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업체모집 : 2023년 상반기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TEL 888 - 4634
TEL 974 - 9131

FAX 888 - 4639
FAX 974 - 9209

3-36 뿌리산업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목적

- 부산 뿌리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공정기술 및 애로해결,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뿌리기술 고도화 유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시내 소재한 지역 중소·중견기업(뿌리산업 전·후반 기술분야)
- 시행시기 : 2019년 1월 ~ 2023년 12월(5년간)
- 2022년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수행기관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뿌리기업원스톱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품질 및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해결 및 마케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2023년 1월 ~ (수시)
- 참가문의 및 신청 : 뿌리기업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 070-4640-0519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TEL 888 - 4635 FAX 888 - 4639
TEL 070 - 4640 - 0519

3-37 시 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신규)

사업목적

- 대기업 편중 산업구조 전환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중소 기업간 협업(설계 등)을 통한 지원 플랫폼 구축
- 중소엔지니어링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20,000백만원(국 10,000, 시 7,500, 민 2,500)
- 사업내용 : 엔지니어링(설계, 관리 등)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3종), 기업지원(40건), 전문인력양성 200명 등

지원내용

- 조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협업 플랫폼활용 지원
- 엔지니어링 전문가인력양성
- 해외마케팅 및 기술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업모집 : 2023년 수시
- 참가신청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TEL 888-4634 FAX 888-4639
 부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974-9150

3-38 항공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목적

- 항공 주요부품 기술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및 핵심기술 확보

사업개요

- 기간/주관 : 2022년 1월. ~ 2026년 12월(5년간)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항공 부품기업, 연관 기업체 등 48개 업체
- 지원분야 : 주요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도화 지원, 특허/인증지원 등
- 사업내용
 -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고도화 지원 등
 - 기술혁신 및 저변확대를 위한 항공인증 지원
 - ①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인증 획득 관련지원
 - ② 항공인증 관련 절차, 기술 노하우 제공 등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 ③ 기업의 항공인증 취득(AS9100, NADCAP 등), 갱신 비용 지원 등
 - 항공산업 동향을 반영한 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추진계획

- '23년 3월 2차년도 사업추진(참여기업 선정·공고, 기업지원 등)
- '23년 12월 2차년도 사업 완료
- '24년 2월 사업비 정산 및 사업평가 실시

기대효과

- 부산시 7대 전략산업(항공·드론) 육성에 부합하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연계하여 항공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조성 효과
- 항공산업 육성으로 부산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 청년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내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체질개선 유도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TEL 888-4645

FAX 888-4639

3-39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목적

- 수소전기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개요

- 기간/주관 : 2020. 1월 ~ 2024. 12월 /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 사 업 비 : 400백만원/년(시비)
- 지원대상 : 자동차 부품기업 등
- 지원분야 : 주요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 구축 장비 활용 등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소전기차 시제품 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지원(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시험인증 : 전문기관과 연계하 맞춤지원(기업당 1천만원 이내)
 - 장비활용 : 자동차부품 기술협력 센터 보유장비(13종) 활용 지원

추진계획

- '23. 2월~3월 참여기업 공고 및 선정
- '23. 3월 ~ 기업지원 등
- '23. 12월 당해연도 사업 완료 및 결과 보고

기대효과

-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 협력기술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
- 엔진차 중심의 업체를 미래차부품업체로 성장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TEL 888 - 4646

FAX 888 - 4639

3-40 부산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

사업목적

- 지역 중소 부품업체들의 글로벌 완성차 납품자격 확보를 위한 제품 품질인증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사업개요

- 기간/주관 : 2019년 1월 ~ 2023년 12월 / 한국기계연구원
- 사업비 : 270백만원/년(시비)
- 지원대상 : 자동차 부품기업 등
- 지원분야 : 연구역량 강화 지원, 전략기술개발 지원 등
- 사업내용
 - 연구역량 강화 지원 : 한국기계기술연구원 인력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지원
 - 전략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전문가 기술 자문
 - 기업연구소업그레이드 : 기업 보유 연구장비 검교정비 등 지원

추진계획

- '23. 2월~3월 참여기업 공고 및 선정
- '23. 3월 ~ 기업지원 등
- '23. 12월 당해연도 사업 완료 및 결과 보고

기대효과

- 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기업연구역량 강화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TEL 888 - 4646

FAX 888 - 4639

3-41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 조선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조 Inquiry 확보를 위한 영업 및 설계, 기자재 조달을 외부 전문업체에 분업화
- 수주협업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중·소 조선업계 맞춤형 수주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이 목적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중소조선소, 중소조선기자재기업, 설계엔지니어링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 부산시 '22년부터 참여
- 시행주체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사업비 : 37억원(국비 25, 시비 12)
- 사업내용 : 해외 영업 및 설계 능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의 해외 수주를 위한 맞춤형 선박 영업 시스템 구축 및 제공

지원내용

- 수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남아 수주활동 지원 및 발주물량 확보 지원
- 선가(영업설계/기자재견적/건조가) 산출 체계화 지원
- 중소형 선박 건조 프로젝트 발굴/수주를 위한 원스톱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TEL 888 - 4655
TEL 400 - 5079

FAX 888 - 6739
FAX 400 - 5050

3-42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대기배출시설 총량관리사업장)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환경부, 부산광역시
- 사업비 : 186백만원(국비 124백만원, 시비 62백만원)
- 사업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및 정도검사비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40%, 시비 20%, 자부담 40%

신청방법 및 절차

- 문의 및 신청 : 부산광역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TEL 888 - 3584 FAX 888 - 3569

3-43 중소기업 등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설치된 보일러 등의 버너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과 사업자 재정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환경부, 부산광역시
- 사업비 : 612백만원(국비 340백만원, 시비 272백만원)
- 사업내용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보일러 용량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물량 : 85대
-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신청방법 및 절차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지급 대상자 → 부산광역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부산광역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지급 대상자 → 부산광역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부산광역시장)
- 성능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 검사의뢰(부산광역시장) → 결과통보(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부산광역시장 → 지급 대상자)

문의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TEL 888 - 3584 FAX 888 - 3569

3-44 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운영(신규)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지원
- 비대면·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서비스산업 창출 및 지원 추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서비스기업, 예비창업자, 대학교 등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센터위치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우동),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5층
- 사업내용 : 컨택오피스 운영, 서비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등
- 운영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사업

- (컨택오피스 운영)
 - 지역 서비스기업에게 디지털 전환 BM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분야별 기초-전문가 상담)
 - 서비스 융복합, 디지털 전환 등 희망기업 수요 조사, 테스트베드 제공 및 법률자문 등
- (서비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 지역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융복합,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제공
 - 서비스 데이터 오픈랩을 통해 市 보유 미개발 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열람·분석 환경 제공
 - 웹 플랫폼을 통한 상권 분석 및 예측 프로그램, 간편 앱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지원

※ 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누리집(busanserviceup.kr) 참조

이용방법

- 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누리집(busanserviceup.kr)에서 이용 신청
 - 컨택오피스(컨설팅), 서비스 데이터분석 플랫폼 사용 등
- 방문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로 문의(744-8491, 849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4862 FAX 888-4379
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TEL 744-8491, 8496 FAX 744-8497

3-46 서비스 강소기업 지원·육성(신규)

사업목적

- 우리시 집중 육성 서비스산업분야 중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 단계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표 서비스기업으로 육성하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제6조(서비스산업 육성사업)
- 선정분야 : 비즈니스서비스, 영상·콘텐츠, 관광·MICE, 물류, ICT, 금융, 의료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선정기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육성
 - (선정 및 인증) 매년 15개 서비스기업 선정 및 5년간 인증
 - (기업맞춤형 지원) 온·오프 홍보, 컨설팅, 교육, 지적재산권 등 ▷ 선정 1년차
 - (자기주도 성장지원) 기업성장 육성모델 발굴·지원 ▷ 선정 2~5년차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1.4억원(시비)

지원내용

- 기업맞춤형 지원 : 기업당 3백만원(15개 기업)
- 자기주도성장 지원 : 기업당 10~20백만원(4개 기업)
- 부산시 및 유관기관(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일부 사업 가점 부여
- 인증서 및 현판, 강소기업 교류회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1~2월 중
- 신청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문의 및 신청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 ☎ 600-1718)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4861 FAX 888-4379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 TEL 600-1718 FAX 600-1805

3-47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신규)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융합(지식서비스기업과 타산업(제조·서비스)기업간 연계·협업) 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신제품·신서비스 발굴, 지원을 통한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제6조(서비스산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 지식서비스업체 + 제조업체 or (지식)서비스업체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우수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과제 선정 및 사업화 지원
 - 우수과제의 국비연계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 업 비 : 3억원(시비)

지원내용

-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과제당 40~60백만원(6개 과제)
- 사업계획서 컨설팅 지원 : 기업당 5백만원(2개 과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1~2월 중
- 신청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문의 및 신청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 ☎ 600-1718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	TEL 888-4861 TEL 600-1718	FAX 888-4379 FAX 600-1805
--	------------------------------	------------------------------

3-48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사업목적

- 원스톱 수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 대표 수출창구로서 허브 역할 수행
- 수출단계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 및 부산시 수출 도약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부산경제진흥원 3층/250㎡(약75평)
- 주요시설 : 5실(안내데스크1, 화상상담실2(중형 2) 정보검색공간1, 사무실1)
- 주요기능

구 분	세부내용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종합서비스 제공 ○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 사후관리, 타 기관 연계 지원 등
수출전담 멘토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수출 멘토단 운영 ○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수출지원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활용 수출실적 관리분석기능 확장, 바이어 매칭 DB 구축 ○ 오픈채팅 및 챗봇 활용 온라인컨설팅, 신규사업 홍보
수출상담실 및 화상상담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실 및 부산시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장 운영 ○ 지역기업 화상상담 지원 및 수출상담회 개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2

FAX 888-7759

3-49 중화권, 아세안 규격인증·지재권 확보 지원

사업목적

- 지역 수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방지 및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통상조례
- 지원대상 :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비 : 70백만원(시비)

지원내용

- 규격인증 취득, 지재권(상표, 발명,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 업체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
- 1사당 최대 2건, 소용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24

FAX 888-7759

3-50 글로벌 수출 스타 기업 육성

사업목적

- 수출 기업 단계별(진입·초보·유망)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업 30개사
- 사업기간 : 2023. 4. ~ 12.
-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비 : 5억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Package 지원
 - 진입기업 : 제품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기초 역량확보 지원
 - 초보기업 :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 유망기업 : 수출전략품목 위주로 제품현지화 등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신청방법 및 절차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6

FAX 888-7759

3-51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해외시장의 위험, 상황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다이렉트), 중소중견 Plus+보험, 중소 Plus+ 다이렉트 보험, 농수산물 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051-245-3981)로 지원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자 신용평가 등 심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5 FAX 888-7759

3-52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 지역 수출제조기업의 자금유동성 공급 및 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수출산업 안정화, 수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5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차입금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포괄매입)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051-245-3981)로 지원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보증료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TEL 888-4815 FAX 888-7759

IV.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4.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4-1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목적

- 역량있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육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 패션디자인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으로 섬유패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신진 패션디자이너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250백만원, 민자 50백만원)
- 사업내용 : 인큐베이팅 지원 등을 통한 신진 디자이너 창작활동 지원
 - 창작스튜디오 공간 및 창작 활동 지원
 - 국내외 전시 및 브랜딩 지원 : 국내외 전시 및 패션쇼 참가 지원, 단체전시 지원, 디자이너북 제작 및 자체전시회 개최

지원내용

- 신진 디자이너 발굴(9기 10팀) 및 육성(연간 총 20팀)
- 국내 및 해외 패션쇼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룩북 제작 등 브랜딩 지원을 통한 창작 스튜디오 입주 브랜드의 성장 촉진
- 패션 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사업(교육, 컨설팅, 해외시장 컨설팅)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 가속화

신청방법 및 절차

- 부산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대학 패션 관련 학과 포스터 배부
-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대면평가 추진,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4
TEL 790 - 1041

FAX 888 - 6739

4-2 신발산업 인력양성사업

사업목적

- 경남정보대학 신발패션산업과 예비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지원 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
- 부산지역 신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발전문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신발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미취업자 예비인력
- 시행시기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비 : 54백만원(시비)
- 수행기관 :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내용

- 글로벌 신발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교육, 업체현장방문 교육 등
- 신발 디자이너 양성, 개발실무, 마케팅 교육, 신발산업기사 국가자격증 교육
- 신발인력 DB구축으로 업계 필요인력 공급
- 현장 밀착형 교육 체제 구축 및 산학연 정보 네트워크 구축

신청방법 및 절차

- 교육일정 : 2023년 3월 ~ 12월
- 교육문의 및 신청 :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경남정보대학교(산학협력단)

TEL 888 - 6751
TEL 320 - 1575

FAX 888 - 6739

4-3 부산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신규)

사업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소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역량 제고와 제조혁신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통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미취업자 예비인력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시행주체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비 : 1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기업의 디자인 활용도 증대 및 디자인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 디자인 컨설팅 지원 : 1:1매칭, 컨설턴트 자율매칭 우선
 - 디자인개발 자금지원 8개 과제(16개사) : 지원금 총 110백만원

지원내용

-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제품 및 포장(시각) 디자인 분야의 구체적인 디자인 개발·개선 전략 및 방향 컨설팅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사항 극복 지원
 - 1:1 비대면 또는 대면 컨설팅, 현장방문 등
 - 컨설턴트는 기업 자율매칭 우선 매칭 요청 시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디자인전문기업 안내 등
- 디자인 개발(자금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개선 과제 8건 개발자금 지원
 - 과제는 디자인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총 16개사 참가
 - 컨설팅 결과 및 발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선발, 사업비 차등 지원
 - 제품 및 포장(시각)디자인 개발 분야 총 110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담당자 메일로 컨설팅 신청서 제출
- 1:1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디자인 개발(자금지원) 과제 신청 희망 기업은 담당자 메일로 과제 신청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서류·발표 평가 결과 반영하여 지원과제 선정
- 디자인 개발 과제 협약·수행, 중간·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만족도조사 실시
- 향후 추적 성과조사에 필수 대응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4 TEL 790 - 1034	FAX 888 - 6739
----------------------------------	----------------------------------	----------------

4-4 부산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목적

-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
-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후 취업 지원을 통한 실업해소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훈련대상 : 만18세 이상 부산 거주 미취업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행기관 :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예산 : 42.7억원
- 사업내용 : 미취업자 대상 직종별 맞춤훈련 및 취업지원
 - 직종별 훈련 : 단기간 훈련과정을 통해 빠른 취업을 지원
 - Brand 훈련 : 장기간 고속훈련 과정을 통해 4차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내용

- 훈련기관 : NCS 직종별 훈련단가 적용하여 훈련비 지원(훈련단가×훈련사수×훈련인원)
- 훈련생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 참여 희망 훈련기관 :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매년 1~2월 사이)
- 참여 희망 훈련생 : 선정된 훈련기관 개별 연락(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 - 4384

FAX 888 - 7719

4-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고용유지력 강화
- 영세기업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의지 고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별도 시범사업 추진 예정('23.2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수행기관 :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비 : 2,000,000천원
- 사업내용 : 부산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확대 인원에 대해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 1인당 30만원, 최대 50명
- 부산 '산업단지 소재' 모든 업종 중소기업 : 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절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 3. (예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TEL 888-4371

FAX 888-7719

4-6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사업목적

- 창업의 진입이 쉬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창업지원으로 초기 창업가 양성
- 전문 글로벌 셀러 양성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 수출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후속 사업 발굴
- 전자상거래 협약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청년창업자
- 모집공고 : 2023. 2월(예정)
- 사업비 : 120백만원
- 수행기관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협약기관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한국장학재단 부산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사업내용

- 글로벌 셀러 양성 교육
- 실천창업지원금 지원 및 국내산업 시찰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 - 4415 FAX 888 - 4379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 TEL 580 - 9027 FAX 580 - 9040

4-7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사업목적

-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인 XR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실감콘텐츠 산업 저변확산 및 기업 육성 도모

사업내용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지원대상 : 부산 실감콘텐츠(VR/AR/XR) 기업 및 시민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시행주체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위 치 : 동서대 센텀캠퍼스 9층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체 험 관) 부산 VR/AR체험관 운영 ▷ 6개 체험부스 운영
 - (기업지원) XR 관련 7개 기업 입주 지원 및 제작 지원

지원내용

- 부산기업 입주 지원 및 제작 지원
- 부산 VR/AR체험관 시민 무료 체험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vrar.or.kr) 및 전화(051-715-9122)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TEL 888 - 4565 FAX 888 - 456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전환사업단 TEL 715 - 9123 FAX 747 - 9144

4-8 IoT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운영목적

- 민간투자로 구축된 IoT 개발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자양성, 리빙랩 교육·세미나 및 특화기업의 실증 지원을 통하여 부산을 IoT 창업 도시로 키우고, 사업화, 투자, 판로 지원 연계를 통한 사물인터넷 특화기업 육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IoT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 시행시기 : 2023. 1. ~ 2023. 12.
- 사업비 : 270백만원(시비)
- 운영기관 :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항

- (IoT 리빙랩 실증 지원) 실증을 위한 사업화지원
- (IoT 서비스 실용화 지원) 성능평가, 인증, 국내외 시장 검증 지원
- (IoT 창업생태계 조성) 부산리빙랩네트워크(BNoLL) 지원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TEL 888 - 4556
TEL 749 - 8922

FAX 888 - 7739
FAX 749 - 8919

4-9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분임조 교육

사업목적

- 전국대회 대비 품질분임조의 대회관련 교육 및 실력향상을 통한 우수성적 기대
- 품질분임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기간/장소 : 2023년 6월중 / 미정 ('22년도 경남 통영시)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 대 상 : 2023년 부산 품질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품질분임조
- 사 업 비 : 17.5백만원
- 내 용 : 전국대회 대비 부산대표 품질분임조 발표기법, 발표문 작성 능력 교육

추진실적

- 2003년부터 매년 부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분임조 약 20여 팀 교육 실시
- 2022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경북 경주시) 실적 : 금상 3, 은상 8, 동상 1

추진계획

- '23. 6월 : 부산광역시 품질경진대회 실시 및 전국대회 참가팀 선발
- '23. 6월~7월 : 워크숍(1박2일) 운영

업체 지원사항

- 전국대회 대비 우수분임조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TEL 888 - 4645
TEL 557 - 1239

FAX 888 - 4639
FAX 557 - 0430

4-10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

사업목적

- 고령층 일자리 창출 등 시니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시니어 근로자 최소 5명 이상 근무하고 시니어(55세 이상) 고용 비율이 10%이상 기업

지원내용

-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10개 기업)
- 인센티브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업체당 5백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 공모 일정에 따라 신청서 등 제출, 심사를 통한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TEL 888 - 3884

FAX 888 - 3269

4-11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 장노년 대상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취업교육훈련 및 일자리알선 등 일자리관련 종합지원

사업내용

- 장노년 취업 상담 및 정보제공, 취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 장년층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 50+ 부산 포털 운영, 장노년 취·창업 동아리활동 지원
- 장노년일자리 시책사업, 관련사업 연계·조율 및 협력사업 추진

이용방법

- 구인 구직 신청 및 상담, 취업연계
 - 50+콜 센터(1577-1960) 신청 및 상담 후 대상자(업체) 등록
 - 50+부산 포털(www.busan50plus.or.kr) 접속하여 구인·구직 신청등록
- 취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동아리 활동 등 이용
 - 센터(864-6300)로 상담 후 희망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신청
 - 50+부산 포털(www.busan50plus.or.kr) 접속하여 희망교육 검색 후 신청

※ 센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15, 3층·4층(거제동, 오대빌딩)
(지하철 3호선 거제역 5번 출구 100m 앞)

문의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TEL 888 - 3881

FAX 888 - 3269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TEL 864 - 6300

FAX 862 - 6644

4-12 부산모바일 AI센터 운영

사업목적

- 지역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성장 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내용 : AI기업 육성 지원, AI 서비스 개발 자원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AI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중소기업 등
- 신청방법 : 부산모바일AI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등 참조 <http://bmac.kr>
- 사업주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항

- (기업육성지원)
 - AI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AI기업 특허, 세무,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 컨설팅 지원
- (개발인프라지원)
 - AI 서비스 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장비, 오픈개발실 등)
- (협력네트워크 구축)
 - AI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성 및 시책 발굴
 - AI 관련 국가 지원사업 지역기업 유치 지원(설명회, 수요-공급 매칭 등)

향후계획

- '23. 1월 ~ AI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연중 계속)
- '23. 4월 ~ AI기업 지원사업 공모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TEL 888 - 4596 FAX 888 - 456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749 - 9337 FAX 749 - 9344

4-13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목적

- 여성경제인 교육 및 컨설팅, 최신 트렌드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창업 성공 극대화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여성 CEO 경영혁신포럼 개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예비 여성창업자, 초기 여성기업 대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여성기업가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수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 사업비 : 21,600천원(시비)

지원내용

- 부산여성 CEO 컨설팅 교육(8회) 10,180천원
 - 여성창업 촉진과 여성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여성기업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부산여성 CEO 경영혁신포럼(4회) 11,420천원
 - 여성경제인의 경영활동 및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향후계획

- '23. 5. ~ 7. 부산여성 CEO 컨설팅 교육 운영
- '23. 5. ~ 12. 부산여성 CEO 경영혁신포럼 개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TEL 888 - 7691
TEL 465 - 1492

FAX 888 - 7719

4-14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목적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촉진 및 기업가 정신 함양
- 장애별 특화 아이টে에 따른 체계적 교육 등 맞춤형 창업 기초역량 지원으로 예비 창업 장애인의 전문분야 창업촉진과 성공률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장애인 창업자 및 장애기업인
- 사업기간 : 2023년 8월 ~ 12월
- 수행기관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부산지회
- 사업비 : 24,300천원(시비)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교육 9,000천원
 -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전문분야 창업 촉진
 -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도모, 장애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부산장애경제인 복지증진대회 개최 15,300천원
 - 장애경제인 경영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기업의 역량 강화, 장애경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향후계획

- '23. 8. ~ 12. 온라인 마케팅 교육 운영
- '23. 12. 부산장애경제인 복지증진대회 개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부산지회

TEL 888 - 7691
TEL 469 - 8480

FAX 888 - 7719

V.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5.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5-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 조성

조성목적

- 부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위 치 :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임랑리·반룡리 일원
- 면 적 : 148만㎡
- 사 업 비 : 4,287억원(보상 1,539, 공사 2,315, 기타 433)
- 사업기간 : 2012년 ~ 2023년(사업시행자 : 기장군)
- 유치업종 : 의료, 금속기계, 수송장비 등 핵의·과학 관련 업종

추진상황 ▷ 현공정 94%

- '10.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기장군)
- '12. 6.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부고 제2012-251호)
- '12. 10. : 2012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 '14. 4. : 산업단지 공사착공
- '15. 10. : 수출형 신형연구로 부지조성 완료 ▷ '27년 상용운전 예정
- '16. 5. :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축공사 준공 ▷ '26년 상업치료 예정
- '18. 5. :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착공 ▷ '19. 10월 준공
- '18. 12.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부고 제2018-434호)
- '19. 2. :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 공고(1단계)
- '23. 1. : 부지조성 중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888 - 4922

FAX 888 - 4919

5-2 산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사하구 다대동 산 31-6번지 일원
- 면 적 : 5만m²
- 사 업 비 : 394억원(보상 114, 공사 233, 기타 47)
-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시 행 자 : (주)산양 ▷ 실수요자
- 유치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추진상황 ▷ 현공정 72%

- '08. 11. : 투자의향서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09.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부고 제2009-500호
- '10. 7.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조건부 심의)
- '10. 10.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 '14. 5. : 산업단지계획(구역계 일부 조정) 변경 ▶ 부고 제2014-232호
- '15. 4. : 착공계 제출
- '20. 11. : 산업단지계획(기간, 산지복구 등) 변경 ▶ 부고 제2020-447호
- '22. 6. : 산업단지계획(기간, 실시계획 등) 변경 ▶ 부고 제2022-212호
- '22. 11. : 산업단지계획(공구분할 등) 변경 ▶ 부고 제2022-446호
- '23. 1. : 부지조성 중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888-4921 FAX 888-4919

5-3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대우버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 187 번지 일원
- 면 적 : 34만m²
- 사 업 비 : 687억원(보상 317, 공사 242, 기타 128)
- 사업기간 : 2010년 ~ 2023년
- 시 행 자 : 에스티에스개발(주) ▷ 100% 실수요자
-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추진상황 ▷ 현공정 98%

- '08. 3. :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 반영(시가화예정용지 : 공업)
- '09. 11.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10. 3. : 환경영향평가 완료
- '10. 5.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부고 제2010-160호)
- '13. 10.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부고 제2013-368호)
- '17. 11.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 '18. 1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 '19. 7.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19. 7. : 공사 착공
- '20. 12. :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 '22.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888 - 4941

FAX 888 - 4919

5-4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지역의 우량 중소기업 유치에 의한 지역산업의 균형개발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치/규모/사업기간 : 강서구 지사동 산 137번지 일원 / 42만㎡ / 2017년 ~ 2022년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9개 업종
- 사업비 : 2,135억원(보상 452, 공사 1,226, 기타 457)
- 시행자 : (주)코람코자산신탁 * (주)지사글로벌개발(신탁자)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개발방식 : 실수요자개발(15개 업체) ▷실수요자 50%

추진상황 ▷ 현공정 22%

- '15. 5. : 투자의향서 접수 및 보완 제출
- '15. 6. :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회의
- '15. 9. : 환경영향평가 공개항목결정 공고
- '15. 11.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제출
- '15. 12. : 합동설명회 개최
- '16. 10. : '16년 제2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6. 12. : '16년 제3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7. 2.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 '18. 10. : 시공참여업체 GS건설 선정
- '20. 2. : 공사착공
- '21. 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 토지이용계획 변경
- '21.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 유치업종 추가
- '22. 8.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 복합용지 추가 및 기반시설 변경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888 - 4932 FAX 888 - 4919

5-5 강서해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기업들의 역외 이전방지
- 도시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산 213-3번지 일원
- 면 적 : 10만m²
- 사 업 비 : 349억원(보상 41, 공사 263, 기타 45)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시 행 자 : 강서해성일반산단(주)

추진상황 ▷ 현공정 1.3%

- '10. 8. : 투자의향서 제출
- '10. 9.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
- '11. 4.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 '12. 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4. 8.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 '16. 12.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7. 7.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 6.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1. 12. : 공사 착공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888 - 4924

FAX 888 - 4919

5-6 미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신항만 건설,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서부산권 산업입지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산업용지 확보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범방) 일원 355만㎡
- 사업비 : 10,734억원(보상비 4,577, 공사비 등 6,157)
- 사업기간 : 2008년 ~ 2016년(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유치업종 :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등

추진상황 ▷ 현공정 100%

- '03. 10. :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04. 3. : 사업시행자 지정(부산도시공사)
- '05. 1. :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건설교통부)
- '06.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07. 10.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제영향 평가 협의
- '08. 2.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경부)
- '08. 10. : 공사발주
- '09. 1. : 산업용지 분양공고(1차) ▷ 38필지 239천㎡
- '10. 11. : 산업용지 분양공고(2차) ▷ 31필지 157천㎡
- '11. 9.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지경부)
- '14. 6. : 1단계 사업준공, 2단계 준공(외투부지 경계)
- '16. 12. : 2단계 준공(송정북측 경계부, 창원~부산간 도로 중첩구간)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TEL 888 - 4472	FAX 888 - 444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979 - 5152	FAX 979 - 5159
부산 도시 공사	TEL 810 - 1255	FAX 810 - 1255

5-7 생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위계획상의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 도시발전 도모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생곡동 산48번지 일원 55만천㎡
- 사업비 : 2,550억원(보상 926, 공사 1,070, 기타 554)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제조업, 기타기계 및 정비 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추진상황 ▶ 현공정 100%

- '09. 7. 31. : GB 해제(국토부) 및 개발계획 승인
- '09. 10. 19.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지식경제부)
- '10. 3. 29.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10. 4. : 보상시행
- '10. 8. : 부지조성공사 착공
- '12. 9. : 연약지반 개량 및 기초공사
- '13. 8. : 실시계획 변경 승인(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14. 10. : 개발계획 변경(심해공학수조 건립)-산자부 고시 제2014-184호
- '15. 8. : 개발계획 변경(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등)
- '15. 10. : 개발사업 준공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TEL 888 - 4474	FAX 888 - 444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979 - 5145	FAX 979 - 5159
부산 도시 공사	TEL 810 - 1255	FAX 810 - 1259

5-8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부산의 도시 가용 공간한계 해소 및 산업물류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동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축 형성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
- 면 적 : 571만m²
- 사 업 비 : 21,397억원(보상 10,094, 공사비 등 11,303)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유치업종 : 철강, 조선기자재, 물류, R&D 등

추진상황 ▷ 현공정 100%

- '10. 1. :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 결정승인 고시
- '10. 3. : 산업단지계획 승인
- '11. 3. : 1-1단계(1~5공구)공사 착공(현공정 100%)
- '13. 12. : 1-2단계(6~11공구)공사 착공(현공정 60.7%)
- '16. 9. : 1-1단계(1~5공구) 공사준공
- '17. 2. : 1-1단계(1~5공구) 사업 준공
- '19. 9. : 1-2단계(6~11공구) 공사준공
- '19. 12. : 1-2단계(6~11공구) 사업 준공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 산 도 시 공 사

TEL 888 - 4474 FAX 888 - 4449
TEL 979 - 5142 FAX 979 - 5159
TEL 810 - 1273 FAX 810 - 1259

5-9 명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 신항만 건설,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서부산권 산업입지 수요급증에 대비한 산업용지 확보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지사동 일원 51만m²
- 사업비 : 1,866억원(보상비 608, 공사비 857, 기타 401)
- 사업기간 : 2009년 ~ 2022년(시행자 : 지사용합산업단지개발(주))

추진상황 ▷ 현공정 76%

- '09. 7. : 개발계획 승인고시
- '11. 11. : 사업시행자 변경 ▷ LH → 원자력산단개발(주)
- '12. 2. :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 심의(2차)
- '12. 4.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
- '12. 6. : 실시계획 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
- '14. 7. : 공사착공
- '15. 11 :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 '18. 07. : 개발계획 변경 고시(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가, 사업시행자 법인명칭 변경)
- '18. 10.~ : 부지 조성 중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888-4472
TEL 979-5152

FAX 888-4449
FAX 979-5159

5-10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사업목적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항 신항, 녹산국가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물류 및 출퇴근 근로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간선도로 확보
- 기존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와 경남 동남부권과 부산도심간 접근성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항 신항 및 서부산권의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전체
- 시행시기 : 2018년 ~ 2023년
- 총사업비 : 1,329억원 (공사 1,069, 보상 41, 기타 219)
- 수행기관 : 부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추진상황

- '09. 7 : BJFEZ 개발계획 변경고시(북측진입도로 L=6.42km 반영)
- '15. 04. :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변경 고시
- '16. 06. :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경자청→산자부)
- '16. 12. :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 '17. 1. :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KDI)
- '17. 11.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B/C=1.02, 총사업비 1,330억원, 차선평 3.5m→3.25m 축소 결정
- '17. 12. : 18년 국비 24억원 확보
- '18. 0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09. : 18년 시비 24억원 확보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문화재청 협의 등)
- '20. 12. : 21년 국비 50억원 확보
- '21. 12. : 21년 시비 50억원 확보, 22년 국비 5억원 확보
- '22. 1. ~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 지원사항

- 부산항 신항 및 서부산권 산업단지 등의 물류, 출퇴근 근로자의 원활한 수송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888 - 4474
TEL 979 - 5152

FAX 888 - 4449
FAX 979 - 5159

5-11 에코델타시티

조성목적

- 에코델타시티내 산업시설용지의 체계적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동 일원
- 면 적 : 친수구역조성 11.77km²(356만평)
- 사 업 비 : 66,05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23년(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 유치업종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추진상황

- '12. 12.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 '14. 9. : 부산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 승인
- '15. 3. :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명지동) 공사 착공 ▷ 현 공정율 100%
- '15. 12.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 '16. 8. :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실시계획)
- '16. 11. :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강동동) 공사 착공 ▷ 현 공정율 83%
- '18. 1.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2,194천m²) 現 2,773천m²
- '19. 11. : 부산에코델타시티 3단계(대저동) 공사 착공 ▷ 현 공정율 35%
- '20. 11.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변경(2차) 승인
- '21. 12. : 1단계(명지동) 공사준공, 스마트빌리지 (56세대) 준공
- '22. 1. : 부산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 (6차 변경) 승인
 - 1차 ('17.6.30.), 2차('19.3.15.), 3차('19.8.1.), 4차('20.5.22.), 5차('21.7.30.) 변경

업체 지원사항

- 기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 입주기업체 세제 혜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TEL 888 - 2852	FAX 888 - 2809
---------------------	----------------	----------------

5-12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조성목적

- 노후화된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스마트시티로 재창조

사업개요

- 위 치 : 사상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 3,021천㎡(915평)
- 시 행 자 : 부산광역시(기반시설), 부산도시공사(활성화구역)
- 사업시행방식 : 기반시설, 활성화구역(수용방식),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재정비방식)
- 사 업 비 : 4,251억원
- 조성기간 : 1968년 ~ 1975년
- 재생시행기간 : 2010년 ~ 2030년

추진상황

- '09. 9.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 '10. 4. : 타당성검토 및 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용역 수행('11.11.완료)
- '13. 4.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15.03.완료)
- '15. 4.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 '17. 5. :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및 고시 ▷ 새벽로 확장공사
- '17. 7. :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
- '18. 12. : 재생사업지구내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
- '20. 10. :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 11. : 재생사업지구 관리기본계획 고시
- '20. 12. : 새벽로 확장공사 공사착공
- '21. 1. ~ : 입주계약, 공장등록, 새벽로 확장공사 추진 및 기반시설 순차적 시행
- '22. 6. : 「22년 노후산단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공모선정

업체 지원사항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노후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 활동 환경 개선
-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으로 입주기업 지원 확대(고객네트워크 구축, 설명회·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지원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사상구 도시재생과

TEL 888-2771
TEL 310-4942

FAX 888-2809
FAX 310-4929

5-13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 운영

운영목적

-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의 납품대기 물량 적치공간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납품빈도 증가에 따른 물류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내
- 규 모 : 부지 16.781㎡, 연면적 18.873㎡, 상하역 장비구축 8층 45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60, 시비 30, 민자 10)
- 사업내용
 - 공동납품 및 운송사업 : 공동운송을 통한 운송비 절감
 - 공동집하 및 보관사업 : 물량 적치공간 해소 및 생산·향상
 - 조선소 납품물류지원사업(대중소상생협력사업): 납품 비용절감, 편의 제공
- 주 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업체 지원사항 ▷ 보관료 약 60%, 운송료 약 10% 절감 효과

- 모기업 물류업무 위탁운영으로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물류비 절감 지원
- 모기업과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간 물류 프로세스 개선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TEL 888 - 4652
TEL 831 - 5100

FAX 888 - 4639
FAX 831 - 5104

5-14 미래수송기기기술단 미래자동차지원센터

운영목적

-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하여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특화센터로서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래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주도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과학기술구역내
- 규 모 : 6,776㎡(본부동 1, 시험동 1), 장비구축 8층 46대
- 장비활용분야 : 설계 및 해석, 전자파 및 환경 신뢰성 평가

주요사업

- 장비구축 : 공동시험장비(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기술지원
- 네트워킹 : 지역 산학연 기술혁신 자원 연계 협력 체계 구축 기술 지원
- 공동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R&D) 수행
- 기업지원 : 기 구축 인프라 활용으로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 지원

센터사업 추진전략

- 미래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자동차부품기업 생태계 전환 및 역량 강화 지원
- 기업별 기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사업 추진
 - High-Tech : 공동기술개발과제 도출을 통한 R&D 협력연구
 - Mid-Tech : 완성차 맞춤형 R&D 협력 연구 및 장비활용 지원
 - Low-Tech : 현장 맞춤형 지원(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과제 협력 연구

기업 지원사항

- 공동기술개발과제 기획을 통한 R&D 수행 및 사업화지원
- 공동시험장비(전자파 및 환경 신뢰성평가) 활용을 통한 기술지원
- 미래자동차부품분야 융합 연계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지원센터

TEL 888 - 4642

TEL 974 - 9224

FAX 888 - 4639

FAX 974 - 9229

5-15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추진목적

- 미음지구 조선기자재 협동화 단지내 개별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케팅지원시설, 식당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개별업체의 경영 효율성 및 협동화 단지 경쟁력 향상

시설 현황

- 위 치 :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조선기자재 협동화 단지 내
- 시설규모 : 부지 7,228㎡, 건물 5,950㎡, 80억원(시비 16)
- 주요시설 : 공동이용시설 건물 2동 건립 ▷ '13. 7. 준공
 - 지원시설(I) : 4,628㎡(교육센터, 강당, 공동공장, 식당, 휴게실 등)
 - 지원시설(II) : 1,322㎡(공동식당, 공동공장, 휴게실 등)

업체 지원사항

- 공동식당, 공동공장, 강당, 회의실 지원
- 교육훈련센터 운영 신규 인력 및 재직 근로자 교육 지원
- 공동주차장 및 편의시설 운영 근로환경 개선
-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업체별 마케팅 역량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TEL 888 - 4652
TEL 831 - 5100

FAX 888 - 4639
FAX 831 - 5104

5-16 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운영

운영목적

- 지역 조선기자재산업의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 구축
- 녹산 국가산업단지내 숙련된 기능공 확보로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따른 조선 기자재 산업의 국제적 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25(녹산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1,480㎡, 강당·IT·CNC·교육실 등
- 주요사업 : 재직 기능공 전문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문식·맞춤식 훈련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리직 직무교육 등
- 사업주관 :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훈련주관 : 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외대, 동명대, 경남정보대

지원내용

-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260여개 조선기자재업체의 부족 기능공 양성으로 심각한 기능 인력난 해소
-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타 1,400개 업종의 근로자 교육 및 관련된 시설 및 장비, 기술, 직원교육 등 이용 가능
 -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 CAD/CAM, CNC 선반, 자동설비, IT교육, 경영시스템 등
 - ▷ 산업체 위탁(2년제 학사과정) : CAD/CAM 학과, 경영정보계열
 - ▷ 외국어 어학 교육 :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 교육과정

업체 이용방법

- 문의 및 지원요청 :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TEL 888 - 4652
TEL 831 - 5100

FAX 888 - 4639
FAX 831 - 5104

5-17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사업목적

- 부산지역 과학기술 교류·연구시설의 집적 및 혁신거점 조성
- 산·학·연·관 연계 협력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2 「부산과학산업단지」 일원
- 사업규모 : 지상 9층, 지하 1층(부지 16,529㎡, 연면적 12,231㎡)
- 시행시기 : 2023. 1. ~ 12.
- 사 업 비 : 92백만원(시비)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추진상황

- '06. 5. : '06년 과기부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공모
- '07. 1. : '부산과학연구단지' 지정(과기부 고시 제2007-1)
- '08. 12.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사업착공
- '11. 1. : 건축 준공 ▷ '11. 4. 개관
- '11. 7. : 2011년도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17. 12. : 입주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지속
- '22. 12. : 센터 입주기업 R&D 지원(현재 20개사 입주)

업체 지원사항

-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기술교류 기회 제공
- 특허인증, 마케팅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비 등 센터 내 입주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TEL 888 - 7725 TEL 974 - 9170	FAX 888 - 7739 FAX 974 - 9029
--	----------------------------------	----------------------------------

VI. 투자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6. 투자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6-1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원

지원목적

- 국내기업의 부산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붙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 토지 매입가액의 9% 이내
 - ▷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명 이상
 - ▷ (국내 복귀기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7%~9% 이내
 - ▷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명 이상
 - ▷ (국내 복귀기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 ▷ (신·증설 기업)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 투자진흥기금 지원
 - 법인기업, 3년 이상 사업 영위, 20억 원 이상 투자 (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컨택센터 5억)
 - 입지보조금 : 50억원 이내
 - ▷ 지역 내 이전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이상 : 50억원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 컨택센터 : 4억원 이내, 녹색기업 : 50억원 이내
 - 설비보조금 : 300억원 이내
 - ▷ 투자금액 2,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 300억원 이내
 - ▷ 지역 내 이전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이상 : 50억원 이내
 - ▷ 지역 내 신증설 투자 기업으로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 : 50억원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 3억원 이내, 컨택센터 : 6억원 이내, 녹색기업 : 50억원 이내
 - 고용보조금·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참고
- 세제 지원
 -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63조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80조
- 행정 지원 : 전담관리자 지정, 역외부지 우선분양, 이전부지 및 건물 알선 등

지원절차

- 투자계획 협의(MOU 체결 등)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市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 (국비지원 포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 결정통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TEL 888-4451~8

FAX 888-4449

부산광역시 국내기업 유치 지원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기준

지원요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제9조)	신·증설 기업(제10조)	상생형지역일자리(제10조의2)		
업종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기업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수도권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신규법인도 가능 		
상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 할 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의 10%(최소1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인 이상 		
투자 이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동일업종 영위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사업재편기업은 기존 사업장 축소 가능(전부 폐쇄, 매각, 임대 제외), 기존 사업장 축소보다 투자사업장 확대가 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기존 사업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 안해도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 안해도 됨 		
지원 특례 (제15조)	① 신규고용 인센티브 가산 (별표6) :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10명당1%추가 ② 지역특성화업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③ 구조고도화단지 입주,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입주, 경제자유구역 입주 : 2% 가산 ④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 ①과 ④ 중복 불가, ②와 ③ 중복 불가 / ※ ①+②+③+④ ⇒ 최대 20% 이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별표5)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입지	-	-	토지매입가액 9%	- 균형발전상위지역(기장, 강서, 해운대) 기준 - 국시비(55:45)
설비	설비투자금액 3%	설비투자금액 5%	설비투자금액 7%	- 입지보조금 없음(신증설 기업)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보조 10% 추가	
지원 범위 (별표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매입가액 인정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면적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축신축단가표" 중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내 인정 - 건물(폐건물)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불인정 - 건축연면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 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 :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이동형은 산단공 인정된 경우(내용연수 5년이상, 100만원 이상 구입단가)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10% 범위내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투자진흥기금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0명 이상	-	3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 20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20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10억한도
역내이전 기업	상시고용 20명 이상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산증설 기업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20명 이상	-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지식 서비스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2년분 건물 임차료의 50% 이내)	3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고용보조금) 1인당 500만원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1,0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컨택센터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 임차료의 50% 이내)	6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고용보조금) 50명초과 1인당 2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녹색기술· 녹색산업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고용보조금)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 상시고용 기준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기준(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분리 필수)

6-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전략산업 유치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붙임>

- 재정지원
 - ▷ 토지매입비 :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 ▷ 건물임차료 : 2년의 범위내에서 임차료의 50%
 - ▷ 설비투자 보조금 : 설비 투자비 총액의 50% 범위
 - ▷ 고용보조금
 - 50만원 이하/1인(3억원 한도)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수반산업, 市전략산업 등
 - 30만원 이하/1인(2억원 한도) : 그 외 산업
 - 기본급의 50%이하(6개월이내, 3억원 한도) :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 ▷ 교육훈련보조금
 - 50만원 이하/1인(3억원 한도)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수반산업, 市전략산업 등
 - 30만원 이하/1인(2억원 한도) : 그 외 산업
 - ▷ 컨설팅비용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내(2천만원 한도)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수반산업, 市전략산업,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 컨설팅 비용의 30% 범위내(1천만원 한도) : 그 외 산업
- 세제지원 : 관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 행정지원 : 전담관리자(PM) 지정, 기업입주 행정절차 지원 등

지원절차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결정 통지 및 지원(신청인)

문의처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TEL 888-4461~6

FAX 888-4449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재정지원(보조금지원)

구분	내용			
토지매입비 및 건물임차료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 市 전략산업 ○ R&D 기능수행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지원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건물임차료의 50%(2년 범위내) 지원		
설비투자 보조금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 市 전략산업 ○ R&D 기능수행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지원	설비투자비 총액의 50% 범위		
고용보조금	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고용근로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 市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외국 연구소
	지원	1인당 50만원 이하(최고 3억원)	1인당 30만원 이하 (최고 2억원)	기본급의 50%내 6개월간 (최고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 市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지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최고 3억원) 6개월까지	1인당 월30만원 이하 (최고 2억원) 6개월까지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 市 전략산업 ○ R&D 기능수행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그 외 산업	
	지원	컨설팅비용의 30% 범위내 (최고 2천만원)	컨설팅비용의 30% 범위내 (최고 1천만원)	

세제지원

● 지방세 감면

구분	내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감면 방법	취득세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재산세	최대 10년간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 관세 등 면제

감면 대상	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등 •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기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관세	

입지지원

구분	내용	
외투지역 현황	미음외투지역(299,584.3㎡), 지사외투지역(298,070.1㎡) ※ 부산 강서구 소재	
임대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및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임대부지가액의 1배수 이상일 것 (입주 후 5년내 이행)
	업종	첨단부품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지원 내용	임대료 공시지가의 1%로 제공, 최대 50년 임대가능 ※ 업종별 일정 외투금액 초과시 임대료 전액 면제

행정지원

● 전담관리자(PM) 지정, 투자유치 행정절차 신속처리 지원, 애로사항 해소

6-3 기업기술정보 지원 사업

지원목적

- 시장 동향, 최신 기술정보 등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제품기획부터 생산까지 R&D 수행과제를 지원하여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주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

지원내용

- 과학기술 정보조사 : 신청 과제 및 선도형 유망기술, 최신 정보 등을 조사·분석 후 기업별 맞춤 제공
- R&D 컨설팅 : 부산 우수 중소기업의 R&D수행 지원(기술, 시장동향, 사업화 분야 등)
- 번역지원 : 해외자료 국문화 및 사업화를 위한 번역 지원

추진일정

- '23. 2. 사업공고
- '23. 3. ~ 11. 정보조사 신청접수 및 수행
- '23. 6. ~ 11. R&D컨설팅, 번역지원 접수 및 제공
- '23. 12.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TEL 888 - 7731 FAX 888 - 773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울·경지원 TEL 831 - 6417

6-4 신발산업 정보화 사업

운영목적

- 신발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를 통한 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
- 최신시장 트렌드 정보제공 등 신발산업 정보인프라 기능

사업개요

- 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주요사업
 - 신발정보 지식포털 운영(www.shoenet.org)
 - 신발산업 정보 콘텐츠 구축 및 정보매체 운영
 - ▷ 신발산업정보, 국내외 마케팅 및 시장정보, 트렌드정보, 제품정보
 - ▷ 신발진흥뉴스 웹진 발행 및 책자 제작 배포
-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사업내용

- 슈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발정보 콘텐츠 제공
 - 신발진흥뉴스 웹진 발행, 신발정보책자 발행, 신발기업 DB구축, 소공인 특화 정보제공
 - 신발시장, 트렌드, 제품, 통계 등 콘텐츠 제공
 - 국내언론사 기사 및 산업동향 제공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6751
TEL 898 - 3044

FAX 888 - 6739
FAX 898 - 9393

6-5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전문가인 IP경영지원단이 기업에 직접방문 IP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즉시(3개월이내) 해소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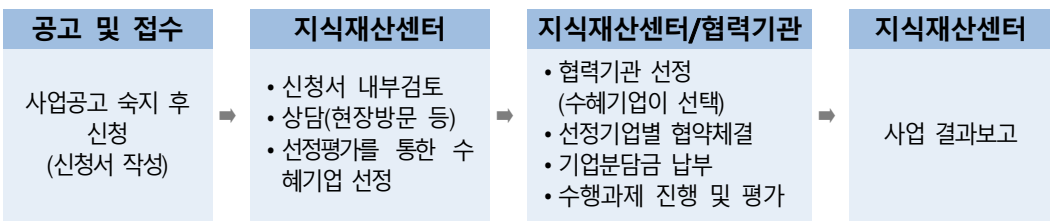
-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만 지원)
- 시행시기 : 2023. 1. ~ 12.(매년)
- 사업비 : 236백만원(시비 118, 국비 118)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사업내용 : IP 교육, 국내권리화 지원, 기술창업 연계 지원, IP기술·경영컨설팅

지원내용

- 지식재산 경영성과, 인프라, 경영활동, 경영실적, 경영관리 진단을 통해 기업경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

국내·외 IP 컨설팅	무료
특허 맵	10,000천원 이내
브랜드개발	10,000천원 이내
디자인개발	10,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6,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및 절차



이용방법

- 업체모집 : 2023. 1. ~ 9.
-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TEL 888 - 7734 FAX 888 - 7739 TEL 714 - 0684 FAX 714 - 6958
-------------------------------------	--

6-6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IP 피해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IP기초교육, IP 권리화확보 지원 등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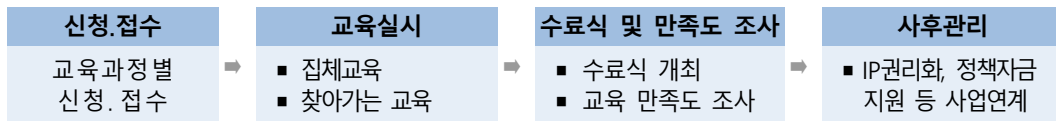
-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시행시기 : 2023. 1. ~ 12.(매년)
- 사업비 : 320백만원(시비 160, 국비 160)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사업내용 : IP종합지원, IP교육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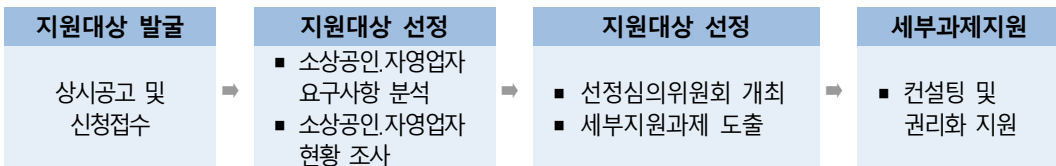
- 소상공인 IP 기초교육
 - 상표권 침해사례, 부정경쟁행위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지역수요에 대응한 교육 운영
- IP권리화 확보 지원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IP권리확보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지식재산 기초교육>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이용방법

- 업체모집 : 2023. 수시모집
-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TEL 888 - 7734
TEL 714 - 6763

FAX 888 - 7739
FAX 714 - 6958

6-7 중소기업 품질경영 진단 및 기술지도

사업목적

- 지역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상의 문제점을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해결
- 안보·보건 경영관리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기간/주관 : 2023. 1월 ~ 12월 / 부산품질혁신센터
- 사 업 비 : 36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품질경영 진단 및 기술지도 비용 지원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추진계획

- '23. 3.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부산시 → 부산품질혁신센터)
- '23. 3.~5. : 희망업체 모집, 선발
- '23. 6.~12. : 사업추진, 기술교류회 개최 등

업체 지원사항

- 품질경영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현장맞춤식 기술지도 지원
- '22년 추진실적 : 13개사 품질경영 진단 및 기술지도 완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사)부산품질혁신센터

TEL 888-4645
TEL 513-1484

FAX 888-4639

6-8 기술자료 임치지원

사업목적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간 위·수탁 관계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은 기술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적인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으로 동반성장분위기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 사업예산 : 8,550천원
- 사업내용 : 기술자료 임치비 지원 ▷ 신규 300천원 × 20개사, 갱신 150천원 × 17개사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 및 협력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효과

신청방법

- '23. 1월 ~ : 사업공고 후 기업신청 접수 후 선착순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888 - 7696
TEL 600 - 1736

FAX 888 - 7719
FAX 600 - 1805

6-9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기업옴부즈맨) 운영

운영목적

-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기업인 입장에서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소를 통해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구성인원

- 3명 ▷ 기업옴부즈맨(1명), 상공회의소(1명), 경제진흥원(1명)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설치

- 부산시청 1층(TEL 888-6493, FAX 888-6499)

운영내용

-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 애로·규제 수렴 및 해소 활동
-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내방 및 전화 접수 적극 대응
- 기업 애로·규제 해소 위해 다양한 채널 활용
 - 부산광역시 및 구·군 담당부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 활용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 중앙기관 활용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5조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TEL 888 - 6493
TEL 888 - 6493

FAX 888 - 7719
FAX 888 - 6499

6-10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우수기업 및 예우기업 선정

- 선정대상
 - 당연대상 :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사회공헌장,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 심의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기업
- 선정방법
 - 당연대상 : 해당되는 상 주관 부서에서 추천, 우수기업으로 선정
 - 심의대상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시책

-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3년)
 -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
 -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체계적인 기업애로 해소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 시민단체, 대학교수, 기업인 등 14명
 - ▷ 기 능 :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사항 심의,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 중앙부처 건의사항 발굴 등
 - 기업옴부즈맨 운영 : 기업 전문가 1명 임용, 기업애로사항을 기업인 입장에서 전담 처리

6-11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업목적

-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혁신 도시 시정 방향에 따라 현장 속에서의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 중심의 규제 발굴 개선 추진
- 신산업·미래먹거리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사업개요

- 운영주관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 구성인원 : 규제혁신 2팀 4명
- 운영기간 : 2023. 2. ~ 11.
- **2023년 중점 사항**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규제 중점 발굴
 - 2023년 하반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대비 관련 규제 발굴
 - 관내 개최장소 선정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등 관련 규제발굴 및 해소, 필요시 신규 법령 등 제정을 위한 애로사항 발굴
 - 북항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유식 건축물(Floating Island)' 관련 규제사항 및 제도 마비로 인한 애로사항 발굴 개선

- 운영방법 :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련기업(단체) 직접 방문상담
 - ① 관내 민간기업·협회·조합·단체 직접 방문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대비 예상되는 규제사항 선제적 발굴 (개최장소, 시설물 설치, 부유식 건축물 관련 규제 등)
 - ▷ (행태·그림자규제 발굴) 인·허가, 대관업무가 많은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 방문
 - ▷ 건축주택국과 협업하여 건축 관련 규제 공동발굴 및 개선
 - ②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운영 - 3개 권역

구분	주요 산업단지	기업관련단체
서부지소 (녹산산단)	명지녹산, 신호, 화전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동부지소 (장안산단)	정관일반, 정관농공, 회동석대, 장안, 명례, 센텀시티, 반룡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 등 6개단체
미음산단	국제물류, 부산과학, 미음, 생곡, 신평장림, 사상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7개단체

- ▷ 현장신고센터 방문주기 변경
 - 기존 : 월 3회 정기방문 ▶ 변경: 애로사항 접수시 즉시방문
 - 사유 : 정기적인 현장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불편사항 다수 해소에 따라 2022년부터 현장신고센터 접수건 대폭 감소 ▶ 정기방문 효율 저하
- ▷ 현장신고센터와 병행하여 개별 조합·협회·기업 직접 방문 상담
- ▷ 인접 단체 수시 방문을 통한 규제혁신 네트워크 관리 병행
- ③ 산업관련 전시·행사장 방문·상담부스 운영
 - ▷ 벅스코 등 전시·행사장 방문 상담 및 규제 발굴
- ④ 산업단지 외 기업·산업 관련 단체 및 상담요청 기업 방문
- 과제발굴 : 관련 기업(협회, 단체)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한 애로 사항 청취
 - 사전 방문 안내, 기업(협회, 단체) 차원의 애로 사항 수집(행태규제 포함)
- 처리방안 : 발굴 및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및 개선안 도출
 -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건의자와 수시 의견교환 등 완결 시까지 관리, 규제개혁 관련 중앙부처 등 방문 건의

문의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888 - 2601~4 FAX 888 - 2599

6-12 부산경제동향 종합 포털 운영

운영목적

- 부산시의 경제, 산업, 생활 등의 다양한 통계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알기 쉬운 서비스 제공과 지역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및 관리

사업내용

- 사업주관 : 부산시, 부산연구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홈페이지 주소 : <http://becos.kr>

주요 서비스

- 지역의 경제, 산업, 생활 등 핵심 경제통계(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부산통계DB 표준화 도모
 - 부산 및 국내 경제, 소득, 산업, 생활, 기반통계 제공
- 지역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성하는 통계 제공
- 부산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부산경기종합지수, 산업활동, 소비자물가, 고용동향, 수출입동향 등)
- 부산경제동향(월간지), 부산지역 및 국내 기관들의 경제관련 자료 제공

문의처 :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TEL 860 - 8719

FAX 860 - 8619

6-13 월간경제동향 발간

추진목적

- 지역 경제이슈, 경제동향 및 기업지원 사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관기관 및 지역 내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

사업개요

- 배포대상 : 400여개의 경제 유관기관 및 지역 기업 등
- 배포시기 : 매월 20일경 발간
- 사업방법 : 매월 초 공표된 지표에 대해 수집 및 분석 후 작성

지원내용

- 월간 인포그래픽스(경기동향, 고용동향 등 6종 경제지표 인포그래픽스)
- 부산경제동향(산업활동, 생산, 수출, 고용 등 12종 경제지표)
- 부록(최근 10년간 주요 경제지표 추이)

이용방법

- 신청 대상 :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기업체
- 신청 문의 :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문의처 :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TEL 860 - 8719

FAX 860 - 8619

VII. 중소기업 창업 지원

7. 중소기업 창업 지원

7-1 부산창업지원센터 운영

추진목적

- 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재창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계속)
- 사업내용
 - (시설운영) 부산창업지원센터, e커머스비즈센터 B-스타트업그라운드, 부산창업카페 크리에이티브샵
 - (예비창업) 대학창업동아리 BM고도화, 창업교육·특강·멘토링, 네트워킹 개최
 - (창업초기)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SEED투자역량강화
 - (창업성장) 성장촉진패키지, 우수인재유치, B스타트업챌린지, 밀리언클럽 지원 등
 - (재 창업) R&D 기획 패키지, 재창업 성장지원
- 지원금액 : 3,700백만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사업별 상이)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연번	입주지원 시설	현 황
1	부산창업지원센터	○ 소재지 : 남구 신선로 365, 10공학관 1~5층 ○ 규모 : 건물(연면적) 2,717.82㎡(823평)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공간, 교육장, 세미나실, 제품전시·촬영실 등
2	e커머스비즈센터	○ 소재지 : 부산진구 동천로 116, 3.5층(한신벤, 전포동) ○ 규모 : 1,913㎡(580평) ○ 주요시설 : 입주실, 화상회의실, 제품촬영 스튜디오, 소규모 물류창고, 세미나실 등
3	B-스타트업그라운드	○ 소재지 : 부산진구 동천로 116 2층(한신벤, 전포동) ○ 규모 : 436㎡(132평) ○ 주요시설 : 오픈공간,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입주공간, 미팅룸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TEL 888-4412~5 FAX 888-4379
TEL 600-1850~9 FAX 600-1802

7-2 창업보육센터 운영

운영목적

-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초기창업자에게 입주 공간 제공과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운영현황 : 13개 센터
- 지원액 : 745백만원
- 입주조건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이내 기업)
- 입주기간 : 최초 3년, 2년 연장하여 최장 5년

창업보육센터 현황

연번	보육센터명	규모[㎡]	분야	보육실수	입주업체수	개소일자
	계	22,917.22		416	328	
1	경성대학교	726	제조·IT	14	13	99.11
2	동명대학교	961.2	IT분야	20	20	02.02
3	동서대학교	462	디자인·IT	22	22	99.11
4	동아대학교	3,590	바이오, 환경·IT	50	48	99.02
5	동의대학교	1,023	기계, 장비제조	28	21	00.03
6	부경대학교	6,933	전기전자정보통신	95	73	99.03
7	부산가톨릭대학교	489	환경·IT·의료보건	15	15	00.12
8	부산대학교	4,659	기계, 장비	70	39	99.02
9	영산대학교	581	지식서비스분야	27	22	99.12
10	중소조선연구원	903.02	조선, 해양레저	16	13	00.09
11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093	신발·피혁, 부품소재	31	20	03.04
12	여성창업조육센터	993	화장품	18	13	00.01
13	한국해양대학교	504	조선해양	10	9	01.06

입주안내 : 예비·초기창업자 등 희망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 - 4411

FAX 888 - 4379

7-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추진목적

-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업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기(예비) 창업기업 발굴
- 예비 초기 창업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계속)
- 시행주체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내용 : 지역 초기(예비) 창업기업 발굴·지원으로 기업성장 견인
 - 지역생태계 거점 역할, 공공액셀러레이터 기능 고도화, 대기업 참여 개방형 혁신 사업 추진

지원내용

- 보육기업 입주공간 지원 : 15개사 입주 지원
- 부산대표 창업기업 인증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및 부산창업포털 등 공고 참고(사업별 일정 및 절차 상이)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TEL 888 - 4398
TEL 749 - 8931~4

FAX 888 - 4379
FAX 749 - 8919

7-4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운영

추진목적

-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13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이 아주 취약
-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으로 창업기업 발굴, 창업촉진,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가능한 전문가 육성 등 공공데이터 분야 선제적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 인프라 구축 : 해운대 센텀 6층, 497m²
- 지원대상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 지원방법 : 기업입주공간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및 창업우수사례 교육
- 사업내용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 공공데이터 관련 창업 기업 입주 보육(14개사)
 - 교육, 컨설팅, IR, 네트워킹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추진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사항

- 창업공간지원 ▷ 입주공간 14개 기업, 지원시설 (회의실, 휴게실 등) 활용 가능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TEL 888-4424 FAX 888-4379
(재)부산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창업단 TEL 921-6005

7-5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사업목적

- 민간(성공 벤처인, 선도벤처 등) 주도로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엔젤투자에 연계한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지원과 운영사의 보육 등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사업내용

- 사업위치 :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웹스 빌딩내)
- 사업규모 : 연면적 2,415㎡(1~4, 6층)
 - ※ 1층(창업카페 및 비즈니스센터), 2층(부산창업청 설립 추진단), 3~4층, 6층(입주공간)
- 사업기간 : 2016. 4월 ~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 주요사업
 - AC, VC 등 투자유관기관 및 (예비)기술창업기업 입주
 - 우수기술 창업기업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 투자자와 창업기업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TIPS 프로그램 제공 : R&D, 창업자금, 해외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창업공간 및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공간 제공
- 시제품 제작을 위한 팹랩장비 및 3D프린터 등 장비 지원
- 기업의 주기적 투자상담 및 투자연계 세미나 등 개최
- 펀드운용사, 액셀러레이터, 부산시 유관기관 등 전문가 자문
- 창업카페 및 회의실 제공, 창업보육 및 투자연계 서비스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재)부산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창업단

TEL 888 - 4424
TEL 921 - 6002

FAX 888 - 4379

VIII.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8.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8-1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목적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산업화 정책 추진 및 골목상권 브랜드화
-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및 제품 부가가치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 소상공인
- 시행시기 : 2023. 1. ~ 12.
-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원내용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사업목적: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플랫폼을 통한 정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 경영 역량 강화로 소상공인 생존율 및 성장률 제고
- 설립근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위 치: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620.08㎡(전용 402.18㎡)
- 사업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안내(콜센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 수행
- 개 소 일: 2022. 7. 8.

●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 사업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간구축 및 온라인진출 프로그램 운영
 - 스튜디오(3개소), 녹음실(1개소), 편집실(1개소, 30명), 교육장(1개소, 100명), 공유오피스(2개소)
- 위 치: 동구 범일동 KT범일타워 내(18층)
- 사업내용: 온라인 판로지원(연 700개사),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 운영 등

●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① 브랜드·지식서비스 품질 개선

- 사업목적: 소상공인 브랜드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사업내용
 - ① 5개 분야 11개 항목 브랜드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5개분야) 시각편집산업영상지식서비스
 - ② 소상공인 간 거래시스템(B2B)을 통한 상호 맞춤형 매칭(함바까보까 플랫폼 운영)

②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지역 소상공인 내수시장 확대 도모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업체당 500천원 이내)

●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① 소상공인 통합교육

- 사업목적: 온라인 시장 확대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전 대응력 강화
- 사업내용
 - ① 유망업종 희망아카데미 교육 ▶ 상권입지선정, 가맹사업, 노무·세무, 지식재산권 특강 등
 - ② 디지털마케팅 실무교육 ▶ 수준별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스토어 운영, SNS 마케팅 등
 - ③ 전문가(명사) 특강 ▶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② 소상공인 경영전략 컨설팅

- 사업목적: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성공창업 유도
- 사업내용: 1:1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진단을 통한 경영악화 원인분석 및 솔루션 제시

③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
- 사업내용: 상가임대차 포함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상거래 등 법률상담 무료 지원

●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 사업목적: 생계를 위해 휴식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장사하기 좋은 행복한 부산 구현
- 사업내용: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용 25만원 지원

② **사업정리도우미 운영**

- 사업목적: 안정적인 사업정리지원으로 폐업충격 최소화 및 재기지원
- 사업내용
 - ① 폐업(예정) 업체 사업정리컨설팅(사업정리전반, 전문분야, 일자리정보, 상권분석 등)
 - ② 철거소요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
 - ③ 재취업·재창업 연계 및 인센티브 지급

③ **영세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 사업내용: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납부액의 30%, 산재보험 납부액의 30~50% 지원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밀집상권의 조직화 유도 및 발전가능성 있는 신흥 골목상권의 발전계획 수립
- 사업내용
 - ①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운영, 신규 공동체 지원
 - 조직화 지원 : 전담매니저 골목상권 공동체 발굴 및 조직화 유도
 - 기본 패키지 : 역량강화, 인식개선 교육, 골목발전 컨설팅, 방역물품 지원 등
 - 성장 패키지 : 브랜드 발굴, 공동마케팅, 지역대학 협업, 리빙랩 운영 등
 - ② NEW 라이징골목 육성: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이 조화된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화
 - 지역특색 반영한 상권 발전 방안 등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전략별 선택형 맞춤형패키지(자금, 마케팅/홍보, 규제개혁, 역량강화, 시설개선) 지원
 - ③ 대학생 골목 마케터즈 지원
 - 추진내용 : 지역, 소상공인, 대학을 연계하여 골목단위의 마케팅 경영지원
 - 지원방식 : 골목마케터(대학)팀 구성 ⇒ 신규 골목(소상공인) 매칭 ⇒ 경영지원

● 업종특화 및 혁신소상공인 육성

①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 사업목적: 지역 유망업종 발굴 및 육성으로 업종별 동반성장 유도
- 사업내용
 - ① 유망업종 발굴 조사 및 지원업종 선정, 브랜드 리뉴얼 등
 - ② 브랜드 고도화, 멘토링, 크라우드 펀딩, 투자유지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②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 사업목적: 폐업을 높은 업종의 지역 소상공인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업종전문컨설팅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업종개선 솔루션 제작
- 사업내용: 소상공업체 마케팅 등을 포함한 경영관리 및 경영환경개선

③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 사업목적: 수제맥주업체 판로 지원 및 자체 브랜드 홍보로 부산의 新 산업군 육성
- 사업내용: 수제맥주 품평회, 팝업스토어, 수제맥주업체-기관 기업설명회 개최 등

④ 스타소상공인 육성 지원

-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선정하여 선도모델로 육성
- 사업내용: 서류심사 → 현장실사 → PT 발표 등을 통해 소상공인 10개소 선정
 - ① (1년차) 성장 패키지 지원: 대외홍보, 경영지원, 판로확대, 브랜드화, 자금지원 등
 - ② (2~3년차) 고도화 지원

● 소상공인 부담 완화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지원

- 사업목적: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기여
 - 제로페이: 소비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인식 결제금액 이체로 소상공인 수수료 0%대
- 사업내용: 제로페이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이벤트, 가맹점 모집 홍보 등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 폐업 등 어려움이 닥칠 때 생활안정,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
- 사업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장려금 지원 (월 1만원, 12회 지원)

(노란우산공제) 월 5~100만원까지 가입,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90% 대출, 납입기간·연령·지급시기 관계없이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 압류금지 등

● 공공배달앱 「동백통」 운영

- 사업목적: 독과점 체제의 민간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
- 사업내용: 전국 최초 식료품점, 전통 시장, 지역 기업과의 상생과 제품 쇼핑을 위한 통합 플랫폼 운영
- 주요특징
 - ① 가 맹 점: 가입비, 중개수수료, 홍보 비용이 없는 ZERO정책 지원
 - ② 소 비 자: 동백전 결제 시 총 10%(5%+5%) 캐시백 혜택 시행 등
- 본격운영: 시범 운영('21.10, 연제구) → 정식서비스 개시('22.1.19~)

●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동백전」 발행

- 발행목적: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발행개요
 - ① 발행규모: 1조 6천억원(예정)
 - ② 발행종류: IC카드(체크카드, 선불형 카드) + 모바일앱
 - ③ 인센티브: 원칙상 캐시백 5%(이벤트성 추가가능), 월 개인 충전 30만원
 - ④ 사 용 처: 동백전 등록 가맹점(15만개)

(사용처 제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준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카지노, 경마, 경륜, 체육진흥투표, 소싸움, 불법사행성게임) 프랜차이즈 직영점(단, 부산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는 모두 허용)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CATV홈쇼핑, 온라인 쇼핑물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각 사업별 공모 및 지원신청 ▷ 안내)수행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TEL 888 - 4781~7	FAX 888 - 4789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600 - 1771~7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 - 9376	노란우산공제

8-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원목적

-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온라인 판매 급증, 무점포 영업 등 신유통业态의 출현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전통시장(인정) 및 상점가로서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지원내용
 - ① 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목적 : 노후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 사업내용 : 시설물의 개·보수, 아케이드, 냉·난방시설 설치, 고객편의시설 등
 - 지원규모 : 56.52억원(26개 시장)
 - 지원조건 : 시설현대화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장 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장
 - ▷ 부담비율 : 시비 75%, 구비 15%, 상인 10%
 - (단,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등은 시비 80%, 구비 20%)
 - ② 경영현대화 지원
 - 사업목적 : 소비자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상인의식 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지원
 - 사업내용 :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상인워크숍, 전통시장 웹사이트 홍보 웹사이트 구축,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지원규모 : 2.2억원(전액 시비)
 - ③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원
 - 사업목적 :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 대상 소규모 환경 개선
 - 지원규모 : 8.5억원(20개시장)
 - 지원조건 : 상인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 ▷ 전기·소방 등 안전 관련 개선이 시급한 시장 최우선 지원,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

④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 사업목적 : 시장의 고유 특색을 특성화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쇼핑과 문화관광 연계 육성, 자생력(기초역량) 강화,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 : 41.2억원(11개 시장)
 - ▷ 부담비율 : 국비 60%, 지방비 40%

⑤ 배송서비스 지원

- 사업목적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력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방문 전화 배송주문 접수, 상품취합·배송, 고객관리 및 홍보 등
- 지원규모 : 6.9억원(18개 시장)
 - ▷ 부담비율 : 시비 60%, 구비 40~30%, 민간 10%

지원신청**● 신청기간**

- '23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2023. 2월경
- '24년 시설현대화사업 : 2023. 7월경
- '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 2023. 9월경
 -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신청·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자치구·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각 자치구·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TEL 888 - 4742

FAX 888 - 4789

8-3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추진목적

- 집적지 소공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세부사업 지원으로 우수사례 배출 및 차명 확산 등 대안적인 의류제조 소공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동구 범일동 일대 의류제조 소공인
- 사업기간 : 2023. 2월 ~ 2024. 1월
- 시행주체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비 : 33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
- 사업내용 : 소공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마케팅, 생산관리 등 세부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이론 및 실습교육 5개 과정 운영
- 시제품개발지원, 미디어마케팅지원사업, 전시참여지원사업 50개사 지원
- 청년일자리창출 리빙랩 2단계 운영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설명회 개최, 부산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 추진,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888 - 6766
TEL 631 - 7220

FAX 888 - 6739

IX. 유관기관 지원시책

부산지방국세청

»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I 창업단계 지원내용

1. 개요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2">과밀억제권역 내</th> <th colspan="2">과밀억제권역 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창업</td> <td>기본</td> <td>-</td> <td colspan="3">5년간 50%</td> </tr> <tr> <td>산성장*</td> <td>-</td> <td colspan="3">3년간 75% + 2년간 50%</td> </tr> <tr> <td rowspan="2">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td> <td>기본</td> <td colspan="4">5년간 50%</td> </tr> <tr> <td>산성장</td> <td colspan="4">3년간 75% + 2년간 50%</td> </tr> <tr> <td>청년·생계형 창업</td> <td colspan="2">5년간 50%</td> <td colspan="3">5년간 100%</td> </tr> <tr> <td>창업보육센터 사업자</td> <td colspan="5">5년간 50%</td> </tr> </tbody> </table> <p>* 산성장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고습학원 등(조특법85③)</p>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산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산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생계형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산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산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생계형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12.31 까지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58의3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후 4년(청년창업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58의3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금액 : 창업후 5년 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2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8,0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 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의 일정한 경우 25%) 추가 감면

2-1. 개요

-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86.5.12. 제정·시행되었으며
 -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86.12.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4.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 창업일, 확인받은 날 또는 해당되는 날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12.12.31. 이전에 창업·지정·확인된 경우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법 §6)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20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
 -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조특령 §5①)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 * 신성장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인쇄출판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조특령 §5의②)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기업

- ① '24.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거주자와 내국법인)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감면 배제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사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서면2팀-610, '05.4.29)

-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 가능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의함

-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4지1160, '14.10.20)

◆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통칙6-0...1)

* 감면대상 기업 중 201쪽의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으며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2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8,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가능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17.6.20. 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 • 평택시·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포천시·양주시 • 김포시·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테리만 해당)

2-3.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조특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함

* 자산인수비율의 계산방법(30% 이하 요건)

$$\frac{\text{인수·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text{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leq 30\%$$

- 인수·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건설중인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제외함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서면2팀-742, '05.5.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개인사업자로 창업: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2. 법인사업자로 창업: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의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 전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관련 해석사례

- **수도권안으로 이전하였다가 재이전시 감면적용(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2021.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2021.09.29.)**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 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설립 등(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2021.09.29.)**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2-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2-5.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 §6②·③ 및 조특령 §5④)

-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함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②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수입금액의 5%)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조특령 §5⑤)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요건(수입금액의 5%)을 충족하여야 함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일(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우수 평가기업을 말하며
 - 현재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및 같은 법 시행령 §18의3)



벤처기업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업연구소 또는 기업창업 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 §6④ 및 조특령 §5⑩)

- 세액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제품 등 아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함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2-7. 감면세액

◆ 감면기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 '12.12.31.이전 창업·지정의 경우 4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 '12.12.31.이전 창업·지정·확인인 경우 4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비적용됨(조특법 §6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비적용됨(조특법 §6④)

◆ 감면세액의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0\sim 100\%)$$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법인세과-4046, '08.12.17)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³⁾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³⁾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²⁾	그 외 ³⁾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¹⁾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

$$\text{감면소득}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times \frac{\text{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times 1/2$
 - 한도 :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인, 기타 업종 : 5인)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 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조특법 §6⑦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와 중복적용을 배제함(조특법 §127④ 단서)

적용사례

- (사례1)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 $\times 1/2$) = 총 75%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 $\times 1/2$) = 총 66.7% 감면
-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0) 8명 → ('21) 16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 $\times 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감면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31④, §32④)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함(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함(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함(조특법 §144)
 -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음(조특법 §132①)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조특법 §128)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1.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시 2%, 수도권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시 1%)를 세액공제 * 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4%를 세액공제
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 §10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신성장사업화 시설 12%(일반기업 3%, 중견기업 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6%(일반기업 6%, 중견기업8%)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 '21년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국가전략기술은 '21.7.1.투자분부터 ('20년,'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가능)
④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25①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형시설 절수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우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구 분	지 원 내 용
⑦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 직장어린이집은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⑧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시설, 내진보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1%,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⑩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6%(일반기업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⑪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5%,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당 1천만원 차감
⑫ 영상컨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비용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⑬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28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1.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이 '21.1.2.~'21.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한해 75% 적용
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기업(창업 후 3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법 모집기업 7년 중소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10%(경우에 따라 30%, 70%, 100%) 소득공제

※ '20.12.29. 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舊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①,④~⑪)가 폐지되었으나 2021년까지는 투자분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2-1. 개 요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등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2-2. 공제 대상

◆ 공제대상 사업자 및 업종

-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공제대상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조특법시행령 §29③)은 제외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유형·무형자산

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외의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 조특법 별표 1에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규정

②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자산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2022년 신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한 것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	어업용 선박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회계 S/W 등

◆ 공제금액(기본공제금액 및 추가공제금액)

-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일반기업 3%, 중견기업 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일반기업 6%, 중견기업 8%)
- 추가공제 금액 :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마다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3.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총공사 예정비
-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2-4. 공제세액의 추징(조특법§146)

- 투자완료일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세액 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2021.12.29.)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2021.11.29.)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2021.04.07.)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舊조특법5)

- 공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한 경우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 공제세액 : 해당 투자금액의 3%(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은 4%)

* (중견기업) 15년 신규상장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4%
수도권 밖 투자시 2%,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시 1%

3-1. 개 요

-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내수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15년 신규상장기업은 4%)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함

3-2. 감면대상

◆ 감면대상 기업

- 제1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 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됨

◆ 사업용자산(조특령 §4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아래의 자산을 말함
 - 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조특령 별표1의 건축물 등 제외)
 -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④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함(유통산업발전법 §2 12호). POS(Point of Sales system)시스템이라고도 함

◆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 정보보호 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하며(국가정보화기본법 §3 6호),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가 공제대상임

3-3.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4.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4-1. 개 요

-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한 직접 감면제도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임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 각종 시설투자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임

4-2. 감면대상

◆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중고품과 금융리스(조특칙 §3의2)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또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서 제외됨(조기통 5-0...3).

4-3. 공제시기

-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4.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약

구 분	관련규정	투자금액에 곱하는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1호	7%	3%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2호	7%	3%	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3호	10%	5%	3%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4호	10%	5% (10%*)	3% (1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5호	10%	5%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①6호	10%	5%	2% (*21년 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의4	6%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 §25의5	10%	7%	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10%	7%	3%

* 직장어린이집은 10%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1. 개요

1-1. 발생소득·비용 등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구분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업 종</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소기업</td> <td>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중기업</td> <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 한도 : 1억 원(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억 원에서 감소인원 1명당 5백만 원씩 차감) 	업 종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20%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15%
업 종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20%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3) max(①, 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년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3대 분야 260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구 분	지 원 내 용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18.12.31 일몰종료) - 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3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의 10%(일반 5%, 중견 7%) 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조특법 §18) (조특령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자로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 근무한 연구원 -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 감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 (조특법§8의4) (소법§85의2) (법법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는 사업소득에 한정)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환급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경우 해당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세액감면 •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7%(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이하 12% 과세표준 1,000억 초과 17%

1-2.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직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2018.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2015.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2018.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30%(중견 15%) * 20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일반기업 5%, 중견기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 × 20%(일반기업 5%, 중견기업 10%)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21~'22 사업연도 한시적 적용)수도권밖 기업의 청년 등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 <p style="text-align: right;">(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3년간)</th> <th colspan="2">중견(3년간)</th> <th colspan="2">일반기업(2년간)</th> </tr> <tr> <th>수도권</th> <th>수도권밖</th> <th>수도권</th> <th>수도권밖</th> <th>수도권</th> <th>수도권밖</th> </tr> </thead> <tbody> <tr> <td>청년등</td> <td>1,100</td> <td>1,200 (1,300)</td> <td>800</td> <td>800 (900)</td> <td>400</td> <td>400 (500)</td> </tr> <tr> <td>청년등 외</td> <td>700</td> <td>770</td> <td colspan="2">450</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1,300)	800	800 (900)	400	400 (500)	청년등 외	700	770	450		-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1,300)	800	800 (900)	400	400 (500)																						
청년등 외	700	770	450		-																							

구 분	지 원 내 용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 제외 • 중소기업이 2021.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백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 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세액공제

1-3. 중소기업 지방이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p>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p>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p>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조특령 §60㉔)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p>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요건 및 ('22.1.1이후 본사이전)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충족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조특령 §60㉔)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구 분	지 원 내 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사업 소득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1-4. 기타 조세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p>접대비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25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 3,6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p>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법인세법시행령 §19의2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가능 * 일반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p>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로 한정
<p>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96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1.1.~'22.12.31.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p>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소득세법 §128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1월~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는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p>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법인세법 §64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한 이내*에 분납가능 *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p>전통주 제조업체 세율경감 (주세법 §8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출고실적 500kℓ(증류주 250kℓ) 이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 주세율 50% 경감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감면대상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감면금액 : 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10%~30%, 중기업은 5~15%,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은 10%

2-1. 개 요

-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5년) 동안 감면(기간 감면)하는 것과 달리 사업(영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
- '92년 당시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연장 및 업종추가 등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48개 업종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 §7).
- 중소기업으로서 접근성이 높아 조세혜택을 받기 용이하지만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조특령 §6⑤)
 -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 22조)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함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조에-843, '04.12.21.)
-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집행기준 7-0-4).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증기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감면 적용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19.1.1 이후부터)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 6①)
23. 엔지니어링사업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2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정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같은 법 시행령 § 2)을 말함
 - *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24. 물류산업
 - * 육상·수상·항공 운수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조특령 § 5⑦)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조특령 § 54①)[자동차부분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음]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함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 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된 자동차 중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 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함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서이46012-10184, 2002. 01.31)

◆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추가 및 자동차 임대업 보완

- 지원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종전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1법령 해석소득-0767, 2021.09.29.)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2020.10.2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서면2020법인-2686, 2020.07.10.)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전 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기준2020법령해석 법인-0139, 2020.06.29.)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의 매매와 중개업(63999-1)’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2018.7.27. 최초로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2018.9.1.부터 시행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통계청장이 해당 업종을 최초로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기 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거목(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17 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서면2016법인-4979, 2016.12.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감면 적용(서면-2016-법인-4209, 2016.10.27)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주거용 건설업의 경우 감면 해당 여부(서면2팀-482, 2004.3.17.)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3. 감면율

◆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지식기반사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수도권내보다 수도권외의 지역, 중기업보다 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비해 제조업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다만, 지식기반사업은 감면가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조특법 §7① 본문),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조특법 §7① 단서).
 - 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경우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면, 지방에 있는 사업장(공장)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예외적 기업단위 감면방식).

본점 소재지	감면방식	감면율 적용
수도권 본점, 지방공장	기업단위 감면	전부 수도권 감면율 적용
지방본점, 수도권 공장	사업장단위 감면	공장만 수도권 감면율 적용

◆ 수도권 범위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2-4.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sim 3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감면적용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도래기한(현재 '22.12.31.)까지 감면 적용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임

◆ 감면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 * 위 산식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함(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립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함 (조특법 §127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121의2)
-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함(조특법 §144)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조특법 §128②,③)

◆ 감면세액의 신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 해석사례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대법원2020두-48062, 2020.12.10.)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분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부-1636, 2019.10.22)

○○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시공사로 '○○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서면2019소득-3328, 2019.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서면법규과-72, 2014.01.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 결손금의 통산 여부(법인-338, 2010.04.07)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감면대상 소득 여부(법인-1187, 2009.10.26.)

감면대상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폐업한 사업연도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서이46012-10540, 2003.3.18)

'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02.1.1~'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구분	주요 내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 15% - (요건합리화)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가능 * S/W개발 등 IT업종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 확보 등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경향 →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서 세제혜택 불가 - (적용시기) 22.1.1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 (적용기한연장) 2024.12.3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인정기간을 퇴직후 3년이상 15년 이내 취업 → 2년 이상으로 완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 공제('21~'22년 한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연장) 2024.12.31.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적용기한) 2022.12.3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지(job-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적용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3.12.3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기간(2년)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일자리 유지의 유인 마련 •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4.12.31.

3-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 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50%를 감면

- 1)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2.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 사유로 경력단절 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신설된 제도

◆ 적용대상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2년~15년 이내 종전 기업 또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

- 육아휴직 복귀자

- 해당기업에서 만 1년 이상 근로소득 있는 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후 복귀

◆ 적용제외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출자자(개인기업은 대표자)가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세액공제액

- 고용일부터 2년간(복직일부터 1년간) 인건비의 30% 세액공제(중견기업 15%)

3-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세액공제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한 인원수 × 1,1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일반기업 4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1~'22과세연도 한시적 100만원 상향조정
중소기업 1,200만원 → 1,3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 9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5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수도권내 지역증가 700만원
(수도권밖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3-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적용요건 및 적용제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적용제외

◆ 세액공제액

- 정규직 근로자 전환 1인당 1천만원 세액공제(중견기업 700만원)

3-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요건

- 고용유지 및 시간당 임금유지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단 한명의 인원 감소도 없어야 합니다(조특령 §27의3)
-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나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은 제외(조특령 §27의3①)

-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 조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의 임금 및 인원수는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수의 합에서 모두 제외

- ◆ 세액공제액

- 임금삭감액의 10% 및 전년 시간당 임금에 비해 금년 시간당 임금이 105% 이상 상승한 경우 임금보전액의 15% 세액공제

3-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개요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50% (청년·경력단절여성은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 ◆ 적용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30의4①).
-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합니다(조특법 §30의4④).

4.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96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96의3)

◆ 개요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기간

- '20.1.1. ~ '22.12.31.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임차소상공인)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전대인은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상기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1월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공제금액

-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은 50%,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 '20년 인하분 → '21.6.30까지) 임대료·보증금을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임대차 인하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diz.or.kr/cose/main.do)

◆ 공제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만 해당),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관련 예규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2021.06.17.)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 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2021.04.16.)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2021.03.18.)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후 임대료 인하여 합의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 202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31, 지특법 §57의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신설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실제 처분시까지 과세유예)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하여 적용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해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경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따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조특법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50% - 과세이연액 = 양도차익 × (취득가액 ÷ 양도가액)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세특례 (조특법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09.12.31.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7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12.12.31.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과세 표준 계산시 공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운영목적

-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

-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마련) 도입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무 △활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전자적·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 부지급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정액 지급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지급
- **(지급주기)** 3개월 단위 (최대 1년지원)

:

TEL 1350

2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운영목적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

지원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 계속 근로** 중인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
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보전)**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20만원 정액
- **(간접노무비)**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30만원 지원
- **(지급주기)** 3개월 단위

신청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

:

TEL 1350

3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목적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유급 휴업(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및 유급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
 -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월의 직전달)의 매출액·생산량이 ①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②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③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총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휴업을 하였거나, 연속해서 1개월간 휴직을 하였을 것
- * 소정근로시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휴업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2/3
 -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지원

지급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승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실시일 하루 전까지 1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제출
 - 계획의 변경 시 하루 전까지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TEL 1350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목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 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지킨 사업주
 - * 감원방지의무: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 육아휴직지원금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최고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최고 월 120만원)

:

TEL 1350

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 요건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고용노동부)
15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16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현장맞춤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 1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신고한 보수를 지원 한도로 함,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TEL 1350

I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7.1월부터 산업연수제 폐지)

I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신청

- 14일간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
- 인터넷 구인신청(팩스신청가능)

www.work.go.kr '기업서비스 로그인'

구인정보관리 ⇨ 구인신청 ⇨ 등록 ⇨ 인증



2. 외국인 구인신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담당자 신청

- 직접방문 (최초 직접방문, 이후 팩스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사업장등록증사본 등



3. 외국인근로자알선 및 고용허가서발급

- 사용자는 지역협력과 추천자 중 적격자 직접 선정
 - www.eps.go.kr '국내용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알선현황 조회 ⇨ 추천 외국인근로자 명단확인 및 선택
- 사용자가 추천외국인 구직자중 적격자 선정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및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계약체결 위탁도입(위탁도입비 사업주부담) (한국산업인력공단 051-330-184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대행(대행비사업주부담) (T.1666-5916)



5.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인도(신규 외국인력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인도
 - ※ 취업교육비 사업주부담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I 외국인력 도입가능 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I 외국인력 허용업종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 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I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건설업, 서비스, 어업, 농축산업 별도

※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로 판단

I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 자격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 사업(장) 해당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I 자진 귀국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우대방안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귀국 1개월이 지난 후에 재입국하여 귀국 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적용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

- ▷ 외고법 제25조제1항1호 및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변경 사실이 있어도 동일 업종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외국인근로자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대상 사업장

- ▷ 농축산업·어업·제조업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 재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하여 송출국에서 실시하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귀국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

※ 적용 대상자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자('10.1.1. 이후 귀국자에 한함)

※ 대상 사업장 : 합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최종 사업장

:	TEL 860 - 1929~30	FAX 719 - 4510
	TEL 861 - 9365	FAX 637 - 2066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3.1.1.~12.31. 기간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감원방지 의무) 기업의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 (기타 요건)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절차

- (방식: 사전공모형)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된 기업 대상
- (기간) 1회차는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 이후 2~4회차는 2개월 단위로 신청, 5회차는 2년 근속 후 신청

:

TEL 1350

8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신규)

사업목적

- 미래 대비 직무능력향상, 직무 전환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직 중인,
 -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상담 과정에 참여 가능한 100만원 추가 지원
 - 전문 컨설턴트의 경력진단을 통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의 심층 경력개발을 통한 경력 유지 서비스와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경력 전환 서비스 등을 상담

신청방법 및 운영기관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 TEL: 1350

연번	기관명(부산지역 서비스 가능 기관)	연락처
1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2	(주)에듀인잡컨설팅	051-636-6234
3	(주)이음길에일치알	02-6229-2233
4	인지어스평생교육원	02-2188-2010
5	주식회사제이비컴	1661-2140
6	(주)제이엠커리어	051-442-6002
7	(주)지에스씨넷	044-864-1490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스마트, 자동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 제조현장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시행시기 : 2023년 중 공고 예정(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비 : 미정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1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중간1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지원 100%

- ① 모집기간 : 2023년도 공고 참조
- ② 상기 3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③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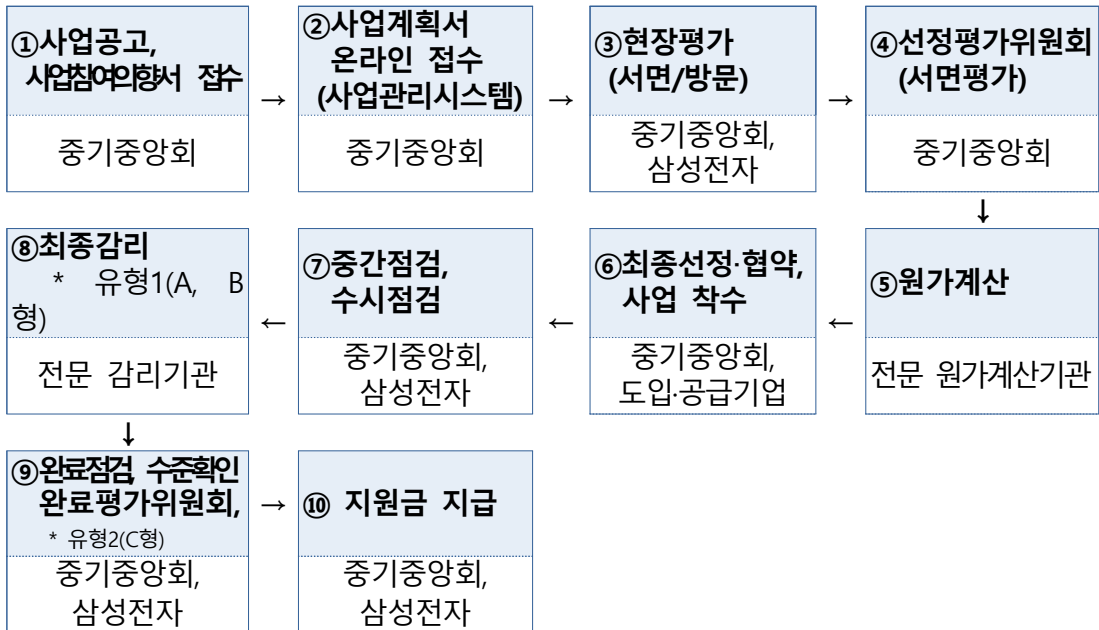
※ 상기내용은 2022년 사업추진 내용이며 2023년 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구축내용

- 유형 1-A(중간1 수준 이상), 1-B(기초 수준 이상)
 - 제조현장 혁신(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유형2-C(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 제조현장 혁신(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및 간이 자동화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절차



*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 삼성전자 소속 전문인력(멘토)

** 유형1(A·B형) : 정부 감리지침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완료감리 실시
유형2(C형) : 완료평가위원회 실시(서면 평가)

: TEL 861 - 9372 FAX 637 - 2066

2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추진목적

-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 수행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

협동조합 설립요건

종 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출자금
협동조합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지방조합)	50인 이상 *도·소매업종 70인 이상	4천만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일정지역(지방조합)	30인 이상 *도·소매업종 50인 이상	4천만원
사 업 협동조합 (다른업종)	2이상의 광역시·도	(시·도) 50인 이상 *도·소매업종 70인 이상	4천만원
	하나의 특별시·도 또는 일정지역	(시·도) 30인 이상 *도·소매업종 50인 이상	4천만원
사 업 협동조합 (동일업종)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 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4천만원

협동조합 설립절차

- 협동조합 설립 사전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발기인 모임
 - 설립취지서 작성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 정관(안) 작성
 - 기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창립총회 공고
 -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의결
 - 정관, 임원선임, 기타 안건 의결
-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창립총회 후 4주 이내)
- **주무관청 →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
 - 영위업종, 업무구역, 다른 조합과의 업종중복 등 검토
 -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 **설립인가**
 -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인가
 - 조합 설립인가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 **설립등기 및 신고**
 - 2주내에 발기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계인수
 - 사무인계인수 후 3주내 출자금 납입
 - 민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등기
 - 인가관청에 설립신고
- **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협동조합 설립효과

-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
-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 정부시책에의 의사 반영 및 수혜 용이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의 정보제공과 지도·교육·연수 사업을 통한 의식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등

:

TEL 861 - 9373 FAX 637 - 2066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추진목적

-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사업재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 사업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무등록 소상공인(인적용역제공자에 한함)

연 최대 5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공제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별도로 연 200만원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압류, 양도, 담보 금지로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 확보 가능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가입일로부터 2년)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사망·퇴임 : 가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시
- 노령(老齡)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부금 종류

- 월 5만원 이상 100만원(1만원 단위)

부산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월 2만원, 최대 1년)

:

TEL 861 - 9376

FAX 637 - 2066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추진목적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84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받은어음(가계수표) 부도 또는 자금화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시 용자 지원하는 제도임

공제기금 가입대상

-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
-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극히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가입 허용

공제기금 가입절차

-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 체결(방문, FAX 및 인터넷청약 가능)
 - ※ 인터넷청약 방법 : fund.kbiz.or.kr 접속 및 공동인증서 등록 후 가입 신청
- 가입 신청서류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월부금 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 : 10만원 ~ 300만원

월부금 만기

- 월부금 만기 : 3년, 4년, 5년 중 택 1
- 만기부금 이자 : 부금만기 후 매 3개월 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이상인 공제 계약자에게 부금 잔액에 일정액의 해지이자를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대출 자격 : 공제기금 가입 후 만 3개월(4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자

대출 종류

- 부도어음 대출
 - 대출대상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곤란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무이자(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대출기간 : 3년(6개월 거치후 30개월 분할상환)
 -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
- 어음·가계수표 대출
 - 대출대상 : 상거래에서 수취한 받은어음 및 당좌수표(가계수표 포함)의
현금화 지연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64% ~ 8.38%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7배 이내
- 단기운영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64% ~ 9.39%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3배 이내

대출이자 이차 보전(3호 대출시 : 2% 지원)

- 공제사업기금 이용업체가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부산광역시 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 대출업체의 금리부담 경감

:

TEL 861 - 9375

FAX 637 - 2066

추진목적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기업의 번거로운 고용절차, 어려운 취업교육, 고용·체류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함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및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네팔, 동티모르, 중국, 라오스
- 고용신청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숙소사 증빙 서류 및 사진 등(해당시)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 내국인 구인신청(노동부 워크넷) →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중소기업 인수인도

고용대행수수료

- 필수비용(3년) : 380,000원(입국 전 후 행정대행,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인원
1 ~ 10인	내국인 피보험자 수 +5명 단, 최대 9명	101 ~ 150인	20명 이하
		151 ~ 200인	25명 이하
11 ~ 50인	내국인 피보험자 수 단, 최대 15명	201 ~ 300인	30명 이하
		301인 이상	40명 이하
51 ~ 100인	17명 이하		

:

TEL 861 - 9372

FAX 637 - 2066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내용

목적	제도의 종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
 -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운영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 1억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 ① 해당업체간 제한경쟁 가능
 -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 이후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

TEL 861-9372

FAX 637-2066

7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추진목적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
- 인수거절 최소화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사업 및 생계기반 보장 성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징

- 중소기업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 10~25% 저렴)
-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가입 확대로 보험가입제한 최소화
- 체계적인 보상서비스의 정확성 및 신속성

가입대상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재산종합공제	○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영업배상책임공제	○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각종 비용손해

취급종목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 공장 및 일반 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재산종합공제	○ 화재와 같은 개별위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 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 영업상 발생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 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 잔존물 제거 비용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재산종합 공제	<p>제1부문 (재산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 화재 및 기타위험 ○ 담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에 따른 재산손해 - 특별약관(선택형) : 소규모공사, 추가재산 확장담보,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비용 특약 등 <p>제2부문 (기계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돌발사고로 기계에 입은 손해 ○ 담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인 사고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전기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등) -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추락, 이물질의 유입에 의한 고장 등 <p>제3부문 (기업휴지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 제1,2부문에 따르는 총이익 상실 ○ 담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부문에서 보상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휴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담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담보 <p>제4부문 (배상책임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 담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등
영업배상 책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영업행위 중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 ○ 소송대행 및 제반비용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소송업무대행과 제반 법률비용, 응급처치비용, 중재비용 등 보상

: TEL 861 - 9376 FAX 637 - 2066

8

기업보증공제

추진목적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보증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

보증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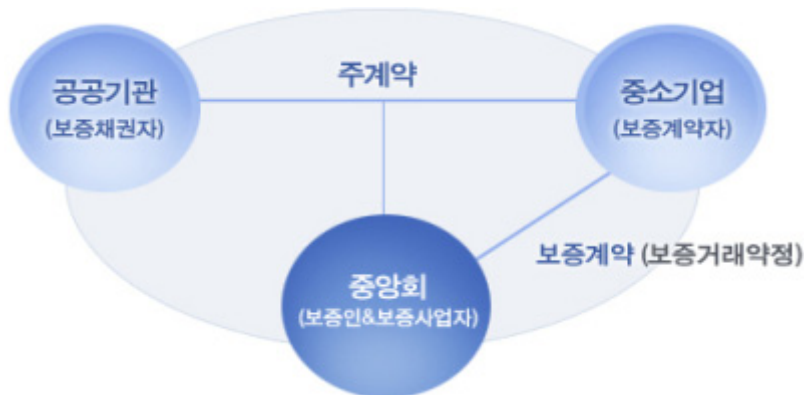
- 조달계약(물품, 용역)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선급금지급보증 취급

보증요율

- 계약자별 신용등급 및 기타 변수들을 기초로 보증요율 책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부금가입자 할인 등 할인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보증료를 대폭 인하(민간보증보험사의 기본보증요율의 45%~75% 수준)

이용방법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상담
 -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본부, 지부) 방문 · 약정 ▷ 청약(인터넷 또는 방문) ▷ 보증서 발급(전자보증 가능)



:

TEL 861 - 9376 FAX 637 - 2066

9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

추진목적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공제는 「생산물 배상책임(PL) 보험」과 같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임

특징

-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부산시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최대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
-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클레임처리의 편리성·신속성, 특히 해외 클레임처리의 안정성

가입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제품제조업체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 및 판매업체

공제료(보험료)의 산출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달리 결정

가입 절차



:

TEL 861 - 9376 FAX 637 - 2066

10 기업승계지원센터 운영

추진목적

-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명품 장수기업'으로 육성

지원전략



주요사업

- 기업승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기업승계 제도개선
- 기업승계 정보제공, 설명회, 교육, 상담 지원
- 명문 장수기업 확인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제도 발굴
-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한국기업승계기업협의회)
- 기업승계 1.2세대 소통 프로그램 운영

:

TEL 861 - 9373

FAX 637 - 2066

11 일사천리 사업

사업목적

- * 一瀉千里 사업이란 ? 우수 지역상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홈쇼핑 방송 추진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지원규모

- 입점수수료 지원 : 300백만원(중소기업중앙회 150백만원 + 부산시비 150백만원)
- * 선정업체는 판매직접비(카드관련, 전화주문 비용 등) 부담

입점업체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부산경제진흥원 접수	1월 중
서류심사 (1차)	. 홈앤쇼핑 심사	2월 중
MD상담회 (2차)	. 홈앤쇼핑(MD) 1차 선정업체 대상 상담	3~4월 중
선정위원회 (3차)	. 업체 심사 ⇒ 고득점순 2개 선정	3~4월 중
선정결과 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및 부산경제진흥원 선정 결과 통보	3~4월 중
방송판매	. 방송 입점 진행 . 11월말까지 방송 완료	4월~ 11월말

:

TEL 861 - 9375 FAX 637 - 20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사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 세부운용사항 및 참고·별표자료는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이하 용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요망

용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사업별 지원대상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계획 참고

용자범위

-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규정

용자한도

- 용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 예외사항(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은 용자공고 참조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계획 참조
 -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금리 우대(시설자금 대출기업, 고용증가, 탄소저감, 우대업종 등) 및 대출이자 환급(고용창출기업, 수출성공기업 등) 관련 세부내용은 용자공고 확인

용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용자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용자
 - * (취급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성장공유형) 용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용자절차

- 온라인 상담예약(전수접수, 자가진단 실시) → 정책우선도 평가(점수별 선별) → 상담 → 온라인 용자신청 → 기업심사 순으로 진행
 - * 2023년부터 용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온라인 용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신청 예약)**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접수,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온라인 용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용자계획 공고 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1) 중 소상공인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용자계획 공고 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부산지역본부 · 부산동부지부 관할지역 안내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 및 문의

:

TEL
TEL 051 - 630 - 7481
TEL 051 - 745 - 5925

1357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한도 (억원)	
시설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0.3%p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운전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별도 공고(3월) 참조	5년	120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10만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 운전자금 중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을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규모 : 2조 2,300억원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융자계획 공고 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위한 별도 자금 운용(청년전용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용자조건

□ 창업기반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 분	용자 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환대출)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계획 공고 별표 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구 분	용자 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

구 분	용자 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p5)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용자규모 : 용자(1,000억원), 이차보전(2,5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신청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③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④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①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②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용자계획 공고 참고 1) 중소기업
-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자조건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구 분	용자 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수출기업글로벌화 : 이차보전 방식으로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4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 사업성 및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용자규모 : 용자(1조 1,850억원), 이차보전(5,40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신청대상

- 혁신성장지원(협동화 포함),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용자계획 공고 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협동화사업 >

-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용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용자제한기업) ⑤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3월)
-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용자계획 공고 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용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용자조건

□ 혁신성장지원

○ 혁신성장지원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용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용자방식 참조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용자계획 공고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협동화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기 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용자계획 공고 참고)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

□ 스케일업금융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3월)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계획 공고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 제조현장스마트화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5

재도약지원자금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용자규모 : 4,030억원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 사업전환자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사업재편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채납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채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무역조정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산업경쟁력강화 >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용자계획 공고 참고15) 영위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사항 :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용자제한

□ 재창업자금

- 중소기업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용자계획 공고 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사항 :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별표1(용자제외 대상업종) 중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은 지원대상 포함

○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 재창업 >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용자계획 공고 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영위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용자조건

□ 사업전환

○ 사업전환(사업재편, 산업경영력강화 포함)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용자계획 공고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무역조정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기 타	용자계획 공고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6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규모 : 2,589억원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차입(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우대 사항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①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우대사항

- 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용자계획 공고 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예 소재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 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용자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구 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익업	731	수익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제외

□ 용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분야(용자계획 공고 참고 1),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그린분야(참고 2)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1 신용보증기금 주요업무

구 분	내 용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은행 등으로 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채무와 상거래와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산업기반신용보증 (인프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 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의 증진
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보증연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보증과 연계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인수
기업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경영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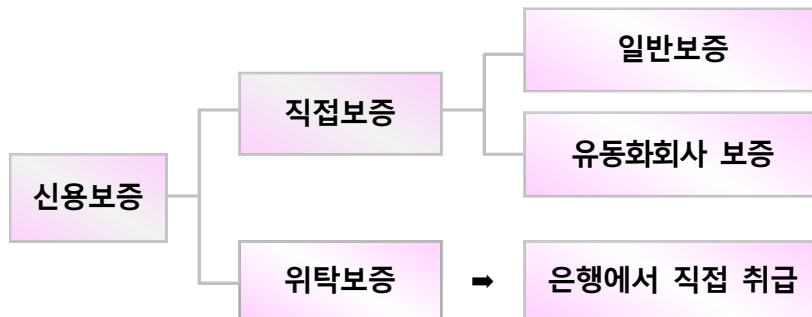
2 신용보증제도 개요

기본구조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보증운영 체계



보증이용에 따른 장점

- 담보문제 해소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비용절감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대외신용도 제고 : 우수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기업경영 부담 완화 :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신용보증의 종류

보증종류	내 용
대출보증	<p>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따른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Network Loan, 각종 기술개발자금, 할인어음 등
제2금융보증	<p>기업이 제2금융기관 대출 받는 데 따른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어음보증	<p>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p>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급보증의보증	<p>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p>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p>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p>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p>

신용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구 분	내 용
보증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p>※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p>
보증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p>※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p>

보증이용 절차

단계별	절 차
보증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를 통하여 보증 상담 신청 ■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 (방문상담 생략)
↓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	
보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약정 체결 (비대면 약정 가능) ■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결제 가능) ■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서)

신용보증신청

- 신보 홈페이지 내(신보 ON-Biz)를 통하여 보증 상담 신청

신용보증 상담

- 대표자(실제경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 *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를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상담 가능

자료수집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를 통해 전자제출 또는 고객 동의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행정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국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4대보험완납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납부내역증명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신보 ON-Biz)를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이용활용동의 (신보 ON-Biz)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금융거래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국세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세무회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기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능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신보 ON-Biz)를 통해 전자로 제출

신용조사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보증심사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보증결정 및 승인통지

- 보증심사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

약정체결과 보증서 발급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전자 보증서 발급
- 보증 종류 등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직접 신용보증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

3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창업단계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예비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10억(운전+시설)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7%p 차감
	신생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10~20억(운전)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4%p 차감
	창업초기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창업성장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5~7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차감
	유망청년창업 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0~100%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청년희망드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100%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신중년행복드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49세 이상 ■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3%p 차감
금융회사 특별출연·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뉴딜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보증비율 3년간 100% -보증료 0.2%p 차감 ■ 은행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0.5%p 지원

성장단계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5%p 차감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2%p 차감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수출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3%p 차감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고용창출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지식재산(IP)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SMART 융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설비 도입, 융합제품 생산기업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 구축완료기업, 수준확인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95% 보증료 0.2~0.6%p 차감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 보증료 0.2%~0.4%p 차감

성숙단계 (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동화회사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성장 유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산 편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200억원 - 중소기업외 350억원
프런티어스타기업 라이징스타기업 신보스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료 0.2~0.3%p 차감 신보스타 0.5% 고정보증료 상시 경영자문
고용의 질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일자리 기업(GWP) - 최고일자리 기업(B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90% 보증료 GWP 0.4%p 차감 보증료 BWP 0.5%p 차감

재도약단계 (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여신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기존 보증 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영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원 기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료 할인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0% 할인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여신 10억 미만인 일시적 경영위aggi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증 전액 만기 연장 보증료 할인 신규보증 추가 지원 경영컨설팅

재도전단계 (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구상채무 보유한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중인 기업 파산 면책 등 법적 변제이무 종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80%~100%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 자금을 신청한 다중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한도 30억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고정보증료 1.0%

4

신용보험제도

매출채권보험제도 기본개념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유
관
기
관

보험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대상) ▶ 업 종 : 제한 없음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 매 출 액 : 제한 없음 ▶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보험, 창업보험(7년 이내 창업)은 영업실적 요건 없음 - 일석e조보험, 스타트업보험은 2년 이상
구매기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현금거래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 제외
보험대상 매출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보험상품 및 운용방식

- 원칙적으로 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이 보험대상 (하나보험 제외)

상 품		운 용 방 식
다 사 랑	표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와의 거래규모 일정 수준 이상인 구매기업 대상(5개 이상) ■ 구매기업별 결제기일과 보험금액을 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을 기초로 계약자에게 일부 선택권 부여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희망 구매기업을 모두 선택
	소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당기매출액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 계약자와의 거래규모 일정 수준 이상인 구매기업 대상(3개 이상) ■ 계약자 및 구매기업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용
한 사 랑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개 구매기업의 결제기일과 보험금액을 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 구매기업은 신용등급이 신보가 정한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정
	간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보험평가시스템을 통해 가입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인 보험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보험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간편보험, 다이렉트보험, 창업보험)
	창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7년 이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구매기업의 가입 가능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보험료를 우대하는 상품
	소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당기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 계약자 및 구매기업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용
B2B Plu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상의 보험으로, 판매위험 보장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
하이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중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금액, 구매기업, 평균결제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최대 3회 부여된 상품
일석e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에 대한 보험보장과 함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하나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과 이미 발생한 거래를 건별로 운용하는 보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보험, 창업성공패키지보험, 전자방식보험, 협약보험, 환급형보험, 옵션형보험,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험

보험가입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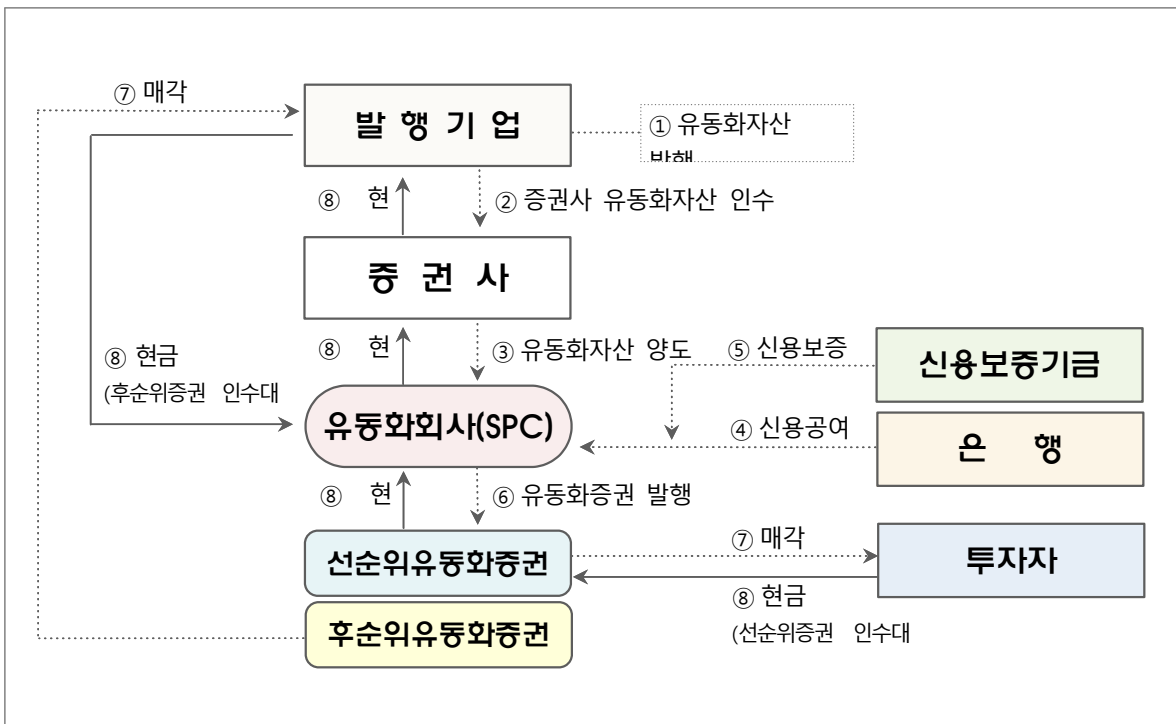
- 보험가입한도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고 100억원
 - 구매자별 보험가입한도 : 구매자의 신용도, 거래규모, 업종 등 고려하여 결정
- 보험료
 - 보험료율은 보험가입대상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연율 0.1%~5.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 보험가입매출채권은 보험대상매출채권에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 보험기간
 - 다사랑보험 / 한사랑보험 / B2B Plus+ / 하이옵션형 / 일석e조보험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고 발생
 -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발생
 -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연장결제기일(외상매출금의 경우 정상 결제기일에서 2개월 합산) 이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발생(다사랑·한사랑보험 기준)
- 보상범위: 다음 중 적은 금액
 - 보험금 지급대상 구매자의 보험금액
 - 실제 손해 금액에서 보상률(70~80%)을 곱한 금액

유동화회사보증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
 -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하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을 발행한 개별기업이 매입



이용절차

- 신청마감 후 자금수령(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 약 1.5개월 소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대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편입제한 기업

채무불이행	■ 보증금지, 보증제한,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감사의견 제한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발행금리

중소·중견기업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대기업	■ 신용등급별 개별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담당조직

구 분	담당조직	전화번호
중소기업	■ 영업점	■ 1588-6565
중견·대기업	■ 유동화보증센터	■ 02-2014-0221~7

보증연계투자 개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지원대상

-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지원제한대상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경영정상화 진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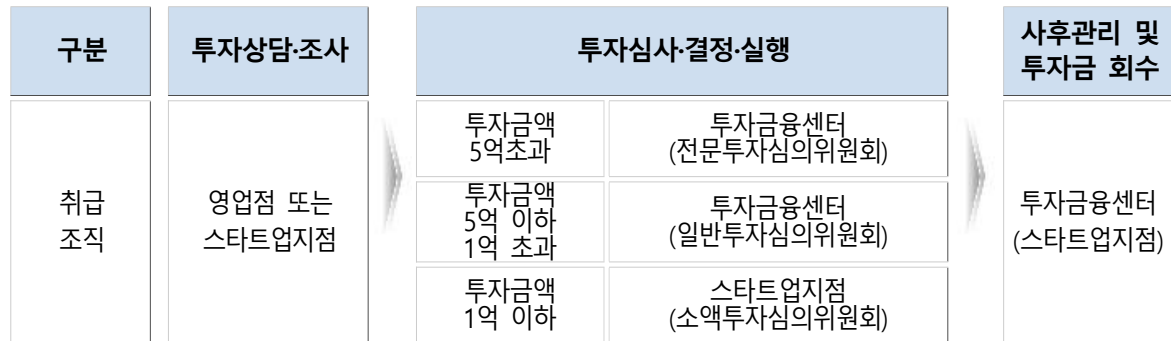
지원내용

- 투자한도
 -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의 2배 범위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인수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 IPO 가능성 및 투자기업의 업력 등에 따라 투자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
 - * 단,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 후 17년까지 이내

기대효과

벤처기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 가능
재무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직접투자로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후속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 전문기관인 신보의 투자로, 대외신인도 상승 및 후속 투자 유인 효과
경영권 간섭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취득 한도 설정(20%) 등으로 경영권 간섭 최소화
컨설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이후 컨설팅 수수료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컨설팅부서와 협업)

취급절차



: TEL 051 - 678 - 6012 FAX 0505 - 071 - 808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 기술보증

사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드리므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원대상 제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주권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상위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제외)과 주권상장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운용 가능)

※ 우선 지원대상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벤처기업
- INNO-BIZ
- 기술인증획득기업
- 기술관련 수상기업 등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다음 산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기술집약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혁신성장산업, 소재부품 장비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기후환경산업 등

기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의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회사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 포함)과 농·수협의 수입 신용장발행을 대상채무로 하는 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등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이 아닌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방법 및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승인시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스마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면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 제출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를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양식은 기보 디지털지점(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2

부산광역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성장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지역주력산업 세부분류

분 야	유망품목
첨단융합기계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제조 물류 자동화 시스템(AGV, AMR등) ② 지능형 생산공정 자동화 기계 ③ 스마트제조 로봇시스템(협동로봇, 용접 등) ④ 커넥티드 ICT 융합 기계부품 ⑤ 다기능 하이테크 융복합 소재 ⑥ AI 기반 스마트제조공정 분석 기술 ⑦ 미래수송 ICT 지능형 융합 부품 ⑧ ICT 융합 스마트제조 로봇시스템
라이프케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첨단의료 서비스 ② 라이프로그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③ 진단 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기술 ④ 치의학 제품 및 서비스 ⑤ 비대면 의료서비스 ⑥ 해양유래 기능성 식품 및 항노화 제품 ⑦ 건강취약계층 재활 및 보조기기
친환경미래에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부품 ②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부품 ③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 기술 ④ 친환경 고효율 경량 소재 ⑤ 지능형 발전 및 송배전 시스템 ⑥ 친환경 에너지 파워 반도체 모듈 ⑦ 에너지 기기 고장진단 기술 ⑧ 원전해체 및 재염기술
지능정보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블록체인 기술기반 보안 플랫폼 ② 센서(무인이동체 등) 기반 스마트 도시 실증 서비스 ③ 상호작용 체감형 AR/VR 콘텐츠 ④ 해양·항만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서비스 ⑤ 도시 문제 해결형 디지털 트윈 ⑥ 지능형 유통·물류 서비스 플랫폼 ⑦ 초연결 기반 융합지능 서비스 기술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0.1%p 감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3 부산광역시 정책자금 One-Stop보증

기술혁신기업자금 / 지식문화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소재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One-Stop 정책자금 지원으로 기업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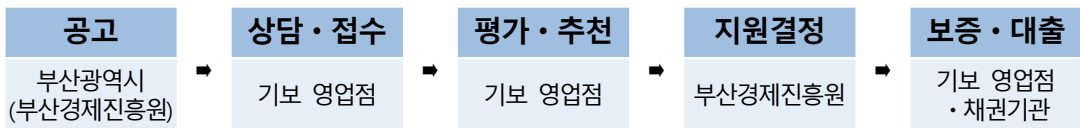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 안전인프라보증 지원 대상 기업
-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자금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2%p 감면
- 우대기간 : 보증지원 후 3년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4

부산광역시 혁신성장기술자금 협약보증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0억
- 지원한도 : 이차보전 연계 지원 시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접수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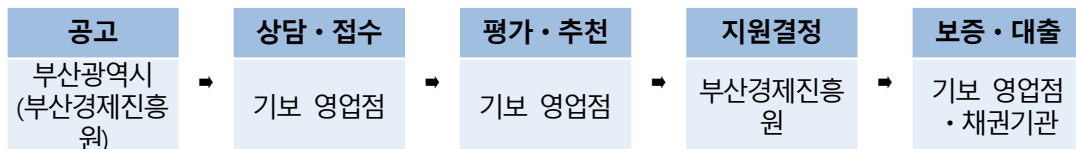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자금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2%p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100% 전액보증
- 우대기간 : 보증지원 후 3년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5 기술창업보증(맞춤형창업기업보증 및 청년창업기업보증)

1 맞춤형창업기업보증

사업목적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분야	개념
지식문화창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 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 뿌리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 연계 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3 ~ 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율)
- 보증비율 우대 : 90 ~ 100%

2 청년창업기업보증

사업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과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대상

-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3%p 감면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율)
- 보증비율 우대 : 95 ~ 100%
- 청년창업기업 전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6 4차산업혁명 분야 보증

사업목적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

지원대상

분 야	내 용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예정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신청기업 및 기선정기업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확인기업,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별도 판별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감면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율 0.3~0.5%p 감면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가능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감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7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사업목적

- 고용 없는 성장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 지원

지원대상

- '굿잡보증'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요건을 설정하여 지원

분 야	지원대상
고용창출 (Jumping Job)	▶ 1년 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 (Sharing Job)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 (지방고용)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 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고용유지 (Best Job)	▶ (상생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내용

구 분	고용창출	고용배려	고용유지
운전자금 산정하고 우대	150%	120%	120%
보증료를 우대 / 보증비를 우대	0.4%p 감면 / 95%		0.3%p 감면 / 90%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8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사업화 견인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콘텐츠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출판에 한정
- 시행시기 : '09. 9. ~ (연중계속)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운용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콘텐츠 평가등급별 차등 적용하되, 감면요율* 적용
* 0.2%p감면, 성과보증료 약정 시 0.1%p추가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요건 : 보증신청금액의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확정요건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지원대상 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요건심사	콘텐츠평가·심사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 기보(상담) · 콘텐츠진흥원(추천위원회)	· 기보(평가·보증심사) · 은행(여신심사)	· 기보(보증서 발급) · 은행(대출실행)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9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사업목적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우수하고, 산업·기술간 융합 확산을 통해 제조업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대상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 영위기업으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운용
 - * 총제작비 규모 및 콘텐츠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단, 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대상자금
 - *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프로젝트 전주기의 제작자금을 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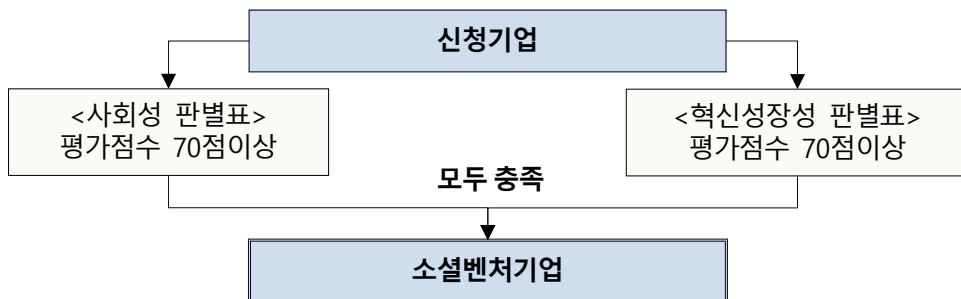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0항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 보증 심사시 소셜벤처 판별* 검토 후 지원

* 판별만 신청할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술평가 :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 적용
-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5%p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100%
- 산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 생략
- 심사기준완화(신용도 유의기업, 재무등급 적용 완화)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11 신재생에너지보증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구분	세부 지원대상	대상채무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기업	시설자금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내용

- 추가 한도 지원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기존 운전자금 한도금액에 가산해 추가 한도 지원

※ 탄소가치평가 자금지원 예시(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500백만원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200백만원 탄소가치 (탄소가치평가금액)	=	700백만원 ↑200백만원 (지원 가능금액)
----------------------------	---	---------------------------	---	-----------------------------

- 보증료율 우대 : (발전기업) 0.5% 고정보증료율, (산업기업) 0.2%p 감면 적용
- 보증비율 우대 : 95~100% 적용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연계기술 개발)금융 지원

구 분	개발단계	사업화단계
대상자금	연구개발자금, 개발완성자금	사업화 및 양산자금
평가방법	개발과제의 사업화타당성 및 심층적인 경제성 분석	개발완료과제의 기술사업타당성 분석
적용모형	R&D평가모형	KRTS모형

개발단계

- 지원대상 : 개발단계로 동 기술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또는 신청 사실이 없는 기술
- 대상자금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 개발 종료되는 과제로, 신청기술 관련 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연구개발자금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 완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개발완성자금
- 선정기준 : R&D평가표에 의한 평가등급 "B" 이상이고, "경제성이 인정(NPV>0)"되는 과제
- 평가비용 : 80만원. 다만, 보증신청금액 3억원 미만으로 경제성 분석이 생략되는 경우 20만원

사업화단계

-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D 체크리스트(사업화단계)를 충족하는 기업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선정기준 : 기술평가등급이 "B" 이상
- 평가비용 : 20만원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3%p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개발단계 95%(창업 후 7년 이내 100%), 사업화단계 85%(정부출연 R&D과제 95%)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사업개요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식재산(IP) 기반한 사업화 지원
- 지원금액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
- 기술평가료
 - 작성되는 기술가치평가서 종류별로 1백만원~5백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식재산(IP)
 - 기술 성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아래의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 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지식재산(IP)을 개발 완료한 후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이 "B" 이상

지원내용

- 보증료율 우대 : 0.3 ~ 0.5%p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90 ~ 95% 적용
-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료 지원
- 정부부처 평가료 지원사업(특허청 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과기부 SW기술가치평가사업)의 경우 정부부처의 평가료 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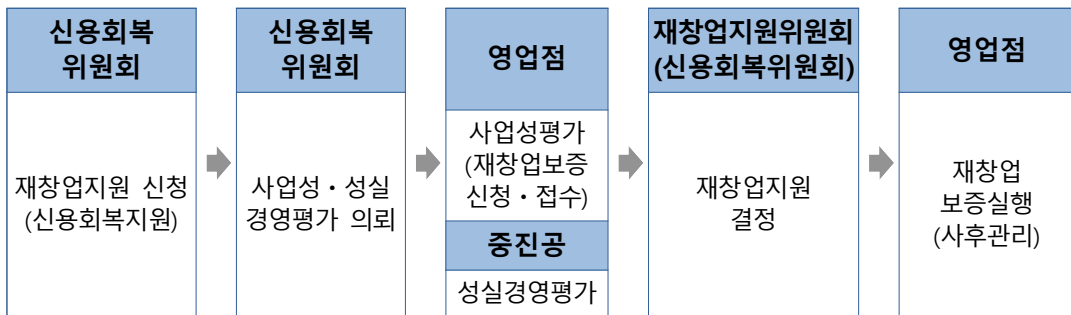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기보가 직접 지원하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으로 구분

구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시행시기	'12.4월	'10.10월
채무자분류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기보채무자
지원대상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개인·법인	1) 실패한 기업 2) 재도전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
주요내용	원금감면(최대 75%) + 신규자금	원금감면(최대 75%) + 신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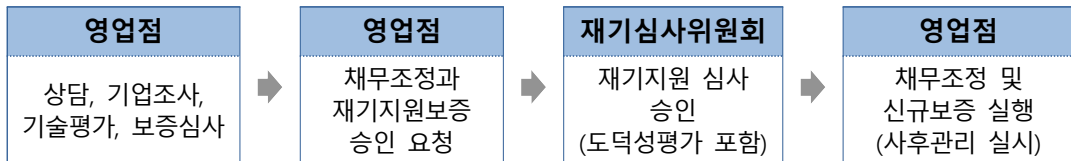
* 실패 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포함)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신청방법 및 절차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15 벤처투자연계보증

사업목적

-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 제외)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기보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종류
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지원대상 투자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기타사항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영 및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 후속투자 유치시 당초 보증금액의 20% 상환,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지원내용

지원항목	내용
보증료율	·1% 고정보증료율 적용(지방소재기업 최근투자유치기업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0.8% 적용)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엔젤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 상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 후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 (투자 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
- (3천만원 이상 투자)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인 기업**
 - * 보통주,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및 현물투자는 제외
 -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사업기간 : 연중수시

지원내용

- 특례지원 : ①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②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료율 우대 : 0.3%p 감면, 투자우선부보증으로 취급시 1% 고정보증료율 적용
- 보증비율 우대 : 100%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민간 VC(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 레버리지 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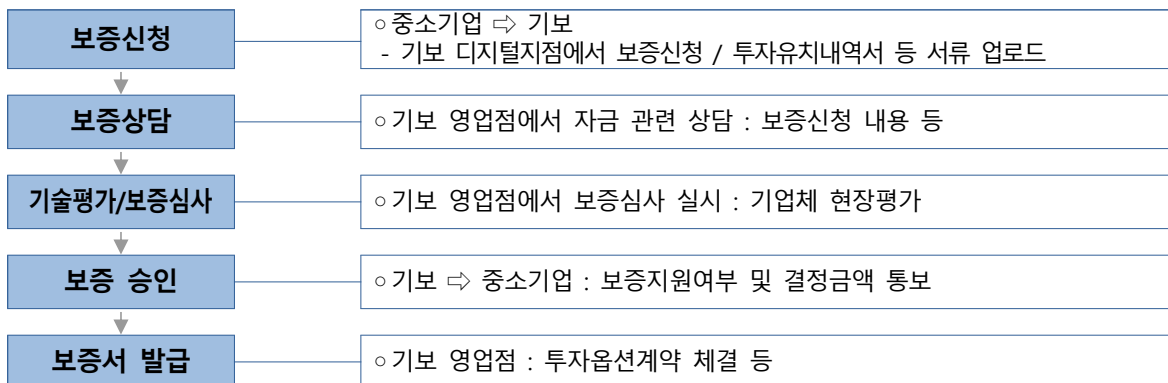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대상
 -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 기보VC파트너스(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투자 전문가 그룹)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 * 「벤처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 중 신규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를 말함(단, 현물투자 제외)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만 인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②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 ③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참여기업(협약기간 이내, 보증신청일 기준)
- 사업기간 : 연중수시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의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
- 보증료율 우대 : 1% 고정보증료율 적용
- 보증비율 우대 : 100%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R&D·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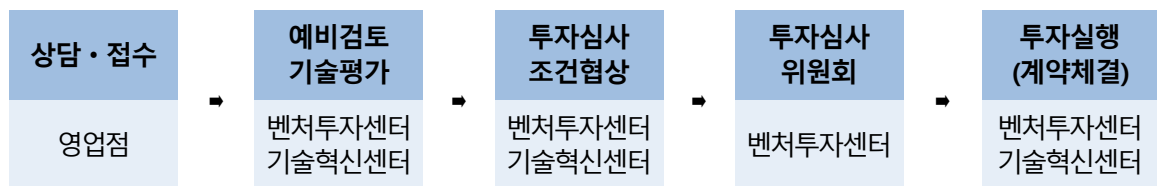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증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과 투자옵션부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기업은 업력 배제
 - 투자심사기준일 현재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보증기업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18등급 이상
- 지원규모 : 2023년 500억원 (매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지원내용

- 투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19 벤처기업 확인평가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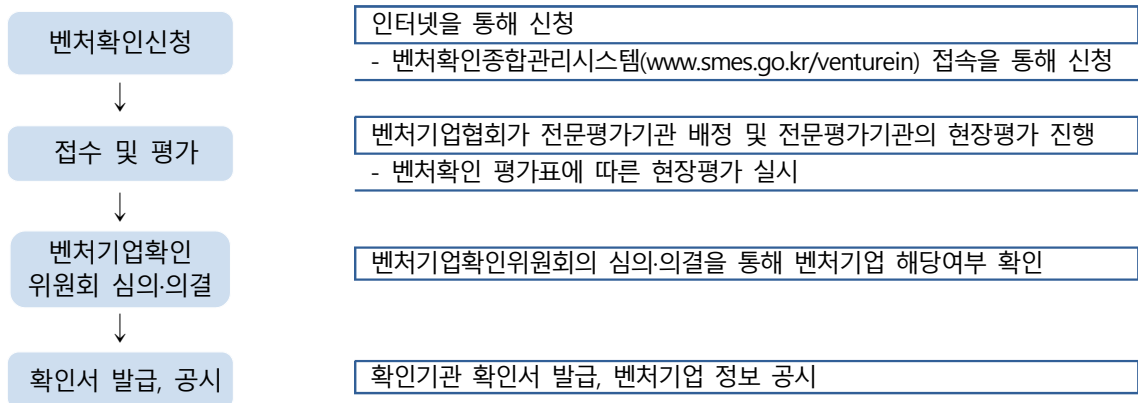
- 기보는 '21.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에 의거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벤처유형 및 벤처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혁신성장유형	· 기술혁신성 및 사업성장성 평가 우수(예비벤처유형 포함)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중 1개 보유 · 신청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장성 평가 우수
벤처투자유형	·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기보는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 포함)과 연구개발유형(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기업) 평가

평가절차



평가료

확인평가료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 계
혁신성장유형 (이노비즈 연계, 예비벤처확인 연계*)	45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55만원 (40만원, 30만원)
연구개발유형 · 예비벤처유형	35만원	10만원	45만원

* 이노비즈 인증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 부가세 별도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20 이노비즈 인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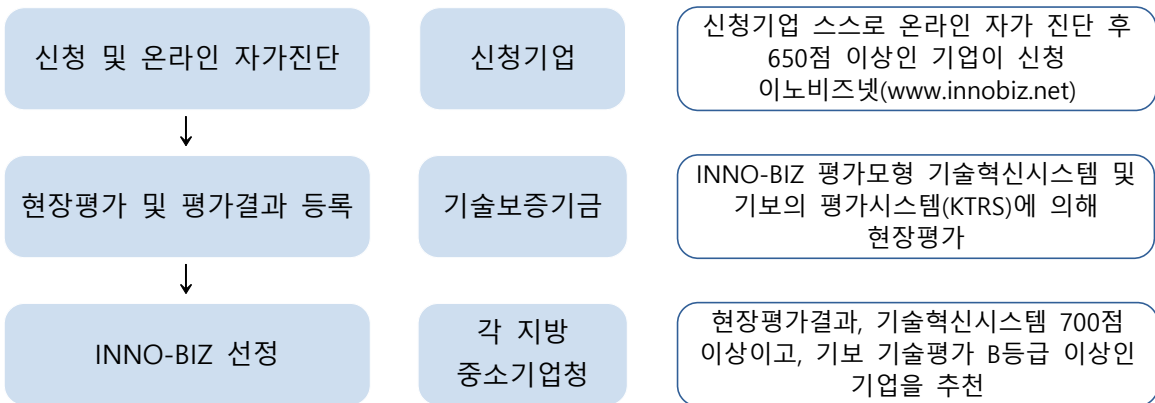
사업개요

-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숙박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사 후 선정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보의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평가절차



평가료

- 신규 평가료 : 70만원(부가세 별도),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료 20만원 감면
 - 벤처(혁신성장유형) 인증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INNO-BIZ 평가 신청시 수수료 감면*
- * (감면금액) 신규 20만원, 연장 10만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21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중개자로서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간 기술거래 알선 및 협상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하는 제도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리지 (Smart Tech-Bridge)

- 스마트 테크브리지(<https://tb.kibo.or.kr>) :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40만개의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을 자동매칭하고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전용 플랫폼

기술이전 중개절차 및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 : 전국 모든 영업점 또는 인터넷(테크브리지)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형 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기간,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기보 기술혁신센터)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기보 기술혁신센터)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혁신센터 또는 인터넷(스마트 테크브리지)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기금이 중소기업 기술을 신탁받고, 신탁받은 기술 Pool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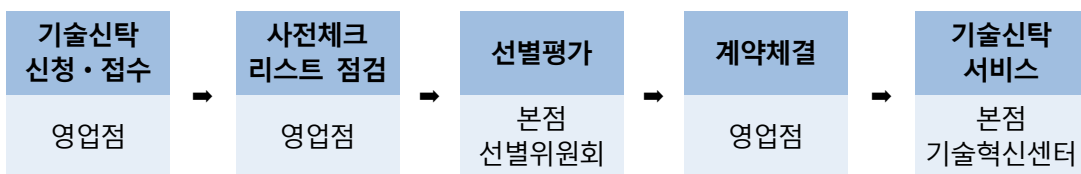
사업개요

- 중소기업은 보유기술을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신탁기술을 관리
 - * 기보는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중견·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기보에 기술을 신탁함으로써 기술 탈취 없이 기금의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이전
- 기존 ①공공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에 ②중소기업 기술이전을 병행하여 Two-track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지원내용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 대상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 단,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지원
- 신탁기술 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보증비율 100%)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tb.kibo.or.kr>) 사이트 내 '기술신탁 상시공모'에서 신청
- (오프라인)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23 지식재산공제

사업목적

-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국내·국제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경영 안정 도모

사업개요

- 부금 : 가입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부금월액, 납부기간은 선택 가능
 - * 부금은 기업당 최대 3건까지 복수 가입 가능, 부금이자율 3.25%(‘23.1.1 기준)
(단위: 개월, 백만원)

부금월액	납부기간	부금총액	부금월액	납부기간	부금총액
30만원	50	15	300만원	30	90
	70	21		40	120
50만원	40	20		500만원	30
	60	30	40		200
80만원	50	40	1,000만원	30	300
100만원	50	50		50	500
200만원	30	60			
	40	80			
	50	100			

- 대출 : 최대 5배까지 지원 가능한 지식재산비용대출 및 담보대출 성격의 경영자금대출로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대출금리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 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에 수반되는 제반의 지식재산 비용을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75억원)까지 대출	2.75%(기존 3.25%)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이내에서 대출	3.75%(기존 4.75%)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이자율 한시 인하 적용(~'23.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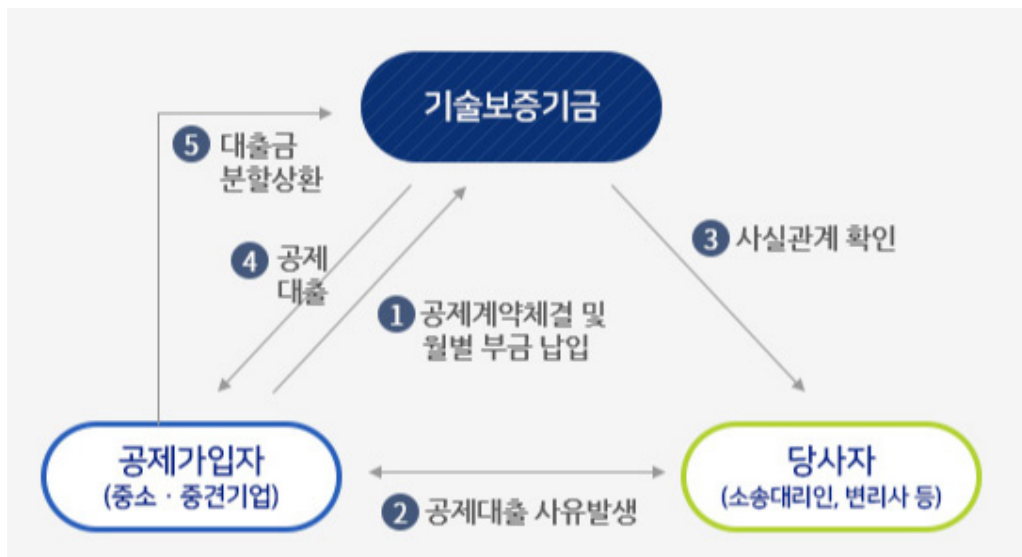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 신규(증액) 보증료율 0.2% 추가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 수수료 50% 할인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세무, 회계 등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시 신청료(관납료) 지원
- 한국기업데이터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 할인
- 스마트빌(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할인 바우처 제공
- 벤처 확인, 이노비즈 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에 대한 평가료 지원
- 특허청 지원사업 중 일부 가점우대(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 공제부금 가입,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내외 출원, 소송 등) 발생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심사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경영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지원대상

-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쏠 분야 기업

지원내용

- 추가 한도 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

※ 탄소가치평가 자금지원 예시(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500백만원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200백만원 탄소가치 (탄소가치평가금액)	=	700백만원 ↑200백만원 (지원 가능금액)
----------------------------	---	---------------------------	---	-----------------------------

- 보증료율 우대 : 0.2 ~ 0.4%p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90 ~ 95% 적용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사업목적

-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기술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 애로 해소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대금 미결제 시에도 판매기업에 최종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부도 우려없이 낮은 비용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가능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대상
 - (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 * 중소기업,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전자세금계산서 한정)
- 시행시기 : '22. 6. ~ (연중계속)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의 1/2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로 운영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한도(10억원, 20억원, 30억원) 부여
- 할인율 :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 기준할인율은 연 2.5% ~ 6.5%(변동가능, 팩토링 플랫폼에 공시) 사이에서 결정되며, 실제 매출채권 매입 시마다 변동 가능
- 잠정조치 :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인율 연 0.3%p 감면 적용
 - * 잠정조치는 '23.6.3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연장 여부 등은 팩토링 플랫폼 또는 문의처에 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팩토링 플랫폼에서 팩토링 거래기업 유형(판매 또는 구매기업)에 맞게 온라인 신청 후 영업점을 통해 상담 진행
- 지원절차 : 등록심사 및 팩토링 약정은 영업점에서 진행, 양도계약 이후는 본점에서 진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https://www.kibo.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

1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

사업목적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 전략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출한도 확대, 이자부담 경감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지원규모 : 1조 7,679억원* ()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1조 100억원으로 예정대로 신규 지원종료(2020.3.9.~2022.9.30.). 다만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을 계속

지원대상 :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연장가능)

-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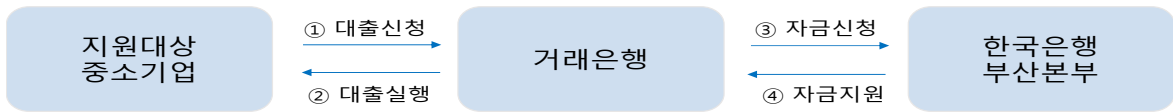
지원제도	주요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대출액 기준)	비고
전략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20억원 이내 (40억원)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에 한함
특별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10억원 이내 (20억원)	한시적으로 운용중 (기간 : 2021. 9. 1. ~ 2023. 8. 31.)
일반	벤처·혁신기업, 전입기업, 수출기업, 녹색기업 등	7.5억원 이내 (15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위기업	5억원 이내 (10억원)	한시적으로 운용중* (기간 : 2020. 3. 9. ~ 2022. 9. 30.)

* 기 대출 건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23.8.31) 까지 지원

지원금리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리(2022. 12월 기준 1.75%)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대출금리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 받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지원절차



【붙임】 부문별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부 문 별	대 상 업 체 ^{1) 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해당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혁신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녹색기업	-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KSIC 10~33) 및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KSIC 36~38)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육상 여객 운송업(KSIC 492),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 주차장 운영업(KSIC 52915)은 제외)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C26429)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C27211)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C27216)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C28119) ○ 축전기 제조업(C2820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2914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 ○ 도로화물 운송업(KSIC 493) ○ 해상운송업(KSIC 501) (단,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은 제외) ○ 화물취급업(KSIC 5294) ○ 정보통신업(KSIC 58~6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70~73) (단,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KSIC 711, 712), 회사본부(KSIC 7151), 수 의업(KSIC 731)은 제외) - 「부산테크노파크」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 <별첨>의 「부산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 기업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부 문 별	대 상 업 체 ^{1) 2)}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소재·부품 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 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명절 및 재해자금 등	- 명절,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기타 지원기업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 거래업체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부산광역시로부터 「7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명예선도기업 포함) -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단체는 제외)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⁴⁾ o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단,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해상운송업(KSIC 501~50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은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음식·숙박업(KSIC 55~56) o 도소매업(KSIC 45~47) o 여행업(KSIC 752) o 운수업(KSIC 49 , 51~52) (단,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KSIC493, 5294)은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여가업(KSIC 90~91)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⁴⁾ o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단,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해상운송업(KSIC 501~50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은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음식·숙박업(KSIC 55~56) o 도소매업(KSIC 45~47) o 여행업(KSIC 752) o 운수업(KSIC 49 , 51~52) (단,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KSIC493, 5294)은 부산지역 기업 제외) o 여가업(KSIC 90~91)									
코로나19 피해기업	- 서비스업(일부 업종 제외), 농림어업 영위 지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업종 코드</th> <th style="width: 70%;">지원 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농업 및 어업</td> <td>01~03</td> <td>-</td> </tr> <tr> <td>서비스업</td> <td>36~39, 45~99</td> <td>· 유흥주점<56211, 56212> · 정보통신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1~682> ·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1~712>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 무도장 운영업<91291> · 국제 및 외국기관<99></td> </tr> </tbody> </table>	구 분	업종 코드	지원 제외 업종	농업 및 어업	01~03	-	서비스업	36~39, 45~99	· 유흥주점<56211, 56212> · 정보통신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1~682> ·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1~712>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 무도장 운영업<91291> · 국제 및 외국기관<99>
구 분	업종 코드	지원 제외 업종								
농업 및 어업	01~03	-								
서비스업	36~39, 45~99	· 유흥주점<56211, 56212> · 정보통신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1~682> ·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1~712>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 무도장 운영업<91291> · 국제 및 외국기관<99>								

주 : 1)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므로 거래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2)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전입기업·수출관련기업 중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은 한국은행(본부)의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의 창업자금 이용 가능

[별 첨]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전략산업	분류코드(KSIC)	세부업종
지능정보 서비스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58211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친환경 미래에너지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라이프케어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융합 기계부품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가

TEL 051)240 - 3912

부문별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부 문 별	대 상 업 체 ^{1) 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해당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혁신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녹색기업	-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KSIC 10-33) 및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KSIC 36-38)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육상 여객 운송업(KSIC 492),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 주차장 운영업(KSIC 52915)은 제외)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 ○ 도로화물 운송업(KSIC 493) ○ 해상운송업(KSIC 501) (단,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은 제외) ○ 화물취급업(KSIC 5294) ○ 정보통신업(KSIC 58~6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70~73) (단,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KSIC 711, 712), 회사본부(KSIC 7151), 수의업(KSIC 731)은 제외) - 「부산테크노파크」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유 관 기 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1 법적구속력을 갖는 중재제도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중재제도의 개요

- 중재의 정의 :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중재법 제3조)
-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법에서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법원의 제·개정 승인을 받은 중재규칙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비영리공익기관
- 중재의 장점(소송 대비)
 - ① 신속한 법적해결(단심제로 일반절차 평균 8개월-국내 8개월, 신속절차 4개월)
 - ②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가능(뉴욕협약으로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보장)
 - ③ 저렴한 중재비용(2억원 이하 소송 대비 55%까지 저렴, 변호사 선임자율)
 - ④ 전문가를 당사자의견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임 가능(전문분야 분쟁해결에 효율적)
 - ⑤ 거래기밀유지, 당사자 명예손상방지(중재절차 비공개)
 - ⑥ 당사자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진행과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중재합의의 방식

- 사전 합의 : 계약체결시 계약서식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추천)
- 사후 합의 : 분쟁발생 후에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 간의 감정적 태도로 인해 중재합의 곤란(비추천)

중재합의의 요소

- 기본 합의요소 : ① 중재지 : 중재절차 진행하는 국가(도시) 선택
 ② 중재기관 : 중재절차 관리하는 상설중재기관 선택
 ③ 중재절차(준거법) : 중재절차 규율하는 법령 및 절차규정 선택
- 추가 합의요소 : ①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 3인(또는 1인), 당사자 직접 선정(선정권자 지정)
 ② 중재절차 언어
 ③ 중재비용의 범위와 부담자
 ④ 중재판정의 기한과 범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추천 표준중재조항

● 국내중재조항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부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국제중재조항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또는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including non-contractual claims)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만약 제3국의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그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이상적임. 이런 경우 중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부설 국제중재법원(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됨.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서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 유의사항

- ① 상대방 국가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으로 합의해야하는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방법과 중재 절차 언어를 불리하지 않도록 꼭 반영하는 것이 필요.
- ② 법원의 소송절차와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함께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선택 또는 중재절차 회피의 기회를 주어 신속성 저해.

중재절차도



중재신청서

- 중재신청서의 작성 양식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에서 참조 가능

지원목적

- 중재제도 활용 확대를 위하여 기업체,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에 관한 직무교육 희망시 현장 방문하여 중재제도와 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무료교육을 실시

현장 방문교육 대상

- 사업장별 10명 이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 또는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참석이 가능한 경우 1~2시간 강의를 위한 강사 파견 및 교재제공 무료실시
- 강의 일시는 요청 사업장과 출장 강사의 사전협의로 조정 가능
- 교육 후 사업장의 활용 계약서 검토 및 발생분쟁에 대한 상담 가능

현장 방문 무료교육 신청

- 중재제도 현장방문 교육신청서(공문)상 기재항목
 - ① 희망기업체명 및 주소
 - ② 참석 인원 수
 - ③ 강의희망일시 및 시간
 - ④ 강의장소
 - ⑤ 활용계약서 자문 및 분쟁상담 희망 여부
 - ⑥ 담당자 직책, 성명 및 전화번호
- 교육신청서(공문) 접수
 - ① 부산·울산·경남지역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팩스 : 051-441-7039)
 - ② 부·울·경 이외 지역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팩스 : 02-551-2020)

교육과정 강사추천

- 관공서, 경제단체 및 사회교육기관의 계약서 작성 및 분야별 분쟁사례 교육프로그램에 강사추천
- CEO 대상의 교육과정 내지 CEO 소모임 특강 요청 적극 수용

지원목적

- 분쟁 발생시 당사자 상호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되어 거래중단과 손실확대는 물론 민사·형사 소송을 이용할 때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사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립적으로 공정한 개입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권고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알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민사·상사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함

무료알선의 유형

- 국내알선 : 양당사자가 국내의 개인,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인 국내알선사건
- 대외알선 : 국내의 당사자가 외국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국제알선사건
- 대내알선 : 외국의 당사자가 국내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국제알선사건

알선신청 및 알선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온라인신청서 작성
우편, 팩스 접수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팩스 : 051-441-7039)
- 알선신청서 작성서식(국제알선은 국문과 영문으로 별도 작성)

알선신청서

- ① 제 기 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② 피제기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③ 거래경위 및 분쟁내용 : 쟁점위주로 요약
- ④ 희망하는 해결방안 : 청구금액(권리), 이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요약
- ⑤ 입증자료 : 거래 및 손실(청구)내역 자료와 증거목록 명시
- ⑥ 제기자 기명 날인(서명)

- 알선절차 : 2개월 범위 내(국제알선 3개월 범위 내)에서 쟁점확인 및 합의권유
- 알선 합의성공률 : 국내알선 약 50%, 대내알선 약 40%, 대외알선 약 15% 수준임

주요 활용사례

- 물품거래 :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배상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배상청구
- 대리점거래 :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계약위반배상청구
- 운송거래 :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청구
- 투자거래 :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배상청구
- 산업재산 :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료) 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 건설용역 : 설계변경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지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 부동산거래 :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청구
- 기타 : 국내·국제 상거래분쟁

지원목적

- 상담을 통하여 개인, 자영업자 및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거래 활성화 및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시장질서 확립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무료상담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서울 : (02)551-2000
부산 : (051)441-7032
- 내방상담 : 부산 :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 :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삼성동), 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메뉴
고객센터>문의하기 선택 / 상담자 등록메일계정으로 답신
- 상담시간 : 전화, 내방상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 : 24시간 이용가능(통상 근무일 1일 이내 메일 회신)
- 상담범위 :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간의 국내 및 국제 상거래 분쟁관련 계약조항 및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및 분쟁해결제도 안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절차와 중재신청을 위한 중재합의요령과 중재절차 안내
- 상담분야 : 국내 일반상거래,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건축, 조선·해운·물류, 특허, M&A, 방송·정보·통신, 부동산개발, 재건축·재개발, 의료관광, 광고,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리, 대리, 중개, 운송, 신탁, 보험, 외국인고용 등



부산상공회의소

1 부산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사업목적

- 부산지역 수출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
- 수출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PL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관내 업체의 신뢰성 회복 및 경쟁력 도모
- PL보험 인식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안정성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 2023년 연중(1월~12월) 상공회의소 PL보험 가입 및 갱신업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 사업비 : 3천만원

지원내용

-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 2023년 연중(1월~12월) 상공회의소 PL보험 가입 및 갱신 시 계약 건당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연중 상공회의소 PL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 제출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051-990-7064, skang6@korcham.net)
- 서류처리후 익월 초 신청계좌로 환급(보험료 20%, 최대 100만원 한도)

:	TEL 990 - 7064	FAX 990 - 7099
---	----------------	----------------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운영 지원

사업목적

-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e비즈니스 지원
- 기업의 기술 정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내용

- 전자입찰 정보 서비스 운영 (<http://bid.pcci.or.kr>)
 - 국내 입·낙찰 정보 제공(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 전자입찰 실무 상시 컨설팅, 전문콜센터 운영(1644-9927)
-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진행
 - 맞춤형 전자입찰정보서비스 교육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교육

추진일정

- '23. 3.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bcci.or.kr>)
- '23. 4~5. 공급기관 협약 및 지원
- '23. 9. 중간성과 평가 실시
- '23. 12.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TEL 888 - 4834
TEL 990 - 7066

사업목적

-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거래처 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판로개척 활동 및 수출활력 제고
-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가 부산항 물동량 상승효과, 부산항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 주관기관 : 부산항만공사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준비-바이어발굴-계약’ 전 단계에 걸친 개별부문(홍보물 제작, 수출전담인력 개발,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바이어 발굴, 바이어 신용조사, FTA 컨설팅,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통·번역, 물류비, 법률·회계·특허 자문)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 환급

추진일정

- '23. 6.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bcci.or.kr>)
- '23. 6. 참여업체 선정
- '23. 6. 참여업체 선정사업별 해외판로개척 수행 및 사업비 선지급
- '23. 11. 결과보고
- '23. 12.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TEL 990 - 7064

FAX 990 - 7099

4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사업목적

- 부산·울산·경남 지역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서울역사 내 동남권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수도권 경영활동 개선
- 부산·울산·경남 지역기업 임직원, 시·도 공무원들의 수도권 지역 비즈니스 활동 시 직·간접적 업무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

라운지개요

- 위 치 : 서울역사 내 4층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21: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이용대상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사전 예약제 운영 ※ 현장등록 병행, 사전예약자 우선
- 이 용 료 : 무료

지원내용

● 제공 서비스



■ 비즈니스 시설제공

- 회의공간 8인, 4인, 2인 (가변형)
- 사무기기(PC, 복합기) 이용제공
※ 사용OS - 한글, MS오피스



■ 지역제품 홍보

- 홍보동영상 홍보
- 기업, 제품, 홍보 리플릿 비치 등



■ 경제·경영정보제공

- 최신 정보 수록 간행물 및 서적
- 기업지원사업안내 브로셔 제공 등



■ 휴게시설 제공

- 휴식시설 제공 운영
- 휴대폰 충전 등

TEL 02-313-1888

5 OK FTA활용 컨설팅

사업목적

- 부산지역 수출기업 FTA활용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수출 애로사항 해소
- 현장 중심 FTA활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상공회의소 인식 제고
-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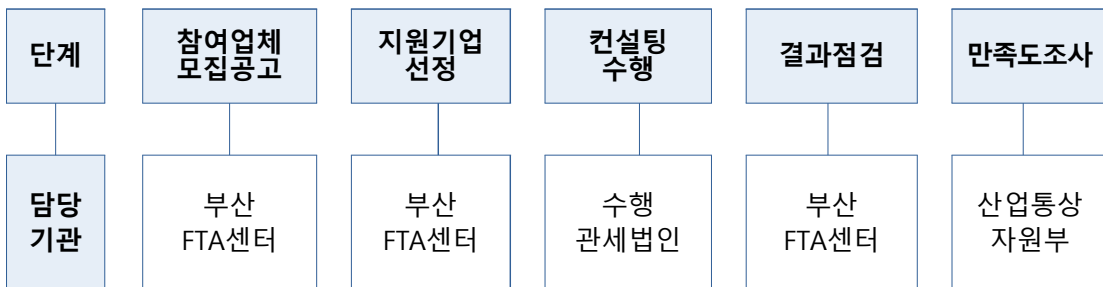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 3월 ~ 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내용

기업분류	지원내용	비고
수출업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	

사업절차



: FTA TEL 990-7016 FAX 990-7119

사업목적

- 지역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적극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부산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플랫폼에 등록된 지역 구인기업 및 구직자

지원내용

- (구인·구직 JOB 매칭 데이 운영)
 - ▶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의 연계를 통해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면접 기회와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도모
-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실무 협의회 운영)
 - ▶ 참여기관(직업전문학교 20개교) 취업지원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JOB 매칭 데이 개최 협의, 기술교육생 수료 현황 등 공유
- (지역 구인기업 및 기술교육 수료생 DB 확보 및 구직상담)
 - ▶ 회원사 및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대상 구인정보 등록 홍보
 - ▶ 업무협약(MOU) 체결 직업교육 전문기관 대상 수료생 구직정보 등록 독려
 - ▶ 카카오톡 활용 실시간 구직상담
- (BCCI 일자리 브리프 운영)
 - ▶ 등록 구직자 대상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정보(일자리정보, 지원사업 및 행사) 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홈페이지 內 구인의뢰요청 및 구직신청 후 작성
- 신청 URL : <http://job.bcci.or.kr>

:

TEL 051-990-7084

FAX 990-7185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 (지원시기)
 -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TEL 051 - 990 - 7089

FAX 051 - 990 - 7185

8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위기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부산권(사하·강서·사상구) 부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경영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 지원대상 : 부산권(사하·강서·사상구) 소재 기계부품산업 기업
- 사업기간 : 2023. 3월(예정) ~ 12월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 사업비 : 7억5천만원(예정)
- 사업내용 : 채용약정에 따른 수출관련 경비지원(물류비·해외마케팅비·기타수수료)

지원내용

채용약정			지원내용	
채용직무	채용기간	채용인원	지원부문	지원금액
수출업무 관련 직무	1년	1명	①물류비 ②해외마케팅비 ③기타 수수료	1,250만원 한도
	고용유지	2명		2,500만원 한도

※ 기업분담금 20%. 단,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기업 부담

※ 협약체결 이후의 비용 지출 건만 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참여방법 : 부산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송부 후 방문접수
- 사업절차 : 참여기업 선 지출 후 증빙서류 및 채용약정 이행 결과 확인 후 사후 정산

:

TEL 990 - 7095

FAX 990 - 7185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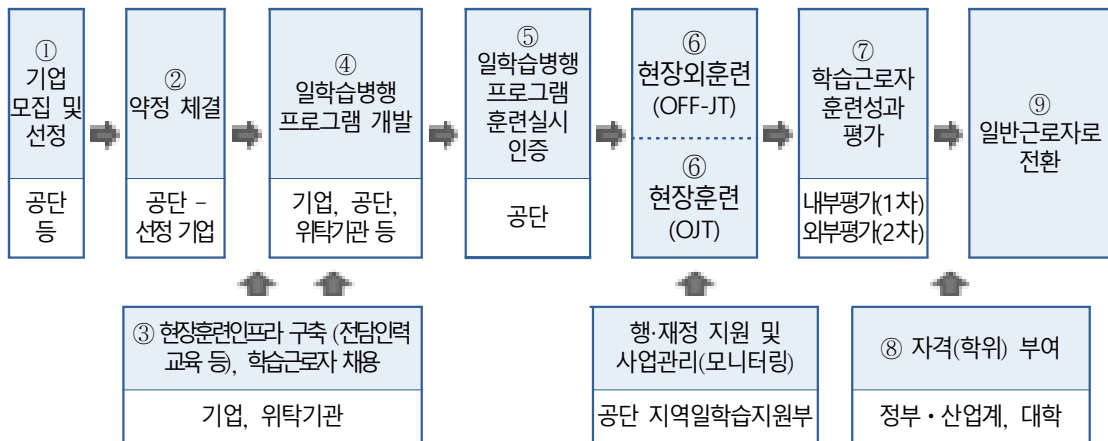
1 일학습병행

추진목적

-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학습(현장훈련 등)을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로 고용률 제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훈련기간 : 1년 ~ 4년
- 기업선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으로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자

재직지형 일학습병행

- **단독기업형**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 **공동 훈련 센터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 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재학생형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 모델
- **전문대 재학생 단계**
능력중심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의 훈련 모델
-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업체 지원사항

- 기업현장교수 지원 : 연간 400만원 ~ 1,600만원 (학습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월 분배 지원)
- HRD담당자 지원 : 연간 최대 300만원 (월정액 25만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직무, 1개 직무 당 210만원 지원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지원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은 월 30만원),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월 20만원 × 훈련기간] 일괄지급 (360만원 한도)
- 훈련비용 지원 :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지원율(50~240%)
-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가점
-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부여

학습근로자 지원사항

- 교육훈련과정 수료 시 자격 또는 학위 취득
- 외부평가 합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TEL 051 - 330 - 1822, 1871 FAX 0505 - 174 - 2071
<	>	TEL 051 - 330 - 7372 TEL 055 - 330 - 8351 TEL 051 - 850 - 1331 TEL 051 - 860 - 3166 TEL 051 - 330 - 7758 TEL 051 - 609 - 6025
<	>	TEL 051 - 610 - 6781 TEL 051 - 410 - 4735
↳ - TECH	>	TEL 051 - 320 - 1328
↳PP	>	TEL 051 - 320 - 4869 TEL 051 - 890 - 4492 TEL 051 - 999 - 6340 TEL 055 - 380 - 9576 TEL 055 - 320 - 3624
<	>	TEL 051 - 607 - 7387 TEL 051 - 811 - 7568 TEL 055 - 340 - 7462 TEL 055 - 293 - 5831 TEL 051 - 640 - 0612 TEL 051 - 607 - 3956 TEL 051 - 606 - 0330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운영목적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촉진

사업내용

- 훈련실시주체 :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훈련지원절차
 - 자체훈련 : 과정인정신청 → 실시신고 → 수료보고 → 비용신청
 - 위탁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수강 및 수료 후 위탁훈련기관이 훈련비용 신청
 - ※ 위탁훈련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 참조
- 비용지원요건
 - 출석률 80% 이상 수료자에 한해 비용지원
 - ※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제시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해야 함

업체 지원사항

- 소요되는 비용(훈련비 등)의 일부 지원
 - ※ 표준훈련비 : 훈련직종별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
 - *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의 240% 한도(중소기업 기준) 지원)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양성훈련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향상, 양성훈련 등	100%	100% × 약정취업률
	자체훈련 위탁훈련	9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	향상, 양성훈련	60%	60% × 약정취업률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향상, 양성훈련	40%	40% × 약정취업률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비지원

:	TEL 051-330-1910	FAX 0505-174-2070
---	------------------	-------------------

4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사업목적

-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교육 현장성 강화
- 고숙련 기술 유출 및 중소기업 경력 단절 방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예정)자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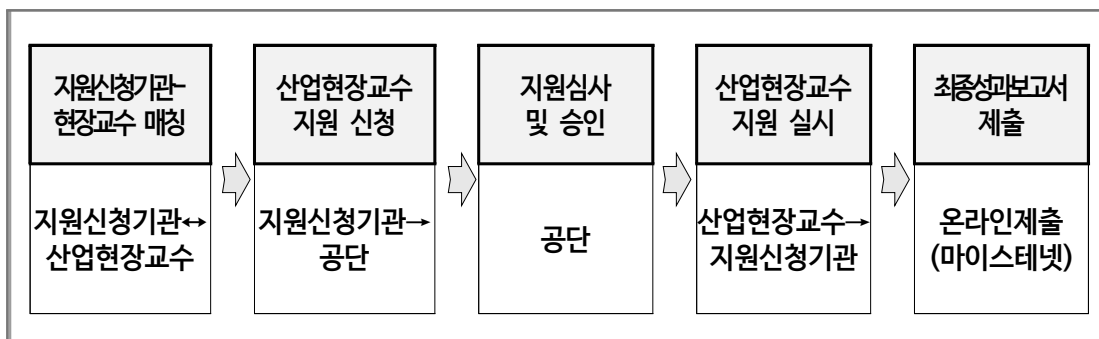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분	세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HRD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고용보험 체납기업 제외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한국폴리텍 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인적자원관리 진단지도 ▶ 기업진단 및 HRD컨설팅 ▶ 근로자 적합훈련 설계(현장훈련 및 학습조직 등) ▶ 현장 기술 지원(애로기술 해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등 총 15개 기술, 기능 분야별 100시간 이내 ☞ HRD 분야는 30시간 이내 * 단,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기업 제외

지원내용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활용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액 제공함에 따라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TEL 051 - 330 - 1910 FAX 0502 - 174 - 2070

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제외업종 :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 숙박업·부동산업·서비스업 등
- 사업기간 : 연초 사업공고를 통해 모집 후 1년 단위 활동,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학습리더 및 조장 교육비, 수당 지원(소요된 금액 지원)
- 사내 우수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계속기업 90~180만원)
- 학습기업간 학습네트워크 활동비 지원(신규 120만원, 일반 200만원, 우수 280만원)
-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최대 250만원)
- 우수 학습기업 대상 학습인프라 장비 구축비용 지원(최대 1,500만원)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75%지원

기타 참고사항

- 학습활동 후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
-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금 집행
- 지원유형에 따라 기업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지원금 60%를 사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 및 회계 정산을 통해 사후 지원금 지급

:

TEL 051 - 330 - 1910 FAX 0505 - 174 - 2070

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컨소시엄)을 맺고 기관이 보유한 훈련·연수 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 시행시기 : 1월 ~ 12월
- 수행기관



- 공동훈련센터 현황
 - 르노삼성자동차(주), 만에너지솔루션즈코리아(주), HMM오션서비스(주), 한국선급, 현진소재(주), (주)지마린서비스,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대학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연구원
 - ※ 관련산업분야 중소기업은 상기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체결 후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대기업, 사업주단체 등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 운영비(전담자 인건비+일반운영비) : 4억원 이내(20% 자부담)
 - 훈련시설·장비비 : 15억원 이내(20% 자부담)
 - 프로그램개발비 : 1억원 이내
 - 훈련비용지원 :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협약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개설한 프로그램에 한해 무료로 훈련 참여 가능

TEL 051-330-1823 FAX 0505-174-2071
 053-810-1560

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운영목적

-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근거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제1항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항제호등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 사업기간 : 매년 3월 30일 사업공고(중앙일간지 및 공단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 변경가능)
- 시행주체 : (총괄부처)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비 : 해당없음(탈락기업 대상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 자세한 내용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홈페이지(www.hrd4u.or.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지원사항

- 인증기관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 통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대한민국일자리오피스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공 통
	최고특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공 통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공 통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장기·저리) 지원 대상	선취업-후학습 중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5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중소기업
기 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인증기관 사례 홍보	공 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신청방법 및 절차

- HRD4U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고)

:	TEL 051-330-1910	FAX 0505-174-2070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2023년 시니어인턴십사업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4대보험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행시기 : 연중
- 수행기관 : 부산지역 19개소(전국 261개소)

지원내용

- 일반형 :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장기취업유지형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5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40만원 지원(4회)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시니어인턴십사업 수행기관 상담 및 신청(070-4372-3062, 3063)
※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기관

TEL 070 - 4372 - 3062,3063 FAX 051 - 507 - 6376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유형 및 개요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 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명)×5백만원)+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신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명)×1천만원)+기본자금 1억 		

※ 사업유형 및 내용은 2023년 공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대응투자 이행

-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최소 30%)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절차



:

TEL 051 - 507 - 6375

FAX 051 - 507 - 6376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7691~7

